

한국목간학회

제 40회 정기발표회 자료집

- ❖ 일시 : 2023.6.16.(금) 13:30~17:40
- ❖ 장소 : 중앙대학교 310관 826호
- ❖ 주최 : 한국목간학회

일정

| | | |
|-------------|--|-------------|
| 13:30~13:40 | 인사말 | 김병준(한국목간학회) |
| 13:40~14:50 | 『삼국지』 韓傳의 문헌사적 검토 - 텍스트 修訂을 통한 새로운 이해 - | 윤용구(경북대학교) |
| 14:50~15:10 | 휴식 | |
| 15:10~16:20 | 백제 지역 출토 기와 명문에 대한 몇 가지 검토와 論山 皇華山城 出土 瓦銘文 지명 표기 '葛那城, 笠乃, 立乃'의 국어사적 의의 | 이건식(단국대학교) |
| 16:20~17:40 | 敦煌·吐魯番 출토문서를 통해 보는 唐代 官文書와 문서행정 | 박근칠(한성대학교) |

목차

『삼국지』 韓傳의 문헌사적 검토 -텍스트 修訂을 통한 새로운 이해- 5
윤용구(경북대학교)

백제 지역 출토 기와 명문에 대한 몇 가지 검토와
論山 皇華山城 出土 瓦銘文 지명 표기
'葛那城, 笠乃, 立乃'의 국어사적 의의 21
이건식(단국대학교)

敦煌·吐魯番 출토문서를 통해 보는 唐代 官文書와 문서행정 55
박근칠(한성대학교)

『삼국지』 韓傳의 문헌사적 검토
- 텍스트 修訂을 통한 새로운 이해 -

윤용구(경북대학교)

『삼국지』 韓傳의 문헌사적 검토

- 텍스트 修訂을 통한 새로운 이해 -

윤용구(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목차

- | | |
|-------------------|------------------|
| I. 머리말 | IV. 「한전」의 字句와 標點 |
| II. 『삼국지』 한전의 수정 | V. 맺음말 |
| III. 『후한서』 한전의 수정 | |
-

I. 머리말

『삼국지』는 北宋 咸平6년(1003) 刊刻되기까지 700년이 넘는 기간 寫本으로 流傳되었고, 刊本 이후에도 校刻과 修補가 계속되어 誤·脫文·衍文·倒文으로 인한 字句 異同이 심한 대표적인 史書이다. 『후한서』도 1034년 刊刻되기까지 600년 넘게 寫本으로 傳存하였다.

明清 이래 중국사에서 만이 아니라¹⁾ 한국사에서도 『삼국지』와 『후한서』의 우열과 차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었다. 특히 동이전의 경우, 새로운 사료의 추가 없이 『삼국지』를 ‘壓縮潤文’한 『후한서』에 대하여 원형의 왜곡을 넘어 ‘改惡’으로 평가하는가 하면, 거의 사료적 가치가 없다는 혹평도 있었다.²⁾ 『후한서』 동이열전에 대한 자료적 가치를 제고하려는 연구도 있었으나,³⁾ 『후한서』 찬자에 의한 『삼국지』 동이전 재편이라는 시각이⁴⁾ 흐름을 주도 하였다.

1980년 전후 全海宗의 일련의 연구는 동이전에 대한 이해의 폭을 크게 신장시켰으나,⁵⁾ 판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서⁶⁾ 보듯이 텍스트 자체에 대한 검토는 부족하였다. 무엇보다 현존하는 동이전은 寫本의 전존 과정에서 변형되고, 刊刻 이후에도 거듭된 校刻으로 인하여 陳壽(233~297)와 范曄(398~445)이 저술한 原文 그대로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로 『삼국지』 동이전의 자구에 대한 校勘이 중요시 되어 왔다. 그러나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감의 底本이나 참고한 여러 版本을 실제 확인하였는지는 분명치 않다.⁷⁾ 따라서 현재 동이전이 남아있는 『삼국지』 고판본의 대조는 그 성과와 관계없이 불가피한 연구 과정이 된다. 본고는 그 일환으로 먼저 「韓傳」을 대상으로 텍스트의 修訂과 字句 논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도모해 보고자 한다.⁸⁾

1) 鍾書林, 2009 「《後漢書》《三國志》比較研究綜說」, 『咸陽師範學院學報』 24-3

2) 千寬宇, 1976 『삼국지 한전의 재검토』, 『진단학보』 41 ; 1989 『고조선사·삼한사연구』 일조각

全海宗, 1980 『東夷傳의 文獻的 研究 : 魏略·三國志·後漢書 동이관계기사의 검토』, 일조각

3) 기수연, 2004 『《후한서》 동이열전 연구』 백산자료원

4) 신현웅, 2002 『후한서·삼국지 한전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5) 전해종, 1979 「삼국지·후한서의 동이전 관계 기사 대조」 『역사학보』 83 ; 1980 『東夷傳의 文獻的 研究 : 위략·삼국지·후한서 동이관계기사의 검토』, 일조각 ; 1983 「《魏略》과 《典略》」 『역사학보』 99·100호 ; 2000 『동아시아사의 비교와 교류』, 지식산업사. ; 1996 「삼국지 동이전 역주」, 『한국사학』 1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6) 동이전 관련 기사를 비교하면서도 판본상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지적되어 있다(李基白, 1980 「서평 : 동이전의 문헌적 연구(전해종 저)」, 『역사학보』 88).

7) 윤용구, 2010 「삼국지 판본과 동이전 교감」, 『한국고대사연구』 60 ; 2020 「중국정사 동이전의 교감과 역주」, 『역주 중국정사 동이전1:사기·한서·후한서·삼국지』 동북아역사재단

II. 『삼국지』 한전의 수정

1. 『삼국지』 판본과 사본

寫本으로 전해지던 『삼국지』·『후한서』 등 중국 史書는 송대의 문치주의와 과거에 의한 관리 채용에 따른 수요가 늘어나면서, 차례로 목판에 새겨 간행되었다. 북송 순화 5년(994) 『사기』를 시작으로 함평 3년(1000) 『삼국지』, 경유 원년(1034) 『후한서』가 나왔다. 이들 북송대 간행된 사서는 모두 國子監刻本으로 국가적 시책에 따른 官刻本이다. 북송본은 大字·中字·小字本 3종류가 판각되었는데 현재 小字本 『吳書』 殘卷 만이 남아있을 뿐이다.⁹⁾

북송본에 기원을 둔 『삼국지』는 남송 전기와 중기에 여러차례 간행되었다. 관각본으로는 中字本인 紹興本(1139)이 있다. 소흥본은 이후 명대 남경 국자감본과 북경국자감본을 거쳐 청대 武英殿本으로 이어졌다. 남송대에는 북송본에 기원을 둔 蜀刊本과 坊刻本인 紹熙本이 있다. 小字本인 촉간본은 소흥본과 소희본 보다 앞선 남송 초기 판본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역시 中字本인 소희본은 원 大德本의 저본으로 알려져 있다.¹⁰⁾

명대에는 남송 소흥본 계열의 남·북 국자감본 『삼국지』가 간행을 거듭하였는데, 南宋대 간각된 판본이 元·明을 거치면서 補刻된 판목이 섞여있는 遞修本(일명 三朝本)이 다수 남아 있다. 송판에 원류를 두었으나 그 계통을 알기어려운 私刻本으로 吳氏西爽堂本, 陳仁錫平點本이 전하고 있다. 陳仁錫平點本은 처음으로 標點이 새겨진 판본으로 중요하다. 그 밖에 明末 崇禎 17년(1644) 간행된 毛氏汲古刻本이 있다. 급고각본은 청대 이후 판본에 가장 영향을 준 판본이다. 이를 도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삼국지』 판본계통도¹¹⁾

↳ 청 金陵活字本

•북송 함평6년(1003) 국자감각본→남송 紹興本→명 南京國子監本→명 北京國子監本→
청 武英殿本 ↳남송 衢州州學刻宋元明遞修本

•남송 蜀刊本(남송 초기) : 蜀刻小字本

•남송 紹熙本(남송 중기)→원 大德十年池州路儒學刻本
↳ 商務印書館 百納本(1936) : 對校, 武英殿本

•명 吳氏西爽堂刻本→易培期 『三國志補注』本(1955)

•명 陳仁錫平點本

•명 崇禎十七年毛氏汲古閣本→청 金陵書局刻本(1870)→ 中華書局 點校本(1959)
↳朝鮮史編修會, 『朝鮮史』支那史料(1933) → → ↳ 『譯註 中國正史朝鮮傳』(1987)
盧弼 『三國志集解』本(1936)→ 『二十五史抄』(1977) ✎

8) 본고에서 사용한 『삼국지』 宋元代 판본은 성균관대학교 金慶浩 선생님과 중국 사회과학원 戴衛紅 선생님의 도움으로 구득과 借覽한 것이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9) 尾崎康, 1989 『三國志』 『正史宋版本の研究』汲古書院, pp.312~340.

10) 劉奉文, 2012. 『《三國志》版本的諸問題研究』東北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11) 劉奉文, 2012. 위의 논문, pp.167~168 ; 윤용구, 앞의 논문, 2020, pp.11~12

1977년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의 『二十五史抄』(상·중·하)는 해방 이후 한국학계가 처음으로 간행한 중국 정사 중의 동이전을 비롯한 한국 관련 사료집이다. 그전까지는 1933년 조선사편수회에서 간행한 『朝鮮史』(1편 3권)의 부록(支那史料)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二十五史抄』는 청 武英殿本을 저본으로 하였다 했으나, 실제로는 급고각본을 저본으로 한 『三國志集解』를 옮겨 놓고, 여기에 조선사편수회 『朝鮮史』(支那史料)의 주석을 더한 형태 였다. 송대 이래 여러 판본을 대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이 아니었다.¹²⁾

1987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한 『역주 중국정사 조선전 1』의 경우도 마찬가지 였다. 본문은 1959년 중화서국 점교본을 사용하였지만, 주석은 『二十五史抄』의 것을 다시 옮겨 놓았다. 더하여 『한원』 번이부에 인용된 『위지』, 『위략』의 기록과 『후한서』 한전의 내용을 주석에 활용한 것이 차이가 있을 뿐이다. 주석은 『二十五史抄』와 마찬가지로 『三國志集解』의 내용을 옮겨 놓았다. 역시 일일이 해당 판본을 확인한 것이 아니었다.¹³⁾ 요컨대 그 동안 한국학계에서는 송원본은 물론이고, 명청대 판본 교감에 활용하지 못하였다.

아무튼 목판에 새겨 인쇄한 이후로는 필사 도중에 생길 수 밖에 없는 錯簡과 상습적인 오자와 탈자, 줄이고 고치는 節文과 改文의 오류는 더 이상 격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인쇄에 의한 서적 간행이 보편화되면서 한대이래 전해 오던 다양한 필사본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한 번 잘못 새겨진 내용은 바로 잡을 방법이 사라진 것이다. 특히 『삼국지』를 비롯한 중국 삼국시대의 史書들이 唐 중후기 송에 이르는 혼란, 화재 등으로 대부분 소실되었다고 한다.¹⁴⁾

이런 점에서 『한서』와 『삼국지』 등 필사본 殘卷이 둔황과 투르판 사막 속에서 발견되는 점이 주목된다. 『삼국지』만 하여도 1909년 『吳志 豐曜華嚴傳』25行 殘卷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7종(吳志 5건, 魏志와 蜀志 각 1건)의 古寫本이 발견되었고, 대략 3,170자가 판독되고 있다.¹⁵⁾ 동이전과 관련된 출토된 서진대 寫本의 殘卷을 宋本과 대조한 결과로 보면,¹⁶⁾ 당시에도 상당수의 三國志 異本이 존재하였음이 확인되었다.

결국 1003년 목판으로 간행되기 이전의 『삼국지』 동이전의 존재가 중요시되는 것이다. 북송 이전 史書와 類書 가운데 『삼국지』 동이전을 인용한 경우는 필사본의 흔적을 남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까운 예로 983년 간행된 『太平御覽』과 659년 張楚金(? ~689)이 짓고 雍公 觀가 주석을 붙인 『翰苑·蕃夷部』가 있다.

이들 類書에는 다수의 『삼국지』(魏志)·『후한서』 동이전과 그 대본이 되는 『魏略』의 佚文이 전하고 있다. 『태평어람』은 刊本이라 사료적 가치가 높으며, 『한원』은 659년 당시 통용되던 동이전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432년 무렵 『삼국지』를 대본으로 하여 저술된 『후한서』 동이전¹⁷⁾ 또한 南朝 宋代 유통되던 『삼국지』의 모습을 담고 있다고 생각된다. 『삼국지』 「한전」의 텍스트 수정을 위해 사용한 판본을 다음과 같다. 교감을 위한 저본은 1959년 중화서국 점교본을 사용하였다.

12) 윤용구, 2010 앞의 논문, pp.262~268

13) 위와 같음

14) 張辭修, 2018 「三國佚史散亡考論」, 『文史』 122, pp.

15) 肖瑜, 2010 「百年來敦煌吐魯番出土《三國志》古寫本研究編年」 『藝術百家』 2010年 第3期.

16) 大川富士夫, 1979 「古本三國志をめぐって」 『立正大學文學部論叢』 62 ; 片山章雄, 1992 「吐魯番.敦煌發見の《三國志》寫本殘卷」 『東海史學』 26 ; 吳金華·蕭瑜, 2006 「《三國志》古寫本殘卷中值得注意的異文」 『中國文字研究』 2006-1 ; 肖瑜, 2006 「《三國志》古寫本用字研究」, 復旦大學博士論文.

17) 千寬宇, 앞의 논문(1976 ; 1989) p.260

「韓傳」 교감 『삼국지』 판본

- 宋 蜀刊本 : 북경도서관 (마이크로 필름 열람)→ ‘蜀刻小字本’
紹興衢州刻本 : 중국국가도서관 (마이크로 필름 열람)→ ‘紹興本’
紹熙建本 : 중국국가도서관 (『中華再造善本』 영인본, 2003)→ ‘紹熙本’
衢州州學刻宋元明遞修本 : 북경대학도서관 (『中華再造善本』 영인본, 2006)→ ‘遞修本’
- 元 大德十年池州路儒學刻本 : 대만국가도서관(마이크로 필름 열람)→ ‘大德本’
- 明 萬曆南京國子監刻本 : 하버드 燕京圖書館(마이크로 필름 열람)→ ‘南監本’
吳氏西爽堂刻本 : 『三國志補注』 (고려대학교 도서관)→ ‘吳氏西爽堂本’
陳仁錫平點本 : 서울대학교 도서관(일사古952.01 J563S V.8)→ ‘陳仁錫平點本’
崇禎十七年毛氏汲古閣本 : 고려대학교 도서관→ ‘汲古閣本’

2. 『삼국지』 한전 교감

韓在帶方之南，東西以海爲限，南與倭接，方可四千¹⁸⁾里。有三種，一曰馬韓，二曰辰韓，三曰弁韓。¹⁹⁾辰韓者，古之辰國也。

馬韓在西。其民土著，種植²⁰⁾，知蠶桑，作繇²¹⁾布。各有長帥，大者自名爲臣智，其次爲邑借。散在山海間²²⁾無城郭。有爰襄國·牟水²³⁾國·桑外²⁴⁾國·小石索國·大石索國·優休牟涿²⁵⁾國·臣漬沽²⁶⁾國·伯濟國·速盧不斯國·日華國·古誕者國·古離²⁷⁾國·怒藍國·月支²⁸⁾國·咨離牟盧²⁹⁾國·素謂乾國·古爰³⁰⁾國·莫盧³¹⁾國·卑離國·占離卑³²⁾國·臣鬲³³⁾國·支侵國·狗盧³⁴⁾國·卑彌國·監奚卑離國·古蒲³⁵⁾國·致利鞠國·冉路國·兒林國·駟盧國·內卑離國·感

18) 「千」: 元 大德本 「十」

19) 「弁韓」: 『翰苑』 삼한전 인용 「魏略」(이하 『한원·위략』이라 略)·『후한서』 한전 「弁辰」.

20) 「植」: 『한원·위략』 「稻」, 남송 蜀刻小字本 등 諸本 「植」

21) 「繇」: 『한원·위략』·명 西爽堂本·南監本 「綿」, 송·원대 판본, 명 汲古閣本 「繇」

22) 「間」: 南宋 紹興本 「間」

23) 「牟水」: 『한원』 백제전에 인용된 「魏志」(이하 『한원·위지』로 略) 「牟襄水」

24) 「桑外」: 『한원·위지』 「桑水」, 남송 촉각소자본 이하 諸本 「桑外」

25) 「優休牟涿」: 남송 촉각소자본·『한원·위지』 「優休牟涿」

26) 「臣漬沽」: 『한원·위지』 「臣漢沽」, 송·원대 판본 「臣漬沽」, 명 서상당본 이후 판본 「臣漬活」

27) 「古離」: 『한원·위지』 「古離」

28) 「月支」: 『한원·위지』 「自支」

29) 「咨離牟盧」: 『한원·위지』 「資離牟盧」

30) 「古爰」: 『한원·위지』 「古爰」

31) 「莫盧」: 『한원·위지』 「英盧」

32) 「占離卑」: 『한원·위지』 「古卑離」

33) 「臣鬲」: 『한원·위지』 「臣鬲」

34) 「狗盧」: 『한원·위지』 「支狗盧」

35) 「古蒲」: 『한원·위지』 「古滿」

奚國·萬盧³⁶⁾國·辟卑離³⁷⁾國·臼斯烏旦³⁸⁾國·一離國·不彌國·支半國³⁹⁾·狗素國·捷盧⁴⁰⁾國·牟盧卑離⁴¹⁾國·臣蘇塗國·莫盧⁴²⁾國·古臘⁴³⁾國·臨素半國·臣雲新國·如來卑離國·楚山塗卑離國·一難國·狗奚國·不雲國·不斯漬邪國·爰池⁴⁴⁾國·乾馬國·楚離國，凡五十餘國。大國萬餘家，小國數千家，摠⁴⁵⁾十餘萬戶。辰王治月支國。臣智，或加優呼臣雲遣支報·安邪跋支漬·臣離兒不例·拘邪秦支廉之號。其官有魏率善邑君·歸義侯·中郎將·都尉·伯長。

侯淮既僭號稱王，爲燕亡人衛滿所攻奪，**魏略曰**，昔箕子之後朝鮮侯，見周衰，燕自尊爲王，欲東略地，朝鮮侯亦自稱爲王，欲與兵逆擊燕以尊周室。其大夫禮諫之，乃止。使禮西說燕，燕⁴⁶⁾止之，不攻。後子孫稍驕虐，燕乃遣將秦開攻其西方，取地二千餘里，至滿潘汗爲界，朝鮮遂弱。及秦并天下，使蒙恬築長城，到遼東，時朝鮮王否立，畏秦襲之，略服屬秦，不肯朝會。否死，其子準立。二十餘年而陳項起，天下亂，燕齊趙民愁苦，稍稍亡往準，準乃置之於西方，及漢以盧綰爲燕王，朝鮮與燕界於溟⁴⁷⁾水。及綰反，入匈奴，燕人衛滿亡命，爲胡服，東渡溟水，詣準降，說準求居西界，故⁴⁸⁾中國亡命爲朝鮮藩屏，準信寵之，拜以博士，賜以主，封之百里，令守西邊。滿誘亡黨，衆稍多，乃詐遣人告準，言漢兵十道至，求入宿衛，遂還攻準，準與滿戰，不敵也。將其左右宮人走入海，居韓地，自號韓王。

魏略曰，其子及⁴⁹⁾親留在國者，因冒姓韓氏。準王海中，不與朝鮮相往來。其後絕滅，今韓人猶有奉其祭祀者。漢時屬樂浪郡，四時朝謁。**魏略曰**，初，右渠未破時，朝鮮相歷谿卿以諫右渠不用，東之辰國，時民隨出居者有⁵⁰⁾二千餘戶，亦與朝鮮貢蕃不相往來。至王莽地皇時，廉斯鏹爲辰韓右渠帥，聞樂浪土地美，人民饒樂，亡欲來降，出其邑落，見田⁵¹⁾中驅雀男子一人，其語非韓人，問之，男子曰，“我等漢人，名戶來，我等輩千五百人伐材木，爲韓所擊得，皆斷髮爲奴，積三年矣。”鏹曰，“我當降漢樂浪，汝欲去不”，戶來曰，“可”（辰⁵²⁾鏹因將戶來⁵³⁾，出詣合資縣，縣言郡，郡即以鏹爲譯，從芩中乘大船入辰韓，**逆⁵⁴⁾取戶來降伴輩**，尚得千人，其五百人已死。鏹時曉謂⁵⁵⁾辰韓，“汝還五百人，若不者，樂浪當遣萬兵，乘船來擊汝。”辰韓曰，“五百人已死，我當出贖直耳。”乃出辰韓萬五千人，牟⁵⁶⁾韓布萬五千匹，鏹收取直還郡。表鏹功義，賜冠幘·田宅，子孫數世，至安帝延光四年時，故受復除。桓·靈之末，**韓濊⁵⁷⁾疆**盛，郡縣不能制，民多流入韓國。建安中，公孫康分屯有⁵⁸⁾縣以南荒地爲帶方郡，遣公孫模·張敞等收集遺民⁵⁹⁾，興兵伐韓濊⁶⁰⁾，舊民⁶¹⁾稍出，是後倭韓遂屬帶方。

36) 「萬盧」：『한원·위지』 「邁盧」
 37) 「辟卑離」：『한원·위지』 「群卑離」
 38) 「臼斯烏旦」：『한원·위지』 「因斯烏旦」, 명 서상당본 「臼斯烏旦」
 39) 「支半」：남송 紹熙本·元 大德本·명 서상당본 「友半」, 남송 촉각소자본·소흥본 「支半」,
 40) 「捷盧」：『한원·위지』 「挺盧」
 41) 「牟盧卑離」：『한원·위지』 「牟盧離」
 42) 「莫盧」：『한원·위지』 「莫盧」, 남송 촉각소자본 이하 諸本 「莫盧」
 43) 「古臘」：『한원·위지』 「古擲」
 44) 「爰池」：『한원·위지』 「奚他」
 45) 「摠」：명 급고각본 「總」, 송원대 판본·명 서상당본·남감본 「摠」
 46) 「燕」：명 급고각본 「以」, 송원대 판본·명 서상당본·남감본 「燕」
 47) 「溟」：남송 촉각소자본~청 무영전본 「溟」,
 48) 「故」：易培基 『三國志補注』·중화서국 점교본 「收」, 남송 촉각소자본 이하 諸本 「故」
 49) 「及」：명 서상당본 이후 판본 「及」, 송·원대 판본 「友」
 50) 「有」：元 大德本 「有」, 남송 촉각소자본 등 諸本에는 없음.
 51) 「田」：남송 소희본 「田」, 남송 촉각소자본·소흥본·원 대덕본 「田」
 52) 「辰」：청 「(武英)殿本考證」 「辰」 衍文 추정
 53) 「來」：「殿本考證」 「來」 衍文 추정
 54) 「逆」：원 대덕본 「迎」, 남송 촉각소자본 등 諸本 「逆」
 55) 「謂」：남송 소희본 「爲」, 남송 촉각소자본·소흥본·원 대덕본 「謂」
 56) 「牟」：남송 촉각소자본~청 무영전본 「牟」, 「전본고증」 「弁」 字 추정
 57) 「濊」：『太平御覽·魏志』(이하 『어람·위지』로 略) 「獺」
 58) 「有」：『어람·위지』 「右」
 59) 「民」：『어람·위지』 「人」

景初中，明帝密遣帶方太守劉昕·樂浪太守鮮于嗣越海定二郡，諸韓國臣智加賜邑君印綬，其次與邑長。其俗好衣幘，下戶詣郡朝謁，皆假衣幘，自服印綬衣幘千有餘人。部從事吳林，以樂浪本統韓國，分割辰韓八國，以與樂浪吏譯，轉有異同，臣濱沽韓⁶²⁾忿，攻帶方郡崎離營。時太守弓遵·樂浪太守劉茂興兵伐之，遵戰死，二郡遂滅韓。

其俗少綱紀，國邑雖有主帥，邑落雜居，不能善相制御。無跪拜之禮。居處作草屋土室，形如冢，其戶⁶³⁾在上，舉家共在中，無長幼男女之別。其葬有棺無槨⁶⁴⁾，不知乘牛馬，牛馬盡於送死。以瓔珠爲財寶，或以綴衣爲飾，或以懸⁶⁵⁾頸垂耳，至於袂⁶⁶⁾。不以金銀錦繡爲珍。其人性強勇。魁頭露紒，如旻兵。衣布袍，足履革躡⁶⁷⁾。其國中有所爲，及官家使築城郭，諸年少勇健者，皆鑿背皮，以大繩貫之，又以丈許木錘之，通日嚙呼作力，不以爲痛，既以勸作，且以爲健。⁶⁸⁾常以五月下種訖祭鬼神，群聚歌舞飲酒晝夜無休。其舞數十人俱起，相隨踏地，低昂手足，相應節奏，有似鐸舞。十月農功畢，亦復如之。信鬼神。國邑各立一人，主祭天神，名之天君。又諸國各有別邑，名之爲蘇塗。立大木，縣鈴鼓，事鬼神。諸亡逃至其中皆不還之，好作賊。其立蘇塗之義，有似浮屠，而所行善惡有異。其北方近郡諸國差曉禮俗，其遠處直如囚徒奴婢相聚。無他珍寶，禽獸草木略與中國同。出大栗大如梨⁶⁹⁾。又出細尾雞，其尾皆長五尺餘。其男子時時有文身。又⁷⁰⁾有州胡⁷¹⁾，在馬韓之西海中⁷²⁾島⁷³⁾上，其人差短小，言語不與韓同。皆髡頭如鮮卑，但衣韋⁷⁴⁾，好養牛及豬⁷⁵⁾。其衣有上無下，略如裸勢。乘船⁷⁶⁾往來，市買中韓⁷⁷⁾。

辰韓在馬韓之東，其耆老傳世自言古之亡人，避秦役，來適韓國，馬韓割其東界

60) 「滅」: 『어람·위지』 「獺」

61) 「民」: 『어람·위지』 「人」

62) 「臣濱沽韓忿」: 남송 촉각소자본 「臣幘沽韓忿」, 소흥본·소희본 「臣幘沽韓忿」, 『通志』 마한전 「臣濱沽韓忿」, 원 대덕본 이후 명청대 판본 「臣智激韓忿」

63) 「其戶」: 남송 촉각소자본 「家其戶」, 소흥본·소희본·원 대덕본 등 諸本 「其戶」

64) 「有棺無槨」: 中華書局 點校本·국사편찬위원회 譯註朝鮮傳(1) 「有槨無棺」, 남송 촉각소자본~청 무영전본 「有棺無槨」에 따라 수정

65) 「懸」: 『태평어람』 (802, 珍寶部 珠上)에 「(魏志曰, 東夷俗) 以瓔珠爲財寶, 或以綴衣爲飾, 或以懸頸垂耳, 至於袂, 不以金銀錦繡爲珍」에 따라 수정

66) 「至於袂」: 위에 따라 보임

67) 「躡」: 남송 소희본·원 대덕본 「蹠」, 남송 촉각소자본·소흥본·명 서상당본 「躡」

68) 「且以爲健」과 「常以五月」 사이에 『태평어람』 (780, 삼한)에 인용된 『후한서』에 「善用弓稍矛櫓, 雖有鬪爭攻戰, 而貴相屈服. 俗信鬼神」이 들어 있다. 『진서』 마한전에도 「弓稍矛櫓」의 「稍」가 「櫓」으로 바뀌었을 뿐, 동일한 기록이 남아있다.

69) 「梨」: 남송 촉각소자본·소흥본 「梨」, 소희본 「黎」

70) 「又」: 『어람·위지』 「又曰」

71) 「州胡」: 『어람·위지』 「州朝國」, 『후한서』 한전 「州胡國」

72) 「大」: 『어람·위지』 「天」

73) 「島」: 남송 촉각소자본 「島」, 소흥본·소희본·원 대덕본 「島」

74) 「韋」: 『어람·위지』, 『후한서·한전』 「韋衣」

75) 「好養牛及豬」: 『어람·위지』, 『후한서·한전』 「好養牛及豬」는 「乘船往來」 앞에 놓임.

76) 「船」: 남송 소희본 「船」, 남송 촉각소자본·소흥본·원 대덕본 「船」

77) 「市買中韓」: 『어람·위지』 「市貨韓中矣」

地與之. 有城柵, 其言語不與馬韓同, 名國爲邦, 弓爲弧, 賊爲寇, 行酒爲行觴. 相呼皆爲徒, 有似秦人, 非但燕齊之名物也. 名樂浪人爲阿殘, 東方人, 名我爲阿, 謂樂浪人, 本其殘餘人. 今有名之爲秦韓者. 始有六國, 稍分爲十二國. 弁辰亦十二國. 又有諸小別邑. 各有渠帥, 大者名臣智, 其次有險側, 次有樊濊, 次有殺奚, 次有邑借. 有已柢⁷⁸⁾國·不斯國·弁⁷⁹⁾辰彌離彌凍⁸⁰⁾國·弁辰接⁸¹⁾塗國·勤耆國·難彌離彌凍⁸²⁾國·弁辰古資彌凍⁸³⁾國·弁辰古淳是國·冉奚⁸⁴⁾國·弁辰半路國·弁辰樂奴⁸⁵⁾國·軍彌國·弁軍彌國⁸⁶⁾·弁辰彌烏邪馬⁸⁷⁾國·如湛國·弁辰甘路⁸⁸⁾國·戶路⁸⁹⁾國·州鮮國·馬延國⁹⁰⁾·弁辰狗邪⁹¹⁾國·弁辰走⁹²⁾漕馬國·弁辰安邪國·馬延國⁹³⁾·弁辰瀆盧⁹⁴⁾國·斯盧國·優由⁹⁵⁾國, 弁辰韓合二十四國, 大國四五千家, 小國六七百家, 揔⁹⁶⁾四五萬戶. 其十二國屬辰王⁹⁷⁾. 辰王⁹⁸⁾常用馬韓人作之, 世世相繼, 辰王⁹⁹⁾不得自立爲王. 魏略曰 明其爲流移之人, 故爲馬韓所制.¹⁰⁰⁾

土地肥美, 宜種五穀及稻, 曉蠶桑, 作縑布, 乘駕牛馬¹⁰¹⁾. 嫁娶禮俗, 男女有別. 以大¹⁰²⁾鳥羽送死, 其意欲使死者飛揚.¹⁰³⁾ 魏略曰 其國作屋, 橫累木爲之, 有似牢獄也.¹⁰⁴⁾

78) 「柢」: 『한원·위지』 「私」
79) 「弁」: 『한원·위지』 「卞」. 이후 『한원·위지』 의 「弁辰」은 모두 「卞辰」.
80) 「彌離彌凍」: 『한원·위지』 「弥離陳」
81) 「接塗」: 『한원·위지』 「樓塗」
82) 「難彌離彌凍」: 『한원·위지』 「難離弥陳」
83) 「古資彌凍」: 『한원·위지』 「古資弥陳」
84) 「冉奚」: 『한원·위지』 「冉奚」
85) 「弁樂奴」: 『한원·위지』 「卞辰樂奴」에 따라 보임
86) 「弁軍彌國」: 『한원·위지』 (신라전)에는 「弁軍彌國」이 없음.
87) 「彌烏邪馬」: 『한원·위지』 「弥焉邪馬」
88) 「甘路」: 『한원·위지』 「甘露」
89) 「戶路」: 남송 촉각소자본·소흥본, 『한원·위지』·명 진인석본 「尸路」. 소희본·원 대덕본 「戶路」.
90) 「馬延國」: 『한원·위지』 (신라전) 州鮮國과 弁辰狗邪國 사이 「馬」字만 남음.
91) 「狗耶」: 남송 촉각소자본·소흥본·소희본 「狗耶」, 『한원·위지』 「拘耶」
92) 「走」: 명 진인석본 「定」
93) 「馬延國」: 『한원·위지』 (신라전) 弁辰安邪國과 弁辰瀆盧國 사이 「馬延國」이 없음.
94) 「瀆盧」: 『한원·위지』 「續盧」
95) 「由」: 남송 촉각소자본·소흥본·명 南監本, 진인석본 「由」, 소희본·원 대덕본·명 서상당본·급 고각본 「中」
96) 「揔」: 남송 촉각소자본·소흥본 「揔」, 소희본 「惣」
97) 「辰王」: 『진서』 진한전 「辰韓, 初有六國, 後稍分爲十二. 又有弁辰, 亦十二國. 合四五萬戶, 各有渠帥. 皆屬於辰韓」에 따라 수정
98) 「辰王」: 『한원·위지』 「辰韓人常用馬韓人作主, 代代相承」, 『진서』(97, 辰韓) 「辰韓常用馬韓人作主, 雖世世相承, 而不得自立, 明其流移之人, 故爲馬韓所制也」, 『양서』(54, 신라)·『북사』(94, 신라) 「又辰韓王常用馬韓人作之, 世相係, 辰韓不得自立爲王, 明其流移之人故也, 恒爲馬韓所制」에 따라 수정
99) 「辰王」: 위와 같음.
100) 『태평어람』 (780, 辰韓)의 「魏志」에는 “明其爲流移之人, 故爲馬韓所制也”가 本文처럼 기재. 『진서』 (97, 辰韓), 『양서』 (54, 신라)에도 역시 본문처럼 되어 있다.
101) 「牛馬」: 남송 촉각소자본 「馬牛」
102) 「大鳥羽」: 『어람·위지』에는 「犬馬鳥羽」
103) 「揚」: 남송 촉각소자본·소흥본 「揚」, 소희본 「楊」

國出鐵，韓濊·倭皆從取之。諸市買皆用鐵，如中國用錢，又以供給二郡。俗喜歌舞飲酒。有瑟，其形似筑，彈之亦有音曲。兒生便以石壓其頭，¹⁰⁵⁾ 欲其褊，故¹⁰⁶⁾ 今辰韓人皆褊頭。男女¹⁰⁷⁾ 近倭。亦文身。便步戰，兵仗與馬韓同¹⁰⁸⁾。其俗行者相逢，皆住讓路。

弁辰與辰韓雜居，亦有城郭。衣服·居處與辰韓同，言語·法俗相似，祠祭鬼神有異，施竈皆在戶西。其瀆盧國，與倭接界。十二國亦有王。其人形皆大，衣服潔清，長髮。亦作廣幅細布，法俗特嚴峻。

Ⅲ. 『후한서』 한전의 수정

1. 『후한서』 판본과 사본

范曄(398~445)이 『후한서』를 저술한 시기는 432년 겨울 무렵부터라고 알려져 있다.¹⁰⁹⁾ 앞서 본대로 목판의 인쇄는 남송 景祐원년(1034)이지만, 현존하는 것은 남송 중기인 慶元4년(1198) 黃善夫刊本과 紹興本이다.¹¹⁰⁾ 소흥본은 官刻本으로 이후 명청대 관각만이 아니라, 1936년 商務印書館 百納本과 1959년 중화서국 점교본의 저본이 되었다.

범엽의 『후한서』는 『삼국지』만큼 판본 상의 문제는 많지 않다. 동이전의 경우 字句의 異同이나 해석이 어려운 부분도 없다고 할 수 있다. 일찍이 千寬宇의 「한전」의 대한 다음과 같은 표현은 이를 잘 보여준다.¹¹¹⁾

兩書(「삼국지」와 「후한서」.....인용자)의 韓傳을 문장상으로 비교해 보면, 삼국지는 아마도 그 찬자가 의존한 원자료를 존중하 듯, 비교적 세련이 덜 되고 소박한 표현이 많이 발견되는데 대하여, 「후한서」는 같은 내용도 간결하고 비교적 세련된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다. 이것은 「후한서」가 「삼국지」에 상당한 潤문을 가한 것을 의미하게 된다.

범엽이 『후한서』를 저술하기 이전 이미 10여종에 달하는 이른바 「諸家後漢書」가 존재하였다.¹¹²⁾ 이에 범엽이 중점을 둔 것이 序와 論, 贊이었다고 한다.¹¹³⁾ 445년 그가 處刑에 임박하여 조카들에게 남긴 書簡에서 “……至於循吏及六夷諸序論 筆勢縱放 實天下之奇作……”라고¹¹⁴⁾ 자부

104) 『어람·위지』(780, 辰韓) 「其國作屋，橫累木爲之，有似牢獄」本文으로 기재.

105) 「石壓」: 『어람·위지』(363, 人事部 頭上) 「魏志曰，辰韓國。兒生，以石壓其頭，欲其褊，故今辰韓人皆褊頭」에 따라 수정

106) 「今」: 『어람·위지』(363, 人事部 頭上) 「故今」

107) 「男女近倭」: 『후한서』 마한전 「其南界近倭，亦有文身者」, 같은 책 변진전 「其國近倭，故頗有文身者」로 기록.

108) 「兵仗與馬韓同」: 現傳 『삼국지』 마한의 兵仗器 기록 없음.

109) 吉川忠夫, 2001 「『後漢書』解題」, 『後漢書』第1冊, 岩波書店, p.374

110) 尾崎康, 1989 「後漢書」, 『正史宋版本の研究』汲古書院, pp.271~288.

111) 千寬宇, 앞의 논문, pp.221~222

112) 金靜庵, 『中國史學史』(台北: 鼎文書局, 1990), p.60의 後漢史著作表에 의하면, 范曄이전에 紀傳體 9종, 編年體 사서 2종이 보인다.

113) 吉川忠夫, 「范曄と劉知幾」 『東海史學』 4 (1967) ; 『六朝精神史研究』同朋舍出版 (1984), p.172.

하고 있음은 『후한서』를 저술할 때 어디에 중점을 두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송서』 범엽전에 「重家の 後漢書를 깎아서 一家를 세웠다」고 하였고, 劉知幾의 『史通』(古今正史篇)에도 「널리 학도를 모아 舊籍을 窮覽하여 번잡한 것을 깎아 간략하게 만든 것이 後漢書」라 하였다 한 것도 저술의 태도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후한초 廉斯人 蘇馬諤의 조공기사 외에 전적으로 『삼국지』를 대본으로 한 『후한서』 한전의 분량은 그 절반에 채 미치지 못한다.

이처럼 『후한서』 한전은 판본 상의 문제보다는 『삼국지』의 내용을 압축하되 간결한 문장을 추구하는 가운데 ‘變改’되는 것이 주된 지적의 대상이었다.¹¹⁵⁾ 『삼국지』 한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034년 목판으로 간행되기 이전의 『후한서』 동이전의 존재 형태도 중요한 부분이다. 언급한대로 북송 이전 史書와 類書 가운데 『후한서』 동이전을 인용한 경우는 필사본의 흔적을 남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太平御覽』과 『翰苑·蕃夷部』가 대상이다. 『후한서』 「한전」의 텍스트 수정을 위해 사용한 판본을 다음과 같다. 교감을 위한 저본은 1959년 중화서국 점교본을 사용하였다.

「韓傳」 교감 『삼국지』 판본

- 宋 紹興衢州刻本 : 商務印書館 百納本 → ‘紹興本’
建安刊 : 京都大學 人文科學研究所 → ‘建安本’
- 明 萬曆南京國子監刻本 : 하버드 燕京圖書館(마이크로 필름 열람) → ‘南監本’
崇禎十七年毛氏汲古閣本 : 고려대학교 도서관 → ‘汲古閣本’

2. 『후한서』 한전 교감

韓有三種. 一曰馬韓, 二曰辰韓, 三曰弁辰¹¹⁶⁾. 馬韓在西, 有五十四國, 其北與樂浪, 南與倭接. 辰韓在東, 十有二國, 其北與濊¹¹⁷⁾貊接. 弁辰在辰韓之南, 亦十有二國, 其南亦與倭接. 凡七十八國, 伯濟是其一國焉. 大者萬餘戶, 小者數千家, 各在山海間¹¹⁸⁾, 地合方四千餘里, 東西以海爲限, 皆古之辰國也. 馬韓最大, 共立其種爲辰王, 都¹¹⁹⁾目支¹²⁰⁾國, 盡王三韓之地. 其諸國王先皆是馬韓種人焉.

馬韓人知田蠶, 作綿¹²¹⁾布. 出大栗如梨. 有長尾雞¹²²⁾, 尾長五尺. 邑落雜居, 亦

114) 『宋書』 69. 「范曄傳」.

115) 千寬宇, 앞의 논문

116) 「辰」: 남송 紹興本 이하 諸本 「辰」

117) 「濊」: 『한원·후한서』 「穢」

118) 「間」: 남송 建安本 「間」

119) 「都」: 『한원·후한서』 「治」, 남송 建安本 「都」

120) 「支」: 『어람·후한서』 「友」.

121) 「綿」: 남송 建安本 「絲」

無城郭。作土室，形如冢，開戶在上。不知跪拜。無長幼男女之別。少綱紀，國邑雖有主帥，不能相制御。其葬有棺無槨，不知騎乘牛馬。¹²³⁾不貴金寶錦罽。¹²⁴⁾唯重瓔珠，以綴衣爲飾，及懸¹²⁵⁾頸垂耳。大率皆魁頭露紒。魁頭猶科頭也。謂以髮縈繞成科結也。紒音計。布袍草履。其人壯勇，少年有築室作力者，輒以繩貫脊皮，縋以大木，嚙呼爲健。不以爲痛也。¹²⁶⁾善用弓稍矛櫓，雖有鬪爭攻戰，而貴相屈服。俗信鬼神，¹²⁷⁾常以五月田竟¹²⁸⁾祭鬼神，晝夜酒食¹²⁹⁾羣聚歌舞，舞輒數十人，相隨蹋地爲節。十月農功畢，亦復如之。諸國邑各以一人主祭天神，號爲天君。又立蘇塗，魏志曰，諸國各有別邑，爲蘇塗，諸亡逃至其中皆不還之，蘇塗之義，有似浮屠。建大木以懸¹³⁰⁾鈴鼓，事鬼神。¹³¹⁾其南界近倭，亦有文身者。

辰韓，耆老自言秦之亡人，避苦役，適韓國。馬韓割東界地與之。其名國爲邦，弓爲弧，賊爲寇，行酒爲行觴，相呼皆¹³²⁾爲徒，有似秦語，故或名之爲秦韓。有城柵屋室，諸小別邑。各有渠帥，大者名臣智，次有儉¹³³⁾側，次有樊祗，次有殺奚，次有邑借。皆其官名。土地肥美，宜五穀。知蠶桑，作縑布。乘駕牛馬，嫁娶以禮，行者讓路。國出鐵，濊¹³⁴⁾·倭·馬韓並從市之。凡諸貨易，皆以鐵爲貨。俗喜歌舞飲酒鼓瑟。兒生欲令其頭扁，皆押之以石。扁音，補典反。

弁辰與辰韓雜居。城郭衣服皆同，言語風俗有異。其人形皆長大，美髮，衣服潔清。而刑法嚴峻。其國近倭，故頗有文身者。

初，朝鮮王準¹³⁵⁾爲衛滿所破，乃將其餘衆數千人走入海，攻馬韓，破之，自立爲韓王。準後滅絕，馬韓人復自立爲辰王。建武二十年，韓人廉斯人蘇馬謨等詣樂浪貢獻。廉斯，邑名也。謨音是。光武封蘇馬謨爲漢廉斯邑君，使屬樂浪郡，四時朝謁。靈帝末，韓·濊¹³⁶⁾並盛，郡縣不能制，百姓苦亂¹³⁷⁾，多流亡入韓者。

122) 「長尾雞」：『初學記』에 인용된 「廣志」에 “長尾雞，尾細而長，長五尺餘，出東夷韓國”

123) 「少綱紀~不知騎乘牛馬」：『어람·후한서』에 따라 보임.

124) 「不知騎乘牛馬，不貴金寶錦羅」：위에 따라 「不貴金寶錦羅，不知騎乘牛馬」 기재순서 조정.

125) 「懸」：남송 소흥본 등 제본 「縣」, 『어람·후한서』, 명 급고각본 「懸」에 따라 수정

126) 「不以爲痛也」：『한원·후한서』에 따라 보임.

127) 「善用弓稍矛櫓~俗信鬼神」：『어람·후한서』에 따라 보임. 『진서』 마한전에는 「善用弓楯矛櫓，雖有鬪爭攻戰，而貴相屈服。俗信鬼神」. ‘稍’을 ‘楯’이라 한 것이 다르다.

128) 「竟」：『어람·후한서』 「競」

129) 「食」：남송 소흥본 이하 제본 「會」. 『어람·후한서』에 따라 수정.

130) 「懸」：『어람·후한서』에 따라 수정.

131) 「事鬼神」：『한원·후한서』에는 「蘇塗之義，有似於西方淳圖之」가 붙음. ‘淳圖’는 ‘浮屠’의 誤記.

132) 「皆」：위에 따라 보임.

133) 「儉」：남송 소흥본 이하 諸本 「儉」

134) 「濊」：『어람·후한서』 「獺」

135) 「準」：『어람·후한서』 「淮」

136) 「濊」：『어람·후한서』 「獺」

馬韓之西，海島上有州胡國¹³⁸。其人短小，髡頭，衣韋衣，有上無下。好養牛豕。乘船往來，貨市韓中。

IV. 「한전」의 字句와 標點

1. 『삼국지』의 字句와 표점

① 교감 개요 : 총 교감 87개소

- 판본상의 차이 30조, 刊刻이전 자료에서 50조
- 교감 내용 : 토착지명, 관명 47조, 유사 자구(支-友, 爰-奚 등) 40조

② 脫文 21字

- 或以懸頸垂耳, 至於袂.(3字)
- 且以爲健. 善用弓稍矛櫓, 雖有鬪爭攻戰, 而貴相屈服. 俗信鬼神, 常以五月下種訖祭鬼神.(17字)
- 弁辰樂奴國 (1字)

③ 訛文 9字

- 臣智檄韓忿 → 臣瀆沽韓忿
- 有槨無棺 → 有棺無槨
- 其十二國屬辰王. 辰王常用馬韓人作之, 世世相繼, 辰王不得自立爲王
→ 其十二國屬辰韓. 辰韓王常用馬韓人作之, 世世相繼, 辰韓不得自立爲王
- 男女近倭 → 南與近倭

④ 倒文 : 3개소 13字

- 不以金銀錦繡爲珍. 其人性強勇. 魁頭露紒, 如炁兵
→ 足履革躡蹻. 其人性強勇, 其國中有所爲, 及官家使築城郭,
- 亦復如之. 信鬼神. 國邑各立一人
→ 而貴相屈服. 俗信鬼神, 常以五月下種訖祭鬼神.
- 但衣韋, 好養牛及豬. 其衣有上無下, 略如裸勢. →
但衣韋, 其衣有上無下, 略如裸勢. 好養牛及豬.

137) 「苦亂」: 『어람·후한서』 「亂苦」

138) 「州胡國」: 남송 소흥본 이하 諸本 「州胡國」

⑤ 衍文 : 7字

- 弁軍彌國
- 弁辰安邪國 · 馬延國 · 弁辰瀆盧國

⑥ 標點 : 3개소

- 逆取戶來, 降伴輩尚得千人, 其五百人已死.
→ 逆取戶來降伴輩, 尚得千人, 其五百人已死.
- 桓靈之末, 韓 · 濊疆盛, 郡縣不能制, 民多流入韓國.
→ 桓靈之末, 韓濊疆盛, 郡縣不能制, 民多流入韓國.
- 國出鐵, 韓 · 濊 · 倭皆從取之.
→ 國出鐵, 韓濊 · 倭皆從取之.

2. 『후한서』의 자구와 표점

① 교감 개요 : 22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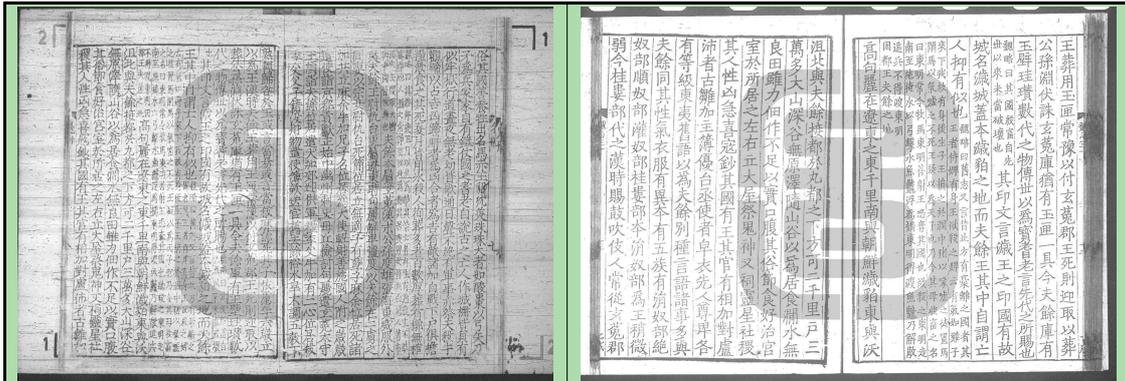
- 판본상의 차이 8조, 刊刻이전 자료에서 13조 기타 1조
- 교감 내용 : 토착지명 등 5조, 유사 자구(濊-穢, 會-食 등) 40조
- 訛文 · 倒文 · 衍文 및 표점 상의 논란도 많지 않다.

② 脫文 52(49)字

- 無長幼男女之別. 不貴金寶錦罽.
→ 長幼男女之別. 少綱紀, 國邑雖有主帥, 不能相制御. 其葬有棺無槨, 不知騎乘牛馬. 不貴金寶錦罽.
- 嚙呼爲健. 常以五月田竟祭鬼神,
→ 嚙呼爲健. 不以爲痛也. 善用弓稍矛櫓, 雖有鬪爭攻戰, 而貴相屈服. 俗信鬼神, 常以五月田竟祭鬼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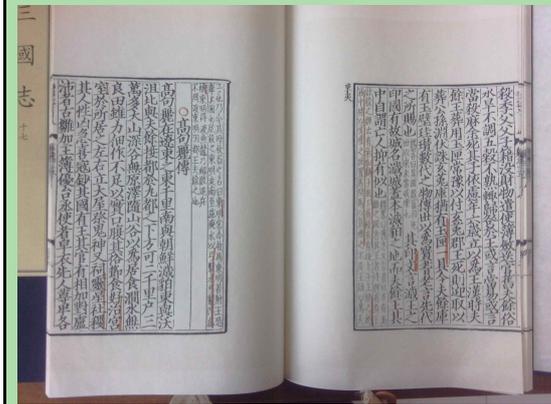
V. 맺음말

(그림 1) 송원판 『삼국지』 6종



① 『삼국지』蜀刻小字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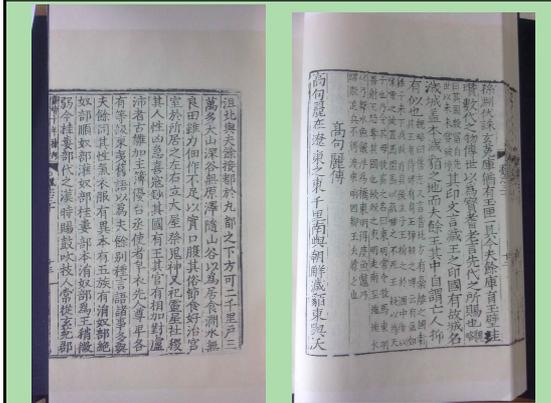
② 『삼국지』紹興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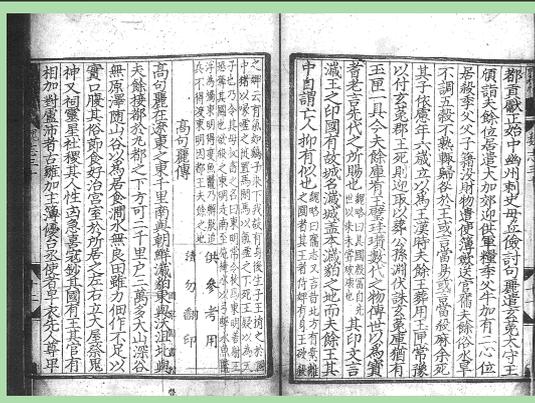
③ 『삼국지』紹熙建本



④ 『삼국지』紹熙建本



⑤ 『삼국지』宋衢州刻元明遞修本



⑥ 『삼국지』元大德 池州路儒學本

- ① 『삼국지』蜀刻小字本 (北京, 북경도서관 소장, 남송초기)
- ② 『삼국지』紹興本 (北京, 중국국가도서관 소장, 남송전기)
- ③ 『삼국지』紹熙建本 (北京, 중국국가도서관 소장, 남송중기)
- ④ 『삼국지』紹熙建本 (東京, 宮內廳 書陵部 소장, 남송중기)
- ⑤ 『삼국지』宋衢州刻元明遞修本 (북경대학도서관 소장, 송원명 遞修本 일명 三朝本)
- ⑥ 『삼국지』元大德 池州路儒學本 (臺北, 국가도서관 소장, 1306년)

자료 1.

『진서』 97, 동이 마한·진한

韓種有三，一曰馬韓，二曰辰韓，三曰弁韓。辰韓在帶方南，東西以海爲限。馬韓居山海之間，無城郭，凡有小國五十六所，¹³⁹⁾大者萬戶，小者數千家，各有渠帥。俗少綱紀，無跪拜之禮。居處作土室，形如冢。其戶向上，舉家共在其中。無長幼男女之別，不知乘牛馬，畜者但以送葬。俗不重金銀錦罽，而貴瓔珠，用以綴衣或飾髮垂耳。其男子科頭露紒，衣布袍，履草屨。性勇悍，國中有所調役，及起築城隍，年少勇健者皆鑿其背皮，貫以大繩，以杖搖繩，終日謹呼力作，不以爲痛。善用弓楯矛櫓，雖有鬪爭攻戰，而貴相屈服。俗信鬼神，常以五月耕種畢，羣聚歌舞以祭神。至十月農事畢，亦如之。國邑各立一人主祭天神，謂爲天君。又置別邑，名曰蘇塗，立大木懸鈴鼓。其蘇塗之義，有似西域浮屠也，而所行善惡有異。武帝太康元年二年，其主頻遣使入貢方物。七年八年十年，又頻至。太熙元年，詣東夷校尉何龕上獻。咸寧三年，復來。明年，又請內附。

辰韓在馬韓之東，自言秦之亡人避役入韓。韓割東界以居之。立城柵。言語有類秦人，由是或謂之爲秦韓。初有六國，後稍分爲十二。又有弁辰，亦十二國。合四五萬戶，各有渠帥，皆屬於辰韓。辰韓常用馬韓人作主，雖世世相承，而不得自立，明其流移之人，故爲馬韓所制也。地宜五穀，俗饒蠶桑，善作縑布，服牛乘馬。其風俗有類馬韓，兵器亦與之同。初生子，便以石押其頭使扁。喜舞，善彈瑟，瑟形似筑。武帝太康元年，其王遣使獻方物。二年，復來朝貢。七年又來。

139) 「魏略曰：“三韓各有長帥 其置官，大者名臣智，次曰邑借。凡有小國五十六，總十餘萬戶。」
(『한원』 삼한전 인용 魏略)

백제 지역 출토 기와 명문에 대한
몇 가지 검토와
論山 皇華山城 出土 瓦銘文 지명 표기
'葛那城, 笠乃, 立乃'의 국어사적 의의

이건식(단국대학교)

백제 지역 출토 기와 명문에 대한 몇 가지 검토와 論山 皇華山城 出土 瓦銘文 지명 표기 ‘葛那城, 笠乃, 立乃’의 국어사적 의의

이건식(단국대학교)

목차

- I. 백제 지역 출토 기와 명문에 대한 몇 가지 검토
 1. 서언
 2. 백제 지역 출토 기와 명문에 대한 몇 가지 검토
 - 2.1. 인각와 유형 설정과 적용에 대한 검토
 - 2.2. IIA나 유형 ‘中水’銘 인각와 판독
 - 2.3. 금산 백령산성 목곽고 내부 출토 명문에 대한 국어학적 검토
 - 2.4. 금산 백령산성 출토 기와 명문 ‘丙辰瓦/栗峴□’의 栗峴 위치 비정
 - 2.5. 백제 지역 출토 인각와의 작성 연대
 3. 결언

 - II. 論山 皇華山城 出土 瓦銘文 지명 표기 ‘葛那城, 笠乃, 立乃’의 국어사적 의의
 1. 서언
 2. ‘백제 현명 加知奈縣, 신라 경덕왕 개정 현명 市津, 고려사 薪浦’ 등의 관련 지명 표기
 - 2.1. 백제 현명 加知奈縣과 그 이표기
 - 2.2. 신라 경덕왕 개정 현명 市津과 별칭 利樓津
 - 2.3. 『고려사』에 제시된 加知奈縣의 별칭 薪浦
 3. 加知那, 市津, 薪浦 등의 별칭 관계
 - 3.1. 조선 시대 논산 지역 하천과 경로
 - 3.2. 역사문화적 배경을 통해 본 ‘加知那, 市津, 薪浦’ 등의 별칭 관계
 - 1) 경덕왕 개정 명칭 市津 등장으로 인한 ‘加知奈/笠乃/立乃/仁川’ 하천명의 위치 변경
 - 2) 은진현 소재 연산현 소관 連山江倉의 위치를 통해 본 薪浦의 위치
 - 3) 薪浦와 沙橋川의 이표기 관계
 4. 加知奈의 이표기 ‘葛那, 加乙乃, 笠乃, 立乃, 仁川’ 등의 국어사적 의의
 - 4.1. 지명의 차자 표기 적용 방법 변화 과정에 대한 암시
 - 4.2. ‘갓/笠’과 ‘가리[곡식이 쌓인 것]’의 동일 어원 관계
 5. 결언
-

I. 백제 지역 출토 기와 명문에 대한 몇 가지 검토

1. 서언

(생략함)

2. 백제 지역 출토 기와 명문에 대한 몇 가지 검토

2.1. 인각와 유형 설정과 적용에 대한 검토

권인한·김경호·윤선태 편(2015L: 18)에서 ‘인각부의 수, 형태, 글자수’ 등의 기준에 따라 백제 지역 출토 인각와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2)

| 인각부의 수 | 설명 | 형태 | 설명 | 글자수 | 설명 |
|--------|--------|----|----|-----|----|
| I | 인각부 1개 | A | 원형 | 가 | 1자 |
| | | | | 나 | 2자 |
| II | 인각부 2개 | B | 방형 | 다 | 4자 |
| | | | | 라 | 6자 |

권인한·김경호·윤선태 편(2015L)에서 ‘IA가’ 유형과 ‘IIA가’ 유형의 구분을 형식적으로 구분했거나 잘못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모순적인 분류를 찾을 수 있다.

(3) 가. IA가 유형

斯(관북리 유적), 斯(부여 쌍북리), 斯(부여 쌍북리 현내들/북포), 斯(능산리사지), 斯(청양 汪津리 요지), 斯(익산 왕궁리), 斯(익산 오금산성)

나. IIA나 유형

斯(정림사지), 斯(군수리사지)

‘IA가’ 유형과 ‘IIA나’ 유형의 구별 기준의 논거를 필자는 찾을 수 없었다. 적용 상의 오류로 판단된다.

斯가 ‘IIA나’ 유형의 두 번째 글자에 나타난다는 점에서 ‘IA가’ 유형으로 소개된 인각와는 ‘IIA나’ 유형에서 첫 번째 글자만 남겨진 것과 두 번째 글자만 남겨진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가. ‘IIA나’ 유형 중 첫 번째 글자만 남은 경우

卯(부소산성), 卯(관북리 유적), 卯(부여 쌍북리), 卯(군수리사지), 卯(규암면 오수리), 卯(부여 출토 및 출토 미상), 卯(청양 汪津리 요지), 卯(익산 왕궁리), 卯(미륵사지), 卯(익산 저토성), 丙(부소산성), 丙(관북리 유적), 丙(부여 쌍북리), 丙(부여 쌍북리 602-10), 丙(익산 왕궁리), 丙(미륵사지), 丙(익산 저토성), 巳(석목리), 寅(부소산성), 寅(관북리 유적), 寅(부여 관북리 160), 寅(부여 쌍북리), 寅(부여 쌍북리 두시력골), 寅(동남리 백제 생활유적), 寅(부여 출토 및 출토 미상), 寅(청양 汪津리 요지), 寅(익산 왕궁리), 寅(미륵사지), 辰(부소산성), 辰(관북리 유적), 辰(부여 쌍북리 현내들/북

포), 辰(부여 쌍북리 602-10), 辰(구아리), 辰(가탑리유적), 辰(군수리사지), 辰(부여 출토 및 출토 미상), 辰(청양 汪津리 요지), 辰(익산 왕궁리), 辰(미륵사지), 辰(제석사지),

나. 'IIA나' 유형 중 두 번째 글자만 남은 경우

官(관북리 유적), 官(부여 쌍북리 현내들/북포), 官(익산 왕궁리), 官(미륵사지), 大(부소산성), 刀(부소산성), 刀(화지산), 木(부소산성), 木(관북리 유적), 木(부여 중앙로-백강로 연결부지), 木(왕흥사지), 福(부소산성), 福(군수리유적), 卩(부소산성), 卩(관북리 유적), 卩(부여 쌍북리 현내들/북포), 卩(청양 汪津리 요지), 卩(익산 왕궁리), 北(부소산성), 斯(관북리 유적), 斯(부여 쌍북리), 斯(부여 쌍북리 현내들/북포), 斯(능산리사지), 斯(청양 汪津리 요지), 斯(익산 왕궁리), 斯(익산 오금산성), 月(관북리 유적), 主(공산성), 七(공산성), 七(부소산성), 七(능산리사지), 土(부소산성), 解(군수리유적),

'IA가' 유형이 본래 'IIA나' 유형이었다는 인식은 인각와 문자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준다. 'IIA나' 유형의 첫 번째 글자와 두 번째 글자의 종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IA가' 유형의 글자도 나누어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

| IIA나 첫 번째 글자 | IIA나 두 번째 글자 | IA가 글자 | IA가 글자 |
|--------------|--------------|--------|--------|
| 甲 | 古 | | |
| | | | 官 |
| | | | 大 |
| 癸 | 刀 | | 刀 |
| 戈 | 毛 | | |
| | | 丙 | 木 |
| | | | 福 |
| 己 | 部 | | 卩 |
| | | 卯 | 北 |
| 戊 | 斯 | | 斯 |
| 未 | 市 | | |
| | | | 月 |
| 巳 | 酉 | 巳 | |
| 申 | 助 | | |
| | | | 主 |
| 午 | 止 | | |
| | | | 七 |
| | | | 土 |
| 酉 | 布 | | |
| | | 寅 | |
| 田 | | | 解 |
| | | 辰 | |
| 兄 | | | |

(4)는 IIA나 유형에서 첫 번째 글자는 12지 또는 10간의 의미를 표현했을 가능성을 열어 주고 있다. 즉 '未, 午, 卯, 寅, 巳, 申, 酉' 등은 12지를, '丙, 己, 戊, 甲, 癸' 등은 10간의 의미를

표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IA나 유형인 ‘己申(관북리 유적), 己丑(부소산성), 己丑(관북리 유적), 己丑(능산리사지), 己丑(구교리), 己丑(익산 왕궁리), 己丑(미륵사지)’ 등 육십갑자의 명문을 고려하면 ‘丙, 己, 戊, 甲, 癸’ 등의 10간 유형과 ‘未, 午, 卯, 寅, 巳, 申, 酉’ 등은 12지 유형은 육십갑자 명문의 생략 표기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IIA나 유형에서 첫 번째 글자의 판독을 새로이 할 가능성이 찾아진다. 하나는 戈를 戊로 새로이 판독하는 것이다. 즉 2건의 ‘戈-斯’와 3건의 ‘戈-止’로 판독한 IIA나 유형은 각각 ‘戊-斯’와 ‘戊-止’로 판독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다른 하나는 田을 甲 또는 申으로 판독하는 것이다.

兕의 경우 ‘癸의 별자, 兕의 별자’ 등의 견해가 제안되었는데, 자형 상으로 보면 兕의 이체자인 兕으로 판단된다. 『대만이체자사전』의 兕 조에는 ‘俗書儿形 或作兀形’라는 설명이 있다. 兕은 10간의 의미를 표현한 것이 아니므로 앞에서 기술했던 일반화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

IIA나 유형에서 두 번째 글자는 어떤 부류의 의미를 표현했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4)를 통해 布로 판독한 것을 市로 판독할 가능성이 찾아진다. 권인한·김경호·윤선태 편(2015L: 126)에서는 ‘상부에서 내려오는 획이 뚜렷하여’에 근거하여 布로 판독하였다. 그러나 市의 획이 좌측으로 올라가 찍혀 있어 市가 布처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IIA나 유형 두 번째 글자 部와 IA가 유형 글자 卩는 卩가 部의 생략자일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러한 가능성 刀 역시 卩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권인한·김경호·윤선태 편(2015L)에서는 部下로 이해한 견해를 배제하고 IA나 유형의 刀下를 部下로 이해하였지만 IA나 유형 寺下乙瓦를 고려하여 IA나 유형의 刀下를 部下로 이해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좋을 듯하다.

또한 방형의 인각와인 IB가 유형에는 ‘犬, 功, 官, 北, 中, 七, 下’ 등의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이 글자 중에서 ‘官, 北, 七’ 등은 IA가 유형에도 나오는 글자이다.

2.2. IIA나 유형 ‘中水’銘 인각와 판독

권인한·김경호·윤선태 편(2015L: 227)에서는 익산 오금산성에 출토된 ‘IA가’ 유형 미상 명문의 인각와를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원광대학교 마한 백제 연구소가 1985년에 京으로 추정된 견해를 소개하고, ‘획손이 심하여 京자로 판독하기 어렵다’는 근거로 미상자로 추정하였다. 인각와 명문은 다음과 같다.

(5)



(5)에서 아래 글자 水는 水가 분명하게 판독된다. 다만 위 글자 中은 자획이 분명치 않다. 그런데 공산성 성안마을 백제유적의 ‘IB나’ 유형 ‘中水’銘의 경우에도 水는 그 자획이 분명하나

중의 경우에는 그 자획이 분명치 않다. 水의 경우에는 두 인각와에 새겨진 자형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어 익산 오금산성에 출토된 인각와를 IB나 유형인 ‘中水’銘으로 판단할 수 있다.

2.3. 금산 백령산성 목곽고 내부 출토 명문에 대한 국어학적 검토

금산 백령산성의 목곽고에서 출토된 기와 명문의 전문과 현대어 번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6) 가. 전문

前面) 上水瓦作五十九

夫瓦九十五

作人那魯城移文

側面1) □卅文□□□□□□□□

側面2) 竹内□□□(手決)

나. 현대어 번역

(上)水와 59, 夫瓦 95를 만들었다. 만든 사람은 那魯城의 移文이다. <권인한·김경호·윤선태 편(2015ㄱ: 435)>

(6가) 전면 명문의 의미는 대략적으로는 (6나)의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6나)의 현대어 번역은 서술어 作의 왼쪽에 위치한 上水瓦와 作의 오른쪽에 위치한 夫瓦를 모두 서술어 作의 목적으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기묘한 것이다.

의미 상 ‘기와’는 서술어 作의 목적어이다. 그런데 이 목적어가 서술어 作의 왼쪽에 위치했다는 것은 (6가) 전면 제1행의 上水瓦作五十九가 우리말 표현인 점을 확인해 준다. 上水를 제외하고 현대어로 번역하면 ‘기와 지은 것 59’ 정도가 될 것이다. 서술어 作의 목적어가 서술어 왼쪽에 위치한 사례로 「新羅華嚴經寫經造成己(755)」 ‘楮皮脫那, 脫皮練那, 紙作伯士那’ 등을 들 수 있다.

(6가) 전면 제2행 夫瓦九十五의 경우 瓦 다음에 서술어 作을 보충하면 제1행과 동일한 구문이 된다. 하지만 夫瓦九十五에 作을 보충하지 않아도 그 의미는 제1행의 표현 의미와 유사하다. 즉 夫瓦九十五는 ‘夫瓦는 95’ 정도로 번역될 수 있다.

(6가) 전면의 명문에서 上이 1 글자 擡頭된 점이 눈에 띈다. 上을 ‘올림’의 의미로 파악하고 존경을 표하기 위하여 上이 擡頭된 것으로 파악하면 (6가)에 전면에 제시된 명문은 ‘올림. 水瓦 지은 것 59, 夫瓦는 59’ 정도가 된다. 물품을 올린다는 뜻의 上을 기재하고 上 뒤에 올리는 물품을 기재한 사례는 고려 시대 태안 해역 출토 목간에서 흔히 발견된다. 그 사례의 하나로 ‘大卿庖宅 上 古阜郡 田出 大 壺石 入 拾伍斗 / 次知 果祚 <마도 2호선 31(죽찰)>’을 들 수 있다. 측면에 手決이 있다는 점에서도 上을 ‘올림’의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권인한·김경호·윤선태 편(2015ㄴ: 438)에 따르면 上을 ‘올림’의 의미로 파악하는 견해가 제안되었다고 하나 그 견해의 제안자를 밝히지 않아 그 견해의 논거를 검토하지는 못하였다.

권인한·김경호·윤선태 편(2015ㄴ: 438)에 따르면 上水瓦에 대한 견해로 ‘夫瓦와 같은 종류의 명칭, 첫머리 표식 부호, 윗물받이 기와, 常女瓦’ 등이 제안되었고 한다.

손환일(2009: 132)은 (上)水瓦를 ‘윗물받이 기와’로 풀이하여 ‘암키와’로 夫瓦를 ‘수키와’로 풀

이하고 있다. 그런데 (上)水瓦를 ‘암키와’, 夫瓦를 ‘수키와’로 이해하려는 손환일(2009: 132)의 견해에 문제가 있다. 夫瓦는 女瓦와 함께 조선 시대에만 기록되는 용어로 조선 이전 시기의 자료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점이다. 또 (上)水瓦를 ‘윗물받이’의 의미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 ‘윗물받이’의 의미가 ‘암키와’의 의미와 직접적인 연관 관계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암키와’의 瓦筒(模骨) 구배는 ‘숫키와’보다 완만하여 凹凸의 凹를 ‘암’으로 비유하여 표현한 것이고, ‘숫키와’의 瓦筒 구배는 ‘암키와’보다 급격하여 凹凸의 凸을 ‘숫’으로 비유하여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암키와’와 ‘숫키와’의 비유적 표현을 중국과 일본에서는 각각 ‘鴛瓦-鴛瓦’¹⁾, ‘男瓦-女瓦’²⁾ 등으로 대립시키고 있다. 조선 시대 ‘夫瓦-女瓦’의 대립에서 女는 婦의 의미를 가진 것이다. ‘암키와’와 ‘숫키와’의 결합 관계를 일본은 男女의 관계로 비유했지만 한국과 중국은 夫婦의 관계로 비유하여 ‘암키와’와 ‘숫키와’의 결합 관계가 강한 것임을 강조한 표현이라 하겠다. 조선 시대 ‘夫瓦-女瓦’의 의미 표현이 ‘암키와’의 ‘숫키와’의 강한 결합 관계의 필요성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점에서 ‘夫瓦-(上)水瓦’의 의미 대립 관계는 이해되기 어렵다.

夫瓦는 조선 시대 이후에만 발견되는 용어인 점에서 夫瓦를 새로이 판독할 필요성이 찾아진다. 금산 백령산성 목곽고 내부 출토 명문 중 火瓦의 사진 자료는 다음과 같다.

(7) 금산 백령산성 목곽고 내부 출토 명문 중 火瓦



(7)에서 글자의 획은 깊게 파여 있음을 알 수 있다. 火의 경우에 人 획이 깊게 파여 있고, 또 人 획의 상단에 수평으로 두 개의 점획이 분리되어 깊게 파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두 개의 점획 아래에 수평의 일직선 획은 파인 것으로 볼 수 없고 기와 표면의 흔한 자죽으로 생각된다. 설령 이 일직선이 글자의 획이라고 하더라도 이 일직선의 획 위에 있는 두 개의 점획이 연결되어 서사되었다고는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두 개의 점획이 분리되었고, 점획 아래에 있는 일직선이 기와의 자죽으로 파악하면 火로 판독하는 것이 바른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금산 백령산성의 목곽고 내부에서 출토된 기와 명문에서는 火瓦-水瓦의 대립 의미를 보여 준다.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水瓦의 의미가 ‘生瓦(굽지 아니한 기와)’인 것으로 추정할 수

1) 『漢韓大辭典』. 【鴛鴦瓦 원앙와】 서로 짝을 이룬 기와. 鴛鴦. 鴛瓦. /南朝梁, 蕭統《講席將畢賦三十韻詩依次用》日麗鴛鴦瓦, 風度蜘蛛屋.
 2) 正倉院文書로 天平勝宝八年(764)八月一四일에 작성된 「造東大寺司牒」에 ‘男瓦玖仟枚 女瓦壹万捌仟枚 / 堤瓦貳仟肆伯枚 鑿瓦參伯枚 / 宇瓦參伯枚’의 내용이 있다.

있다.

(8) 가. 唯鐵則只通水鐵 <태종실록 1406년(태종 6) 5월 10일>

나. 水綿紬十匹 <성종실록 1480년(성종 11) 7월 22일>

다. 其後數朔 以潛商之水蓼 潛賣於灣商事 <순조실록 1827년 8월 4일>

(8가)의 水鐵, (8나)의 水綿紬, (8다) 水蓼 등은 한어로는 각각 ‘生鐵, 生綿紬, 生蓼’ 등이다. 生鐵, 生綿紬, 生蓼’ 등에서의 生은 한어에서 ‘날 것, 가공하지 않은 것³⁾’의 의미를 가진다. 水鐵은 ‘무쇠’를 표기한 것으로 이 때의 ‘물’은 ‘가공하지 않은 것’을 뜻한다. ‘가공한 쇠’는 우리말로 ‘시우쇠/熟鐵’이라 한다.

후대의 자료이긴 하지만 火餅이 ‘모닥불에 구워낸 떡⁴⁾’이므로 火瓦의 의미를 ‘불로 구워낸 기와’로 파악할 가능성이 있다. 고려 시대 기와 명문에 대한 여러 연구를 정리한 홍영의(2015)의 연구에 기대면 고려 시대 기와 명문에 ‘瓦, 瓦草’ 등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瓦는 ‘기와’를 뜻하는 한어 차용어이나 瓦草는 15세기어의 ‘디새’ 정도를 표기한 차자 표기로 생각된다. ‘디새’는 ‘덜새’에서 온 것으로 ‘덜-’의 용언 어간 자체가 후행 명사 ‘새’와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결국 瓦草에서 瓦는 우리말 용언 ‘불 지르다’의 의미인 ‘덜⁵⁾’의 의미를 차자 표기한 것이고, 草는 ‘지붕’의 역할을 하는 ‘이영’을 뜻하는 ‘새⁶⁾’를 차자 표기한 것이다. 따라서 ‘덜새/瓦草’는 ‘불 지른 이영’ 곧 ‘불로 구워낸 기와’의 뜻이어서 ‘덜새/瓦草’와 火瓦의 의미는 동일한 것으로 생각된다.

제1행과 제2행처럼 제3행 作人那魯城移文도 우리말 어순을 표기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作人那 魯城 移文’ 정도로 띄어쓰기 할 수 있고 ‘만든 사람이(나) 魯城에 통보하는 글’ 정도의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만든 사람이(나)’는 하위문의 절 성분이 상위문으로 인상되어 주어 노릇을 하는 것으로 ‘만든 사람이 魯城에 통보하는 글’이 된다. 15세기어 중에서 『월인석보』 7:3b의 ‘아미나 와 가지리 잇거든’에서 ‘아미나’가 하위문의 절 성분이 상위문의 주어로 인상된 것으로 ‘아미나 와’는 ‘아무가 와’ 정도의 의미를 표현한 것이다. 하위문의 절 성분이 상위문으로 인상되어 상위문의 주어가 되는 경우는 『신라화엄사경조성기(755)』에서도 발견된다. 즉 ‘經心匠那 佛菩薩像 筆師 走使人那 菩薩戒 受 令彌/經心匠이나 佛菩薩像 筆師(나) 심부름군이나 菩薩戒를 받게 시키며’에서 ‘經心匠那, 筆師, 走使人那’ 등은 하위문에서 절 성분이었으나 상위문에 인상되어 주어 노릇을 하고 있다.

명문의 기입 시기가 조선 시대는 아니라서 魯城을 조선 시대 魯城縣으로 파악할 수 없다. 6현을 거느린 魯山州를 魯城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한다. 하지만 이 주장의 명확한 근거는 없다.

移文은 ‘적어도 명나라 이후에 지위와 동등한 관청이 주고 받는 문서’를 특정한 것이다. 하지

3) 『漢韓大辭典』, 生, “[]●三十[]익히지 아니하다. 날것. 《荀子, 禮論》 飯以生稻, 喰以槁骨, 反生術矣. 《史記, 項羽本紀》 項王曰, 賜之彘肩, 則與一生彘肩. []●三十一[]가공하거나 단련하지 아니하다. /唐, 韓愈《與陳給事書》 送孟郊序一首, 生紙寫, 不加裝飾.”

4) 『한국한자어사전』, 【火餅 화병】 “밀가루나 메밀가루를 반죽하여 모닥불에 구워낸 떡. 《林園十六志, 鼎俎志 2, 炊餠之類, 餅餌》 火餅方. 蕎麥搗粉細羅過, 水調若稠粥, 先用櫛櫟薪爇於庭, 方其火焰熾, 而煙氣熄, 急以蕎麥汁傾潑火上, 則其汁自然焦乾成餅, 即取起, 以刀刮去灰燼及焦黑者, 只取黃熟者, 蘸蜜供之, 此山峽眞率之食品也.”

5) 『삼강신속행실도』, 충렬도, 11, “불라 부로물 困야야 불 덜어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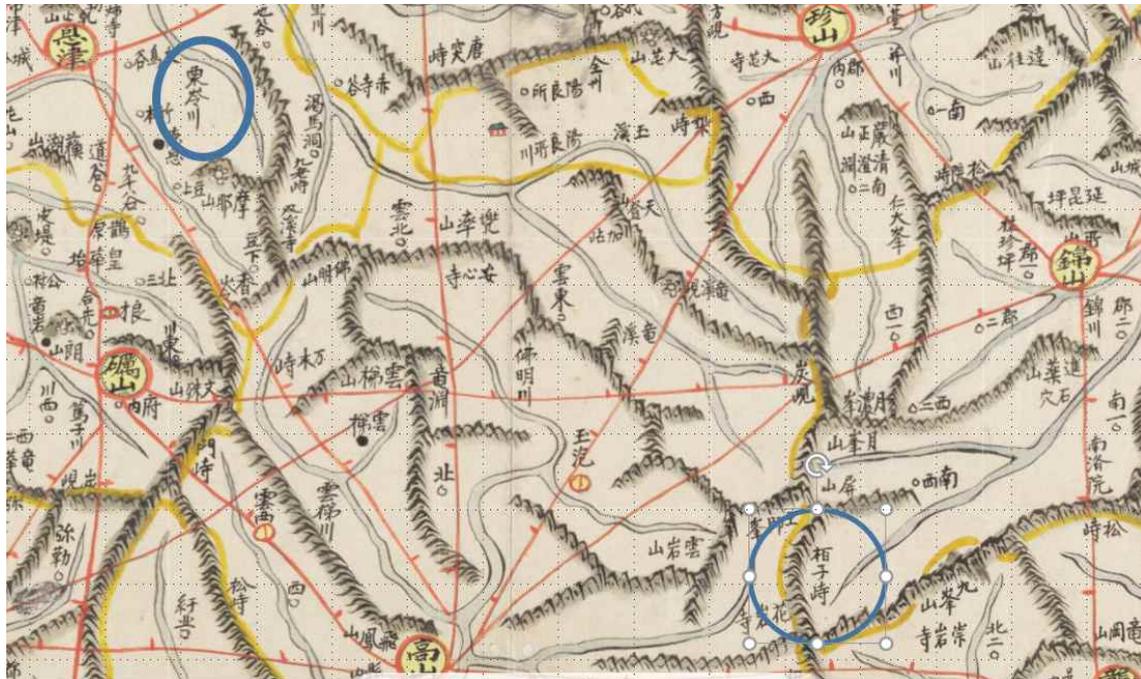
6) 『역어유해』 상:17, “새 니다/苫房子”

만 여기에서의 移文은 ‘移 文’ 정도의 의미로 파악되는 것으로 ‘移 文’은 ‘베풀어 주는 글’ 정도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삼국사기』의 ‘王移書百濟請救(新羅 祇摩尼師今 十四年 春正月), 阿滄吉宣謀叛 發覺 懼誅亡入百濟 王移書求之 百濟不許(阿達羅尼師今 十二年冬十月)’ 등에 사용된 移가 바로 ‘글로 사정을 알린다’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文心雕龍』의 제 20장 ‘檄移’에서 檄文과 移文이 대립되어 설명되었다고 한다. 즉 檄文은 ‘적에게 통보하는 글’ 이고 移文은 ‘동지에게 통보하는 글’로 대비되어 설명되었다고 한다.

2.4. 금산 백령산성 출토 기와 명문 ‘丙辰瓦/栗嶺□’의 栗嶺 위치 비정

규장각 소장 『해동지도』에서 栗嶺川과 栢子峙가 제시된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9)



위에서 보듯이 栗嶺川과 栢子峙의 거리가 멀지 않다는 점이 주목된다. 지명의 표기에서 흔히 嶺과 嶺은 교체되므로 栗嶺과 관련하여 조선 시대 恩津縣 栗嶺川은 동일 지명일 가능성이 있다.

일본 서기 548년 10월 조에 나온 백제 지명 得爾辛의 후에 주목하여 이병호(2013)는 백령산 성에서 출토된 기와 명문 ‘耳淳辛’을 지명 표기로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栗嶺川의 근처에 古德恩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德恩은 백제 때는 德斤이므로 일본 서기의 得爾辛과 관련 지을 수 있다. 일본 측에서는 일본 측에서는 得爾辛을 ‘토쿠니시/とくにし’로 읽고 있다. 한국어의 ‘ㄷ’ 발음은 일본어에 대응될 때 ‘ㄴ’로 대응된다. 이 사실을 고려하면 德斤과 得爾辛이 동일 지명을 가리켰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일본어에서는 礪城 즉 石城⁸⁾을 ‘시

7) 『한한대사전』, 移 “●七□베풀다. 베풀어 주다. ⇨移德. 《廣雅, 釋言》 移, 遺也. 〈王念孫疏證〉 移爲遺與之遺. 《漢書, 揚雄傳 上》 是以旃裘之王, 胡貉之長, 移珍來享, 抗手稱臣. 〈顏師古注〉 移, 以物與人曰移.”

키/シキ'라 하는데 城을 뜻하는 일본어 '키/키'는 백제어가 전래된 것이라는 일반적 사실을 고려하면 '돌'을 뜻하는 일본어 '시/シ' 역시 '언덕'을 뜻하는 백제어 支⁹⁾가 전래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돌무더기'의 의미와 '언덕'의 의미는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토쿠니시/とくにし'는 '토쿠니시키/とくにしき'의 줄임말로 생각되며 '토쿠니시키/とくにしき'는 德斤石城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德斤石城은 『신증동국여지승람』 은진현 고적 조에 실린 摩耶山古城일 가능성이 있다. 『대동지지』에서는 摩耶山古城을 백제 시대의 고성으로 추정하고 있다. 1911년 『조선지지자료』 은진군 조에는 梅花山城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梅花山을 은진현의 鎭山이라 하였다.

일본 측의 자료로 '耳淳辛'의 후의 의미를 '돌 무더기'로 파악했으나 耳淳의 의미는 알 수 없다. 耳淳과 '栗嶺, 德斤' 등을 연관 시킬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栗嶺의 은진현의 '울령천'으로 비정되었으므로 백령산성에서 출토된 '丙辰瓦/栗嶺□' 명문 기와의 공급처는 '栗嶺'일 것으로 판단하기 쉽다. 그런데 동일한 양식의 인각와인 '葛那城/丁巴瓦' 명문 기와가 葛那城인 황화산성에서 출토되었는데 이 기와에서는 소요처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栗嶺과 '耳淳辛'이 기와의 공급처인지 소요처인지는 분명하지가 않다. 더군다나 조선 시대 지지 자료 어디에도 백령산성을 언급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摩耶山古城의 재료들이 백령산성 수축에도 사용되었거나 옮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5. 백제 지역 출토 인각와의 작성 연대

백제 지역 출토 인각와의 작성 연대를 밝혀 줄 명시적 자료가 나오지 않은 점에서 백제 지역 출토 기와 명문에 대한 연구의 여러 한계가 존재한다.

3. 결론

생략함.

8) 本居宣長の 『古事記伝』에서는 '石城/イシキ'가 변화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

9) 『삼국사기』 지리지에 백제 지명 표기에 사용된 支는 신라 경덕왕 개정 명칭에서 原과 대응하고 있다. 秋成郡 조의 '栗原縣 本百濟栗支縣 景德王改名 今原栗縣'를 들 수 있다. 백제 菓支縣의 이표기로 菓字가 있어 支가 '히' 정도의 음을 표기했음을 알 수 있다.

II. 論山 皇華山城 出土 瓦銘文 지명 표기 ‘葛那城, 笠乃, 立乃’의 국어사적 의의

1. 서언

이 글은 論山 皇華山城에서 出土된 기와의 銘文에 나타난 지명 표기 ‘葛那城, 笠乃, 立乃’ 등이 시사해 주는 국어사적 의의를 연구하고자 한다. 論山의 皇華山城은 백제 시대 加知奈縣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葛那城, 笠乃, 立乃’ 등은 加知奈의 이표기임이 확실하다. 따라서 ‘加知奈, 葛那城, 笠乃, 立乃’ 등의 이표기 관계를 통하여 차차 표기 방법의 변화에 대한 일부 특성과 ‘갓[笠]’ 어형 발달에 대한 변화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연구에서 백제 加知奈縣을 해독한 바 있다. 加知奈의 奈가 ‘내[川]’를 표기한 것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연구에서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加知奈縣의 加知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에서 이견이 제안되었다. 加知를 이승녕(1971: 161)은 ‘갓[初]’의 의미로, 김선기(1973: 33)는 ‘거리[街]’의 의미로, 도수희(1977, 1997: 81)는 ‘가지[枝]’의 의미로, 천소영(1990: 101)은 分岐川의 의미를 가진 ‘거리’, 이강로(2001: 59)는 市의 의미로, 강현규(2014: 5)는 ‘시장’의 의미로 이해하였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 지명 표기 ‘葛那城, 笠乃, 立乃’ 중에서 笠乃의 笠은 加知奈縣에 나오는 加知의 의미를 ‘갓[笠]’으로 정확하게 시사해 주고 있다.

백제 加知奈縣의 개정 명칭으로 신라 경덕왕의 市津縣이 있었고 삼국사기 권37에는 加知奈縣의 이표기로 加乙乃가 소개되었고, 『고려사』에서는 薪浦가 새로이 소개되었다. 종래의 연구에서 ‘加知奈縣, 市津縣, 加乙乃’ 등을 이표기로만 생각하여 ‘加知奈縣, 市津縣, 加乙乃’ 등을 해독하여 왔고, 또 조선 시대 논산 지역의 주변 하천명인 ‘沙橋川, 私津, 草浦’ 등도 ‘加知奈縣, 市津縣, 加乙乃’ 등의 이표기일 것으로 전제하여 ‘加知奈縣, 市津縣, 薪浦’ 등의 의미를 해독하여 왔다. 그러나 ‘加知奈縣, 市津縣, 薪浦’ 등은 이표기 관계에 있지 않고 별칭 관계에 있음을 이 글에서 주장하고자 한다.

홍재선(1983: 47)은 葛那城을 백제 시대, 笠乃를 통일 신라 시대와 고려 시대, 立乃를 조선 초기의 표기로 파악하였다. ‘葛那城, 笠乃, 立乃’ 등의 표기에 대한 홍재선(1983: 47)의 이같은 주장은 주로 기와의 연대 추정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加知奈縣이 백제 시대의 표기인데, 葛那城도 백제 시대라고 주장한 점은 문제가 있다. 아마도 加知奈縣의 이표기인 加乙乃를 백제 시대로 파악한 것에 근거한 것으로 생각된다. 加知奈와 달리 ‘葛那, 加乙乃’ 등은 ‘c>ㄹ’의 변화를 보여주므로 葛那는 백제 시대의 표기가 아니라 백제 시대 이후의 표기로 생각된다.

2. ‘백제 현명 加知奈縣, 신라 경덕왕 개정 현명 市津, 고려사 薪浦’ 등의 관련 지명 표기

2.1. 백제 현명 加知奈縣과 그 이표기

加知奈縣은 백제의 현명이다.

- (1) 가. 市津縣은 본래 百濟의 加知奈縣이었는데, 景德王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까지 그대로 따른다. <삼국사기 권 36 잡지 제5 地理 三 新羅 덕은군>

나. 加知奈縣 한편 加乙乃라고도 이른다. <삼국사기 권 37 잡지 제6 地理 四 百濟
완산주의 군·현>

(1가)는 加知奈가 백제의 縣名이며 市津은 신라 경덕왕이 개정한 縣名임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1나)는 加乙乃가 加知奈縣의 이표기임을 말하고 있다.

市津의 津에 기대면 加知奈의 奈와 加乙乃의 乃是 고려 가요 「동동」의 ‘나릿므른’에 나오는 ‘나리’나 후기 중세국어의 ‘내[川]’ 정도를 표기한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명 표기에서 川과 津은 넘나들면서 사용된다.

加知奈의 知는 차자 표기에서 흔히 ‘디’ 정도를 표기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리고 加乙乃의 乙이 ‘리’를 표기한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ㅣ’ 모음에 후행하는 ‘ㄷ’은 ‘리’로 변화되었다. 이기문(1961)¹⁰⁾의 주장을 이어 받아 도수희(1975)는 충청도 전의현의 백제 명칭인 仇知縣의 仇知를 ‘구리[銅]’로 파악하였다. 仇知는 ‘*구디’ 정도를 표기한 것이므로 ‘*구디>구리’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한편, 菩提[보데]의 한국 발음이 ‘보리’인 것에서도 ‘ㄷ>리’의 변화를 살필 수 있다. 따라서 加知奈에서 ‘ㄷ>리’의 변화를 반영한 표기가 加乙乃로 생각된다.

加知奈와 加乙乃의 加가 표기한 음을 추정하는 데에 논산 황화산성에서 출토된 瓦銘文의 ‘葛那城, 笠乃, 立乃’ 등이 주목된다. 부여에 거주하고 있는 洪再善 선생의 말에 따르면 1972년이나 1973년에 논산중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할 때에 황화산성에서 銘文이 있는 기와를 발견하여 현재까지 소장하고 있다고 한다.

‘葛那城/丁巳瓦’의 銘文을 印章으로 압인한 기와는 다음과 같다.¹¹⁾



<표 4> 葛那城/丁巳瓦 銘文 印章 기와(전체, 부분)

명문 葛那城丁巳瓦에서 那의 경우는 획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동일한 명문 기와가 현재 국

10) 이 구절은 도수희(1975)의 기술을 그대로 쓴 것으로 이기문(1961)은 ‘국어사개설’인데, 신정판 ‘국어사개설’에서는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11) 홍재선 선생님의 후의로 2023년 3월 10일에 부여군 정림동에 소재한 ‘연재 홍사준 기념관’에서 논산 황화산성에서 출토된 명문 기와 3점을 촬영하였다.

립부여박물관에도 소장되어 있는데¹²⁾, 이 기와에서는 那의 획이 분명하다.



<표 5> 국립부여박물관 소장 부여 쌍북리 출토 葛那城/丁巳瓦 銘文

논산 황화산성에서 출토된 기와에서는 명문의 한자 획에 까만 색이 칠해져 있지 않다. 그러나 부여 쌍북리에서 출토된 기와에서는 명문의 한자 획에 까만 색이 칠해져 있다. 이 까만 색은 먹물의 흔적으로 추정된다.

논산 황화산성은 『신증동국여지승람』 은진현 성곽 조에 皇華山城으로 등장하고 있다. 葛那城 丁巳瓦 銘文 기와는 皇華山城 안에 소재한 건물지¹³⁾에서 출토된 것이므로 縣名인 加知奈縣이나 市津縣을 직접 지칭한 것이 아니다. 葛那城은 皇華山城을 지칭한 것이다. 皇華山城이 옛 시진 근처에 위치했기 때문에 皇華山城을 葛那城이라 지칭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加知奈와 葛那는 이표기 관계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홍재선(1982: 44)는 葛那城丁巳瓦 銘文 기와의 시기를 백제 시대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葛那城의 葛은 '갈'을 표기한 것으로 국어의 'ㄷ>ㄹ' 변화를 반영한 것이므로 葛那城의 표기를 백제 시대로 판단할 수는 없고 통일신라 시대의 표기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笠乃/立乃 銘文이 양각된 기와는 다음과 같다.

12) 이 글에서 제시한 기와 명문 자료는 2023년 3월 10일 국립부여박물관의 후의로 직접 촬영한 것이다. 국립부여박물관 담당자에 따르면 이 기와가 부여 쌍북리에서 출토되었다는 사실만을 알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홍재선 선생의 말에 따르면 일제 시기에 쌍북리 요지에서 수습되었을 것이라 한다. 한편, 충남대학교박물관(2002: 616)에도 이 기와의 사진이 실려 있다. 그러나 출토 경위에 대한 설명은 없다. 백제 시대의 기와로 추정하고 있으나 명문이 葛那城이란 점에서 통일 신라 시대의 기와일 가능성이 있다.

13) 홍재선(1983: 39)에 황화산성 내의 5개 건물지의 위치를 제시하고 있다. 논산교육청에서 1960년에 실시한 조사로 만들어진 황화산성실측도에 따른 것이라 한다. 홍재선(1983)에서 논산교육청에서 1960년에 실시한 조사의 보고서 명칭을 제시하지 않아 내용을 자세히 확인할 수 없다.



<표 6>

오른쪽에서 왼쪽의 순서로 ‘立乃, 笠乃, 笠乃’ 등의 명문이 양각되어 있다. 첫 번째 명문 立乃에는 竹의 획이 기입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두 번째와 세 번째의 笠乃에서는 竹의 획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 竹의 획을 상단의 무늬로 볼 여지도 있으나 笠의 일부 획인 竹이 분명하다.

홍재선(1983: 46)은 ‘立乃/笠乃/笠乃’ 명문 기와의 시기를 백제 말기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笠乃의 笠은 ‘갈[笠]’ 또는 ‘갸[笠]’의 훈독 표기이므로 笠乃는 훈차 표기가 보편화된 통일신라 시대의 표기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立乃是 笠乃의 음독 표기이다. 훈차 표기의 음독 표기는 고려에 들어서서 발생된 것이므로 立乃是 나말여초 시대의 표기로 추정된다. 따라서 ‘立乃/笠乃/笠乃’ 명문 기와의 표기는 10세기나 11세기의 것으로 추정된다.¹⁴⁾

이와 같은 인장으로 압인된 기와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14) 이견식(2016: 157)에서는 992년에 성립되었던 『고려사』 수록 22역도 체제 525개 驛名이 후대에 음독화되어 다른 글자로 교체되는 현상을 기술하였다.



<표 7> 논산 황화산성 출토 기와 명문

홍재선 선생은 立으로 판독하였다. 그러나 명문의 글자가 立인지는 분명치 않다.

‘葛那城, 笠乃, 立乃’ 등의 명문 기와가 논산 황화산성에서 출토되었으므로 ‘葛那城, 笠乃, 立乃’ 등은 백제 加知奈縣의 이표기로 추정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은진현 고적 조에서 古市津이 황화산성 서남쪽에 위치했다는 기술을 참고할 때 이러한 추정은 신빙성이 있다. 특히 葛那城의 葛과 加乙乃의 加乙은 동일한 음을 표기했을 가능성 아주 크다.

그런데 논산 황화산성에 출토된 기와의 명문 笠乃의 笠은 加知奈縣의 加知가 후기 중세국어의 ‘갠[笠]’의 의미임을 시사해 준다. 물론 笠이 訓假字로 사용되었다면 加知가 ‘갠[笠]’의 의미와는 관계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借字表記에서 訓主音從의 원칙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실을 고려하면 笠乃의 笠은 훈가자가 아니라 訓讀字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표기 笠乃를 고려하면 백제 加知奈縣의 加知는 ‘*가디’ 정도를 표기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 ‘*가디’가 후기 중세국어에 이르러 ‘갠[笠]’으로 전승되었다. 한편 加知奈縣이 葛那城으로 변화한 것을 근거로 ‘*가디/加知’가 ‘*가리’의 과정을 거쳐 ‘갈’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계림유사』의 ‘笠 蓋 音渴’을 근거하면 12세기에 ‘갠[笠]’은 ‘*갈’ 정도의 형태를 가진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백제어 ‘*가디’는 후기 중세국어에 이르러 ‘갠, 갈’의 어형으로 발달하여 후기 중세 국어에서는 쌍형어의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이해된다. 후기 중세국어에서 ‘갈’의 어형을 보여주는 것에는 ‘곶갈’이 있다.

『한국지명총람』 논산군 편에는 加乙乃城과 관련된 지명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 (2) 가. 가을내-(加乙乃城) [산] → 황화산 <논산군 산천>
 - 나. 갈라-성(葛羅城) [산] → 황화산 <논산군 산천>
 - 다. 황화-산(皇華山) [가을내성, 갈라성, 황화산성, 황화대, 황화산봉수, 봉화산] [산] (중략) 사방에 성문 자리가 남아 있고, 성안에는 창고 자리가 두 곳이 있으며, 또 둥근 풀, 네모꼴의 주춧돌이 놓여 있고 흘잎 연꽃 무늬의 기와가 흙 속에서 나왔는데, “葛羅城”이라 양각되어 있어서 (하략) <논산군 산천>
 - 라. 아래-말[가지내현, 가을내, 갈라, 신포, 시진] [마을] <논산군 논산을 동화동>
- (3) 아랫말 : 등화동 내에서 제일 아래가 있다고 해서 아랫말이라고 칭하였음 <1919년 중앙 지명제정위원회 지명조사철 논산군 편 등화리>

(2가)와 (2다)의 ‘가을내’는 加乙乃를 음으로 적은 것으로 현지에서 부르는 지명은 아니다. (2라) ‘아래-말’의 이칭으로 ‘가지내현, 가을내, 갈라, 신포, 시진’ 등을 제시한 것은 문헌 기록에 전하는 지명을 1960년 이후에 ‘가지내현, 가을내, 갈라, 신포, 시진’ 등을 ‘아래-말’로 비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9년 지명 조사 시에는 ‘아래말’의 이칭으로 ‘가지내현, 가을내, 갈라, 신포, 시진’ 등이 조사되지 않았다.

(2다)에서 “흙잎 연꽃 무늬의 기와가 흙 속에서 나왔는데, ‘갈라성(葛羅城)’이라 양각되어 있어서”라는 설명은 문제가 있다. 갈라성(葛羅城)’이라 양각된 기와의 존재는 현재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설명은 ‘葛那城/丁巴瓦 銘文’ 기와에 대한 설명을 잘못 기술한 것으로 이해된다.

2.2. 신라 경덕왕 개정 현명 市津과 별칭 利樓津

百濟 加知柰縣을 신라 경덕왕이 市津縣으로 개정한 사실은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 기록은 앞에서 이미 제시했다. 경덕왕의 개정 명칭은 본래 명칭의 의미를 보존하여 한자로 개정할 수도 있으나 본래 명칭과는 의미가 다른 명칭으로 개정했을 가능성도 있다. 加知柰縣을 경덕왕이 개정한 명칭 市津縣은 加知柰縣과는 의미가 다른 계통의 명칭일 가능성이 다음 자료로 확인될 수 있다.

(4) 가. 市津浦 古有利樓, 疑卽此 <세종실록지리지 충청도 공주목 은진현>

나. 市津浦 在市津縣 商舶所集 連檣接桅 人物雜沓互市 故名 尹淮云古有利樓津 疑卽此 <신증 은진 산천>

다. 市津浦 옛 市津縣에 있으니, 지금 治所와의 거리는 서북쪽으로 12리이다. 세속에서는 私津이라고 부르니, 바로 連山縣 草浦의 하류로서, 서쪽으로 흘러 금강의 江景渡로 들어간다. 바다 조수와 서로 이어져서 商船들이 모이는 곳이니, 돛대와 노가 연결하고 사람들과 물품이 잡다하게 이르러 교역하므로 그러한 이름이 붙여졌다. 본조 윤尹淮가 말하기를 “예전에 利樓津이 있었다고 하였는데, 혹시 이곳이 아닌가 한다.” 하였다.¹⁵⁾ <동국여지지 은진 산천>

(4)에서 보듯이 조선시대 지지 자료 편찬자는 경덕왕 개정 명칭인 市津의 市 의미를 場市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市津의 별칭으로 제시된 (4가) 利樓와 (4나)와 (4다)의 利樓津에서의 利를 도수희(1977, 1997: 98)에서는 차자 표기로 ‘길미’의 의미로 파악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런데 利樓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 ‘利穴, 利藪, 利窟’ 등의 한자어가 중국과 한국의 문헌에서 사용된 것이 확인된다.

(5) 가. 【利穴 이혈】 이익의 원천. 利孔. /唐, 白居易《策林 1, 不奪人利》王者不殖貨利, 不言有無. 耗羨之財不入於府庫, 析毫之計不行於朝廷者, 慮其利穴開而罪梯構. /明, 歸有光《乞休申文》今縣之可以爲利穴者, 不過人命. 強盜. 糧長. 徭役. <한한대사전>

나. 【利藪 이수】 이익이 집중되는 곳. 《警世通言, 金令史美婢酬秀童》那庫房舊例, 一

15) 『동국여지지』, 은진, 산천, “市津浦 在古市津縣 距今治西北十二里 俗稱私津 卽連山縣草浦下流 西流入錦江江景渡 海潮相連 商舶所集 連檣接桅 人物雜沓互市 故名 本朝尹淮云 古有利樓津 疑卽此”

吏輪管兩季，任憑縣主隨意點的。衆吏因見是個利藪，人人思想要管。 <한한대사전>
 다. 그 사이에 가혹하게 마구 거두어들이는 신하들이 경쟁적으로 利窟(稅源)을 개발해
 서 다투어 선여(羨餘)를 바치곤 하는데,¹⁶⁾ <稼亭先生文集卷之十三 策 財用盈虛戶口
 增減爲國者止深計 鄉試策>

- (6) 가. 【利窟 이굴】 잇구멍. 이곳이 생길 만한 일거리나 기회. 利穴. 利藪. 《朝鮮光海君日
 記 32, 2年8月壬寅》 政院啓曰，一自顧崔巖萬太監，兩使經過之後，用銀之聲，聞於中
 國，遼廣各衙門，以本國作一利窟，委送差官，項背相望. <한국한자어사전>
 나. 【利穴 이혈】 “利窟”과 같다. 《朝鮮中宗實錄 69, 25年9月己酉》 自古昏亂之時，戚
 畹之屬，因緣私獻，曲希恩寵，邪謀利穴，無所不至. <한국한자어사전>

한어 利穴이 당나라 시대에 사용되었고, 利藪는 청나라 시대에 사용되었으며, 『조선왕조실록』
 에 利穴과 利窟이 사용된 사실을 고려하면, 利樓는 차차 표기가 아니라 한자어임을 추정할 수
 있다. ‘利穴, 利藪, 利窟’ 등에서는 이익이 나오는 원천을 ‘穴[구멍], 藪[숲], 窟[굴]’ 등으로 표
 현했으나 利樓는 이익이 나오는 원천을 ‘樓[다락]’으로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5다)는 李穀
 (1298-1351)의 시대에 우리 나라에서 한자어 利窟이 사용되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利樓를
 언급한 尹淮(1380-1436)는 여말 선초 시기의 인물이므로 利樓는 여말선초 시기의 한자어로
 생각된다. 결국 市津과 利樓는 유사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市津과 加知奈
 는 유사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파악할 수 없다.

2.3. 『고려사』에 제시된 加知奈縣의 별칭 薪浦

백제 加知奈縣의 별칭인 薪浦는 『고려사』에 처음 언급되었다.

- (7) 가. 市津縣本百濟加知奈縣【一云加乙乃 一云薪浦】新羅景德王 改今名 爲德恩郡領縣 顯
 宗九年 來屬 有市津浦 <고려사 卷五十六 志 卷第十 地理 一 양광도 공주 시진현>
 나. 市津縣 本百濟加知奈縣 一云加乙乃 一云薪浦 新羅景德王改市津 <新增東國輿地勝
 覽 은진 건치연혁>

이 글에서 薪浦를 加知奈縣의 별칭으로 규정한 것은 ‘加知奈縣, 加乙乃, 葛那城, 笠乃, 立乃,
 市津’ 등과 薪浦를 이표기 관계로 전혀 상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市津이 ‘加知奈縣, 加乙乃,
 葛那城, 笠乃, 立乃’ 등의 별칭이듯이 薪浦도 ‘加知奈縣, 加乙乃, 葛那城, 笠乃, 立乃’ 등의
 별칭으로 생각된다. 또한 薪浦는 市津의 별칭이기도 하다. 이러한 주장의 논거는 다음 절에서
 제시하도록 한다.

3. 加知那, 市津, 薪浦 등의 별칭 관계

3.1. 조선 시대 논산 지역 하천과 경로

‘加知那, 市津, 薪浦’ 등의 별칭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선 시대 논산 지역의 하천명을

16) 『稼亭先生文集』, 卷之十三 策 財用盈虛戶口增減爲國者止深計 鄉試策, “間有拞克聚斂之臣 競開利窟
 爭進羨餘”

논의할 필요가 있다.

1914년에 실시된 행정 구역 통폐합으로 논산군이 성립되었다. 『한국지명총람』의 논산군 조의 설명에 따르면, “恩津郡, 연산군, 노성군, 석성군, 공주군, 전라북도 여산군, 전라북도 고산군 등의 전부나 일부를 병합하여 1914년에 논산군이 출발하였다.”

‘恩津郡, 연산군, 노성군’ 등의 하천의 경로와 명칭은 규장각 소장 김정호의 「東輿圖」에 다음과 같이 설명되었다.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하천의 경로를 ←로 표시하였다.



<그림 1> 金正浩 東輿圖(奎10340-v.1-23)의 일부

<그림 1>에서 은진현 왼쪽의 물줄기에 市津이 표시되었다. 市津의 이 물줄기는 상류의 여러 물줄기가 하나로 합해진 것이다. 그런데 조선 시대 地誌 資料에서는 市津 물줄기의 본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8) 가. 市津源出鎮安珠峯山之陰 西流爲龍溪 過陽良所川 經佛明山 由渴馬洞 西北流爲居士川 爲私津北會草浦 西南流經黃山橋 入江景浦 <東國文獻備考卷之十一 輿地考六 山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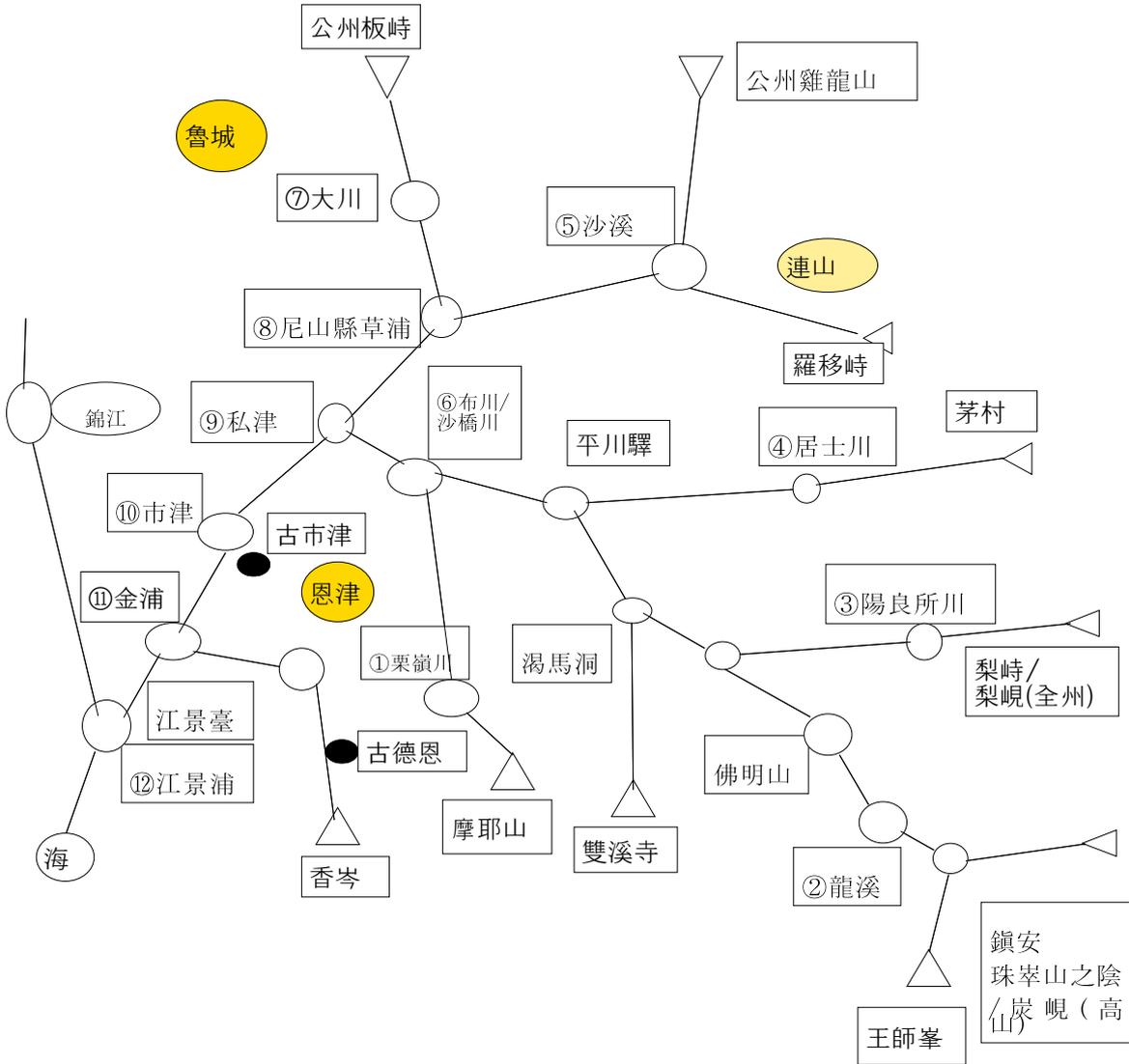
나. 草浦源出公州雞龍山 西南流過沙溪 經尼山縣 爲草浦 入市津 <東國文獻備考卷之十一 輿地考六 山川>

(9) 가. 市津浦 一云論山浦 北十二里 出鎮安珠峯山之陰 西流爲高山龍溪 過陽良所川 經佛明山 由渴馬洞 爲連山居斯里同布川 北流爲私津 右會草浦 西南流經黃山橋 環江景臺之北 入于白江 <대동지지 은진 산천>

(8가)와 (9가)는 9개의 물줄기가 합쳐진 市津의 본류가 鎮安의 珠峯山의 陰에서 발원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珠峯山의 陰은 전라도 고산현의 炭峴을 말한다.

‘<그림 1>, (8), (9) 등을 활용하여 조선 시대 논산 지역에 흐르던 하천의 경로를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독자의 이해를 위하여 '노성현, 연산현, 은진현' 등의 조선 시대 읍치를 함께 제시한다. 또한 古市津과 古德恩의 위치는 ●로 표시한다.



<그림 2> 조선 시대 논산 지역 하천의 경로와 하천의 명칭

市津의 상류 하천 명칭 '沙橋川, 草浦, 私津' 등이 '加知那, 市津, 薪浦' 등의 별칭 관계를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단서로 생각된다.

3.2. 역사문화적 배경을 통해 본 '加知那, 市津, 薪浦' 등의 별칭 관계

1) 경덕왕 개정 명칭 市津 등장으로 인한 '加知奈/笠乃/立乃/仁川' 하천명의 위치 변경

加知那는 황화산성 서남쪽의 하천명인데, 경덕왕 개정 명칭 市津의 등장으로 加知那란 하천 명칭은 상류의 하천명으로만 존재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백제 시대 표기 加知那와 그 이표기인 논산 황화산성 출토 와명문의 '加知那, 笠乃, 立乃' 등

과 관련하여 <그림 2>에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仁川이란 하천명이 주목된다.

(10) ① 栗嶺川

가. 栗嶺川 東十里 出豆下面 北流入于私津 <대동지지 은진 산천>

나. 栗嶺川 治東十里 源出豆下面 北流入市津 <여도비지 은진 산천>

(11) ① 栗嶺川

가. 栗嶺川 源出全羅道高山縣龍溪山 入市津浦 <신증 은진, 산천>.

나. 栗嶺川 在縣東十五里 源出全羅道高山縣龍溪山 入市津浦 <여지도서 은진 산천>

다. 仁川 在縣東北十里 一云栗嶺川 源出全羅道高山縣炭峴 過連山縣界 入市津浦 <동국여지지 은진 산천>

(10)은 栗嶺川의 발원지를 은진현 豆下面으로 파악하고 있고, (11)은 栗嶺川의 발원지를 全羅道高山縣 炭峴으로 파악하고 있다. (10)에서 말한 栗嶺川은 全羅道 高山縣 炭峴에서 내려오는 물줄기와 연산현의 布川에서 만나고 있다. 그런데 (11다)에서 栗嶺川의 다른 이름이 仁川이라 하고 있다. 이것은 栗嶺川이 布川에 이르러서는 하천의 명칭이 仁川임을 말하는 것이다. 결국, (10)에서 말한 栗嶺川은 栗嶺川의 상류나 중류의 명칭을 말하는 것이며, (11)에서 말한 栗嶺川의 발원지를 全羅道 高山縣 炭峴이라 언급했으므로 여기의 栗嶺川이 全羅道 高山縣 炭峴에서 내려오는 물줄기에 합수되는 지점을 말한 것으로 생각된다.

仁川은 居士川의 이표기로도 제시되고 있다.

(12) ④ 居士川

가. 居士里川 在縣南十里 源出全羅道高山縣龍溪川 入私津 <신증 연산 산천>

나. 仁川 在縣南十里 一云苔溪 一云居士川 卽高山縣龍溪川下流 經恩津縣北 入市津<동국여지지, 연산, 산천>

다. 居士里川 在縣南十里 源出全羅道高山縣龍溪川 入沙津 <여지도서 연산 산천>

라. 居士里川 治南十里 ○右二水, 恩津市津浦上流 <여도비지 연산 산천>

마. 居士里川 西十里 ○右二川 詳恩津市津浦 <대동지지 연산 산천>

(13) ② 龍鷄川

龍鷄川 在縣北四十里 源出炭峴梨峴 合而北流 入忠淸道連山縣界爲仁川 <동국여지지 고산 산천>

(12가)-(12라)의 居士里川에서 士를 동일한 음인 斯로 교체한 이표기가 (12바)의 居士里川이다. 그런데 居士里川의 이표기로 (12나)는 ‘仁川, 苔溪, 居士川’을 보여 주고 있다. 居士川은 음절 수를 3음절로 줄이기 위하여 居士里川에서 里를 생략한 이표기이다.

‘仁川, 苔溪, 居士川’ 등의 이표기 관계에 대하여 도수희(2007: 128-132)는 居斯와 菴의 대응 관계를 통하여 居의 고향을 ‘잇’으로 추정하였다. 또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나오는 異次頓과 『해동고승전』에 나오는 居次頓을 근거로 ‘살다’가 아닌 居의 고향 ‘잇’을 제안한 바 있다. 仁川은 현지 지명으로 ‘인내’로 불리우는 것으로 ‘苔溪/잇내’와 ‘居士川/잇내’의 ‘잇내’가 비음동화되어 ‘인내’로 변화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13)은 龍鷄川이 전주와 連山縣 경계에 이르러서는 仁川으로 불리고 있음을 말하여 주고 있다. (13)에서 말한 連山縣 경계는 연산군 모촌면과 전주군 陽良所面을 지칭한 것으로 이해된

다. 『한국지명총람』에서 논산군 양촌면 인천리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면¹⁷⁾ 전주군(全州郡) 양양소면(陽良所面)을 흐르는 물줄기의 이름도 仁川이라 했기 때문이다. 결국 <그림 2>에 나타난 陽良所川은 陽良所面을 흐르는 물줄기 이름이고, 陽良所川이 全羅道 高山縣 炭峴에서 내려오는 물줄기에 합수되는 지점은 仁川이라 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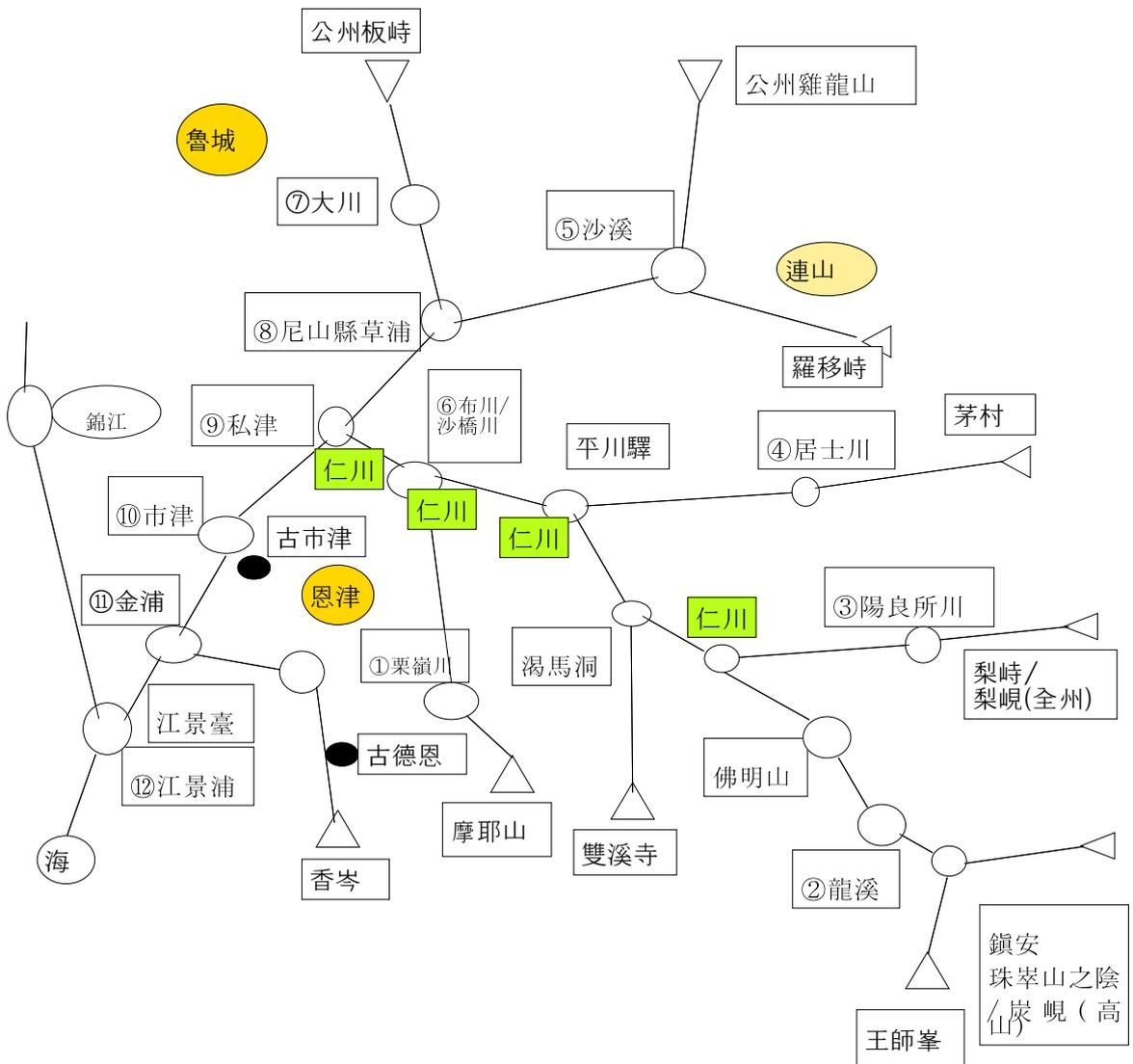
조선총독부에서 대정 13년 11월 30일에 발행한 1/50000 조선지형도 논산 도엽에서는 全羅道 高山縣 炭峴에서 내려오는 물줄기이면서 논산군 논산을 倉里 북쪽을 흐르는 물줄기의 이름을 仁川川/インチョンチョン이라 하고 있다.



<그림 3> 조선지형도 논산 도엽 仁川川

仁川이란 불린 곳의 위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7) 『한국지명총람』 4-1, 논산군 양촌면 인천리, “인천-리(仁川里)[인내, 인천리] 본래 전라북도 전주군(全州郡) 양양소면(陽良所面) 지역으로서, 인내의 이름을 따서 인내 또는 인천(仁川)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월장리(越場里), 본장리(本場里), 동산리(東山里), 도정리(道井里), 하광리(下光里)의 각 일부와 연산군 모촌면의 남산리(南山里) 일부를 병합하여 인천리라 하여, 논산군 양촌면에 편입됨”



<그림 4>

居士川의 합수 지점인 仁川은 ‘蒼溪, 居士川’ 등을 기반으로 파생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⑨私津 근처의 仁川, ⑥布川의 仁川, ③陽良所川의 합수 지점인 仁川’ 등은 居士川의 합수 지점인 仁川에서 파생되었다고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 나라 하천 명칭의 변화에서 하류의 하천 명칭이 상류의 하천 명칭을 대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반대의 경우는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⑨私津 근처의 仁川, ⑥布川의 仁川, ④居士川의 합수 지점인 仁川③, 陽良所川의 합수 지점인 仁川’ 등은 논산 황화산성의 와명문에 나타난 笠乃와 立乃가 음독된 ‘입내’가 비음동화된 ‘인내’일 것으로 생각된다. 앞의 (1)에서 제시한 바 있듯이 『동국문헌비고』에서 市津의 분류를 公州 雞龍山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를 분류로 파악하지 않고 全羅道 高山縣 炭峴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를 분류로 파악한 사실에서도 ‘⑨私津 근처의 仁川, ⑥布川의 仁川, ④居士川의 합수 지점인 仁川, ③陽良所川의 합수 지점인 仁川’ 등의 仁川은 하류의 명칭이 상류의 명칭에까지 확대되어 사용된 것으로 이해된다.

백제 시대 하천 명칭 加知那는 조선 시대 市津 지역의 하천 명칭이었으나 신라 경덕왕이 加知那縣을 市津縣으로 개정하여 市津 물줄기의 상류 지역에만 仁川이란 명칭으로 존속된 것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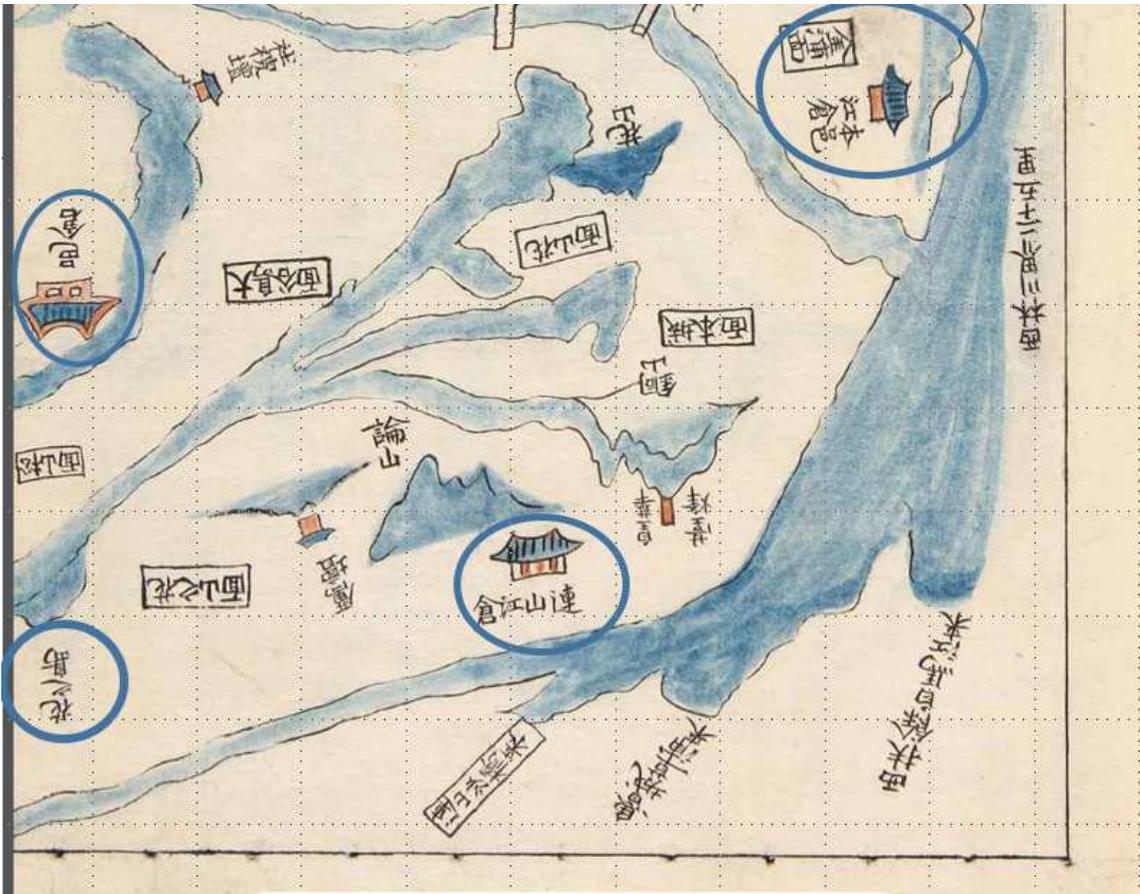
로 이해된다.

2) 은진현 소재 연산현 소관 連山江倉의 위치를 통해 본 薪浦의 위치

은진현에 소재했지만 연산현 소관인 連山江倉의 위치를 통하여 『고려사』에 처음으로 등장한 薪浦와 市津의 별칭 관계를 이해해 볼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동국여지』에서는 은진현에 소재한 창고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여지도서』의 은진현 지도와 『대동지지』에서는 은진현에 소재한 세곡 창고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14) 여지도서 은진현 지도 일부



(15) 가. 畝倉 <대동지지 은진 창고>

나. 江倉 在江景浦 <대동지지 은진 창고>

다. 魯城、連山兩邑江倉 在市津浦北岸 <대동지지 은진 창고>

(16) 가. 平薪鎭 外萬垓 뒷바다에서 致敗된 連山과 石城 두 고을의 田稅를 모두 실은 배의 곡물을 수량대로 건져 낼 길이 없어 부득이 건져 내는 일을 그만두고¹⁸⁾ <각사등록

18) 『각사등록』, 忠淸道篇 2, 忠淸道監營狀啓臚錄 9, 1835년 6월 14일, “平薪鎭外萬垓後洋致敗連山·石城兩邑田稅竝載船穀物 無路準拯 不得已撤拯”

忠淸道篇 2 忠淸道監營狀啓臚錄 9 1835년 6월 14일>

나. 貢稅串은 牙山縣 서쪽 8리에 있으며, 【본주 및 淸州·木川·全義·燕岐·溫水·新昌·恩津·連山·懷德·公州·定山·懷仁·天安·鎭岑·尼山·文義의 구실은 모두 이곳에 바쳐서 <배로> 犯斤川을 지나 서해를 거쳐서 西江에 다닫는데, 물길이 5백 리이다. 】 <세종실록 지리지 충청도>

(14)는 은진현에 ‘邑倉, 連山江倉, 本邑江倉’ 등 3개의 창고가 있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本邑江倉은 은진현의 세곡을 모아두는 강경포 근처의 창고를 말한 것이다. (15) 역시 은진현에 세개의 창고가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 連山江倉이라 하지 않고 (15다)에서는 魯城, 連山兩邑江倉이라 하고 있다. (15다)는 노성현의 세곡도 연산강창에 집결하여 서울로 운반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16가)는 석성현의 세곡까지도 연산강창에 집결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連山江倉에 모여진 세곡은 아산의 貢稅串에 집결되어 서울의 京倉으로 운송되었음을 (16나)는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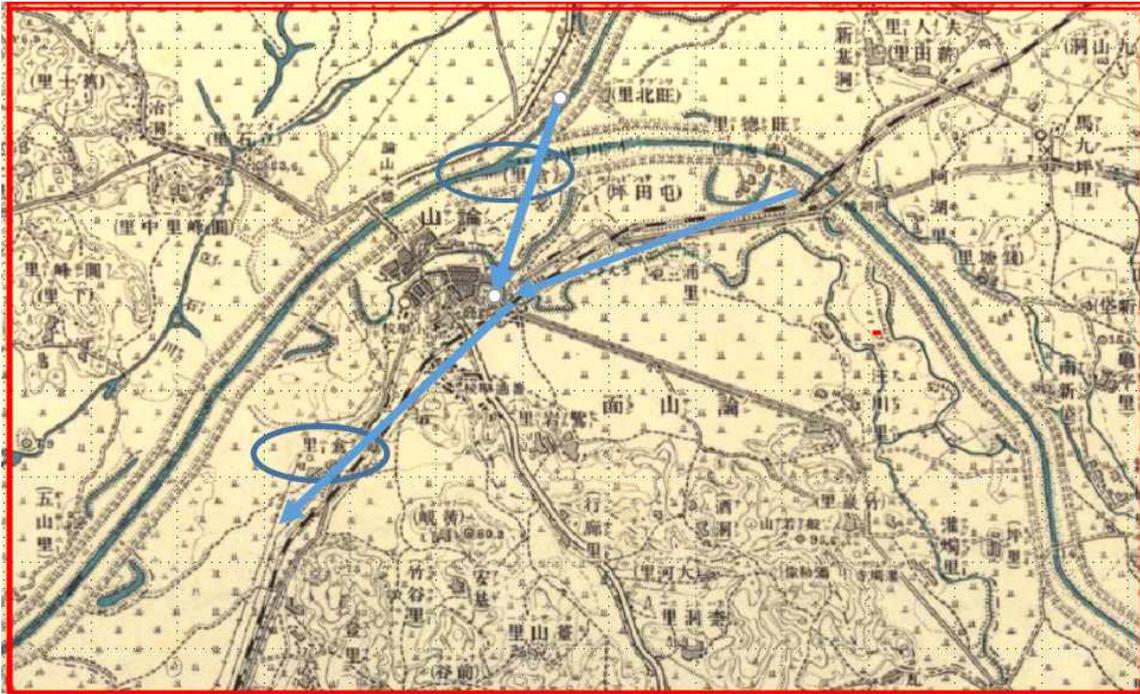
연산강창이 은진현에 소재했지만 연산현 소관이란 사실이 의문점이다. 이러한 의문점은 (14)에 나오는 花枝島로 그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지도서』에서는 花枝島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17) 島嶼 花枝島 在縣北十里 自般若山東麓來 今成平陸 <여지도서 은진 산천>

(17)은 섬인 花枝島가 육지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花枝島가 섬이라면 花枝島를 둘러싼 두 물줄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14)에서는 花枝島 북쪽의 물줄기만 보이고 남쪽의 물줄기는 보이지 않고 있다. (17)에서 花枝島가 육지가 되었다고 말한 것은 화지도 남쪽의 물줄기가 사라졌음을 말하는 것이다. 본디 화지도 남쪽의 물줄기가 본류이고 홍수와 한천은 직진하려는 성질에 따라 북쪽의 물줄기가 새로 생긴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물줄기 변화는 한강의 여의도에서도 발생했다. 한강은 용산 근처에서 영등포 쪽으로 물길이 흘러 서강 대교 부근으로 흘러 나가는 물줄기가 본류였다. 그러나 이 본류는 현재 ‘샨강’으로 불리고 물의 직진 성향과 홍수로 인하여 용산에서 마포대교로 흐르는 물줄기가 새로이 만들어졌다. 한강의 이같은 흐름 변화에 대해서는 강재철(2022)을 참고할 수 있다.

한강의 여의도는 본디 한강 북쪽 관할 지역이었으나 여의도가 섬이 된 까닭에 이제는 한강 남쪽 지역의 관할이 된 것처럼 연산강창도 본디 연산현 지역에 세워졌을 것이나 물줄기의 흐름 변화로 은진현에 소재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연산강창이 위치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마을명으로 ‘창리’와 ‘해창리’ 등이 있어 연산강창 주변의 하천은 여러 번 물줄기의 흐름이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총독부에서 대정 13년 11월 30일에 발행한 1/50000 조선지형도 논산 도엽에 창고와 관련된 마을명 두 곳이 다음과 같이 나온다.



<그림 5> 조선지형도 논산 도엽 논산 지역 일부

<그림 5>에서 습리는 노성현에서 내려오는 물줄기와 연산현과 은진현을 갈라 놓는 물줄기가 합수되는 私津 남쪽에 하천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 그런데 海倉里는 하천에서 멀리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하천에서 멀리 떨어진 지점에 해창리가 소재한다는 것은 해창리 인근 지점에 하천이 흐르고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지명 유래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 준다

(18) 가. 구강-편[舊江-][들] 골말 앞에 있는 넓은 들, 전에는 이 곳에 강이 나서 상선들이 때를 지어 들어오고 시장이 섰었는데, 백여년 전에 큰 장마로 강이 탄곳으로 통하였으므로, 구강편이라 함 <한국지명총람 충청남도 논산군 논산읍 인천리>

나. 어설메 앞에 강이 있을 때에는 이 동리에는 고기잡이가 많이 살고 있다고 하여 어설매라 함. <1959년 전국지명사찰 논산시편 논산읍 등화리>

(18가)에서 말한 ‘골말’과 (18나)에서 말한 ‘어설메’는 논산군 논산읍 등화리의 자연 마을 명칭이다. 등화리는 <그림 5>에서는 ‘해창리’ 남쪽의 ‘등리’를 말한다.

<그림 5>에서 ←로 표시한 것이 본디의 하천 흐름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연산강창의 본디 위치는 해창리 근처였으나 하천의 직진 성향과 홍수로 인하여 물줄기의 흐름이 변화된 결과, 연산강창의 창고가 창리로 옮겨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5>에서 창리가 소재한 하천명은 조선 시대 후기 私津으로 불리웠고, 私津의 북쪽 상류명은 草浦로 불리웠고, 동쪽 상류는 沙橋川으로 불리웠다. 沙橋川은 <그림 5> 阿湖里 서쪽의 하천명인데 해창리 지역까지 沙橋川으로 불린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하천의 주요 흐름이 창리 북쪽으로 옮겨지고 새로이 옮겨진 연산강창 근처의 하천명이 私津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은 薪浦와 沙橋川의 이표기 관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고, 草浦와 私津의

이표기 관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薪浦와 沙橋川의 이표기 관계

薪浦와 관련하여 倉里의 상류 지역의 하천명이 沙橋川인 점이 주목된다. 薪浦와 이표기 관계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하천명 沙橋川이 연산현에 소재하기 때문이다. 은진현에 소재했지만 연산현 소관의 창고인 連山江倉으로 인하여 薪浦가 백제 加知那縣, 경덕왕 개정 명칭 市津의 별칭으로 『고려사』에서 薪浦가 제시된 것으로 이해된다.

沙橋川은 ‘삽다리내’ 정도를 표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 시대 지지 자료에서 연산현 沙橋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19) 가. 布川 一云沙橋川 西二十五里 <대동지지 연산 산수>
나. 布川, 一云沙橋川 治西二十五里 <여도비지 연산 산천>
- (20) 沙橋里 사다리 <조선지지자료 연산 赤寺谷面 동리촌명>

(19)는 布川의 별칭이 沙橋川임을 말하고 있다. (20)의 ‘사다리’는 沙橋川이 ‘삽다리내’ 정도를 표기했음을 알려 주고 있다. 이를 확인해 주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 (21) 가. 沙橋浦 삽다리기 <조선지지자료 全羅南道3-1 木浦府郡 多慶面 江名>
나. 沙橋 삽다리 <조선지지자료 全羅南道3-1 木浦府郡 多慶面 酒幕名>
다. 沙橋里 삽다리 <조선지지자료 忠淸南道1-1 魯城郡 長久面 洞里村名>
라. 沙橋 삽다리 <조선지지자료 全羅南道3-1 木浦府郡 多慶面 酒幕名>
마. 沙橋里 삽다리 <조선지지자료 忠淸南道1-1 魯城郡 長久面 洞里村名>
바. 沙橋浦 삽다리기 <조선지지자료 全羅南道3-1 木浦府郡 多慶面 江名>

『신증동국여지승람』 충청도 덕산현 산천 조에 수록된 沙邑橋川을 고려할 때, (21)의 沙橋는 沙邑橋의 생략 표기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삽다리’는 薪橋로도 표기되고 있다.

- (22) 가. 薪橋川 삽다리니 <조선지지자료 忠淸南道1-2 鴻山郡 南面 川名>
나. 薪橋店 삽다리주막 <조선지지자료 忠淸南道1-2 鴻山郡 南面 酒店名>
다. 薪浦鄉。卽鉞浦。薪、鉞方言相類。 <신증 密陽都護府 고적>

(22가)와 (22나)는 薪이 ‘삽’을 표기한 사례이며 (22다)는 薪이 그 훈인 ‘섭’ 뿐만 아니라 ‘삽’도 표기했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이상으로 논의한 바와 같이 『고려사』에 등장한 薪浦는 은진현 소재 연산현 소관의 창고가 소재한 倉里 또는 海倉里 상류 지역의 하천명 沙橋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조선 시대 私津으로 불린 곳은 본디 薪浦로 불리었으나 私津의 또 다른 草浦의 확대에 밀려 私津의 상류명에만 沙橋川으로 존속된 것으로 이해된다.

4) 草浦와 私津의 이표기 관계

은진현 소재 연산현 소관 連山江倉은 연산현만의 명칭으로만 표현되다가 魯城、連山兩邑江倉과 같이 두 현의 江倉으로 표현되고 있다.

(23) 가. 連山江倉 <여지도서 은진 지도>

나. 連山稅倉 <은진현지도 1872>

(24) 가. 魯城連山兩邑江倉 在市津浦北岸 <대동지지 은진 참고>

나. 江倉 在江景浦 ○魯城、連山兩邑江倉在市津浦北岸 <여도비지 은진 참고>

(23)에서 連山江倉으로만 불리던 것이 (24)에서는 魯城連山兩邑江倉으로 불리고 있다. 沙橋川은 연산현에 소재하고 있지만 草浦는 연산현과 노성현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그런데 沙橋川과 草浦의 합류 지점은 沙橋川으로 불리다가 魯城連山兩邑江倉으로 불리게 되면서 沙橋川이란 명칭은 합류 지점의 상류 명칭으로 존속하고 합류 지점은 草浦의 이표기로 추정되는 私津으로 불리게 된 것으로 이해된다.

私津은 다음과 같이 여러 이표기가 전해 오고 있다.

(25) 私津

가. 私津 在縣北十二里卽連山縣布川、草浦之合流處 <신증 은진 산천>

나. 私津 在縣北十二里 卽連山縣布川、草浦之合流處 <여지도서 은진 산천>

다. 私津 北十二里 連山布川及草浦合流處 <대동지지 은진 산천>

라. 私津 治北十二里 連山之布川、草浦合流處 <여도비지 은진 산천>

(26) 沙津

가. 布川 在縣西二十六里 源出恩津縣 東入同縣沙津 <여지도서 연산 산천>

나. 草浦 在縣西二十里 源出鷄龍山 入沙津 <여지도서 연산 산천>

(27) 松津

松津在縣北十二里 卽連山縣浦川草浦合流處 <호서읍지(1899) 은진 산천>

(28) 肆津浦

金海 昌原의 草場과 恩津 江景浦 肆津浦 金浦 所室 通津 造江을, 청컨대 本府에 모두 소속시켜 稅를 거두어 需用에 보태게 하소서."하니, 허가하였다.¹⁹⁾ <숙종실록 1703년(숙종 29) 5월 26일>

(25)-(28)에서 말한 ‘私津, 沙津, 松津’ 등은 草浦와 ‘沙橋川/布川’이 합류되는 지점의 하천 이름을 말한 것이므로 ‘私津, 沙津, 松津’ 등은 이표기 관계에 있는 것이다. (28)의 肆津 역시 ‘私津, 沙津, 松津’ 등과 이표기 관계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지지자료』 충청남도 연산현 조에는 草浦에 대한 한글 표기가 ‘뫓기’로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私津, 沙津, 松津, 肆津’ 등을 직접 ‘뫓기/草浦’의 이표기로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輿地圖書』 문경현 산천 조의 ‘鳥嶺 在縣西二十七里 延豐縣界 俗號草岫’을 고려하면 ‘私津, 沙津, 松津, 肆津’ 등의 ‘私, 沙, 肆’ 등은 ‘스’ 정도를 표기한 것으로 ‘뫓’을 의미하는 ‘새’ 또는

19) 『숙종실록』 1703년(숙종 29) 5월 26일, “金海昌原草場 恩津 江景浦·肆津浦、金浦伏所室, 通津 造江 請竝屬本府收稅 以補需用 許之”

‘시’ 정도를 훈차 표기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松津의 松은 ‘누루’ 앞에서 ㄹ이 탈락한 ‘소’ 정도를 표기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여기의 ‘소’는 ‘풀’을 의미하는 ‘시’에서 발달한 것으로 이해된다.

草浦의 하류 지점의 하천명이 草浦의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은 沙橋라는 하천명의 지위를 草浦라는 하천명이 몰아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하천명 변경의 배경은 현재는 잘 알 수 없다. 다만 ‘연산강창’이 두 읍을 지칭한 魯城連山兩邑江倉의 이름으로 바뀐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진현 산천 조에 私津이 수록되었으므로 草浦가 沙橋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었던 것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초본인 『동국여지승람』이 편찬된 15세기 말일 것으로 추정된다.

4. 加知奈의 이표기 ‘葛那, 加乙乃, 笠乃, 立乃, 仁川’ 등의 국어사적 의의

4.1 지명의 차자 표기 적용 방법 변화 과정에 대한 암시

‘加知奈, 葛那, 加乙乃, 笠乃, 立乃, 仁川’ 등의 이표기에 적용된 차자 표기 방법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9)

| | 지명 표기 | | 차자 표기 방법 | |
|----|----------------------|-------|-----------|-------|
| | 특정 명칭 ²⁰⁾ | 유형 명칭 | 특정 명칭 | 유형 명칭 |
| 가. | 加知 | 奈 | 音假 표기 | 音假 표기 |
| 나. | 葛 | 那 | 통합적 音假 표기 | 音假 표기 |
| 다. | 加乙 | 乃 | 분석적 音假 표기 | 音假 표기 |
| 라. | 笠 | 乃 | 訓讀 표기 | 音假 표기 |
| 마. | 立 | 乃 | 音讀音假 표기 | 音假 표기 |
| 바. | 仁 | 川 | 音假 표기 | 訓讀 표기 |

(29라)의 笠을 훈독 표기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加知, 葛, 加乙’ 등은 音假 표기가 된다. 葛과 加乙은 ‘갈’ 정도를 표기한 것으로 ‘*가디>*가리>갈’의 변화가 국어에서 발생했음을 알려 준다. 葛은 ‘갈’을 1 글자로 적은 통합적 음가 표기가 되며, 加乙은 ‘갈’을 2 글자로 적은 분석적 음가 표기가 된다. 加乙과 같은 분석적 음가 표기는 차자 표기에서 국어의 종성을 구분하여 인식했음을 보여 준다.

(29마)의 立은 훈독 표기가 된다. (29마) 立은 笠을 훈독하지 않고 音讀했기에 笠이 立으로 표기된 것이다. 笠을 음독하여 笠과 동일한 음인 立으로 대체한 것이므로 (29마) 立은 음가 표기로 생각된다.

(29바)의 仁은 ‘인’을 표기한 것이므로 음가 표기가 된다. ‘立乃/입내’에 비음동화와 치경음

20) 지명은 일반적으로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으로 구성된다. 종래 한국 지명학회에서는 첫 번째 부분을 ‘전부 요소’, 두 번째 부분을 ‘후부 요소’로 규정하여 지명 연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전부 요소’와 ‘후부 요소’의 용어가 지명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한국 지리학계에서는 지명의 첫 번째 부분을 ‘고유 지명’, 두 번째 부분을 ‘속성 지명’이라 하였다. ‘고유 지명’과 ‘속성 지명’에 사용된 ‘고유’와 ‘속성’의 의미는 다른 분양에서 사용되는 개념과 혼동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지명의 첫 번째 부분을 ‘특정 명칭’, 두 번째 부분을 ‘유형 명칭’으로 정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위치 동화가 적용되어 도출된 ‘인내’의 ‘인’을 仁으로 표기한 것이다. ‘立乃/입내’는 ‘입내>임내>인내’ 정도의 변화 과정을 거쳐 ‘인내’의 발음형을 가지게 된 것이다.

『번역소학』 7:24b에 奈의 한자음이 ‘R내’, 『육조단경』 상:5a에 那의 한자음이 ‘L나’, 『번역소학』 4:22a에 乃의 한자음이 ‘R내’, 『번역소학』 10:9a에 乃의 한자음이 ‘H내’ 등으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奈, 那, 乃’ 등은 후기 중세국어의 ‘내ㅎ/川’를 음가 표기한 것이다. 다만 那의 경우에는 ‘나리’ 또는 ‘내’의 ‘나’를 부분적으로 표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29)에서 특정 명칭과 유형 명칭의 표기에 적용하는 차자 표기 방법의 변화를 살펴 볼 수 있다. 즉 특정 명칭의 표기에 적용된 차자 표기의 방법은 음가의 방법을 적용하는 단계에서 혼독의 방법을 적용하는 단계를 거쳐 음독음가의 방법을 적용하는 단계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유형 명칭의 표기에 적용된 차자 표기의 방법은 음가의 방법을 적용하는 단계에서 혼독의 방법을 적용하는 단계에서 마무리되고 있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다.

4.2. ‘갓/笠’과 ‘가리[곡식이 쌓인 것]’의 동일 어원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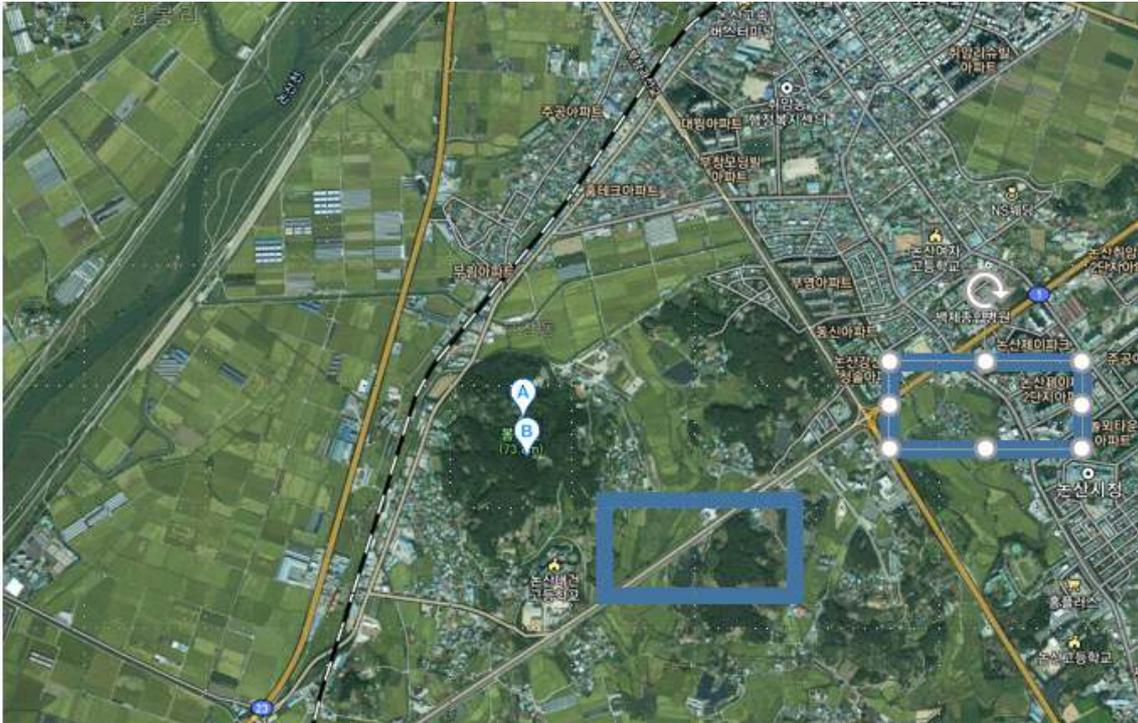
현대 국어에서 ‘갓[笠]’은 종성으로 ‘ㅅ’의 발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훈민정음해례』 용자례의 ‘갓爲笠’에서 보는 것처럼 15세기 국어에서 ‘갓’은 종성의 발음이 ‘ㄷ’이다. 15세기 국어에서는 종성의 위치에서 ‘ㅅ’과 ‘ㄷ’이 구별되었기 때문에 ‘갓爲笠’에 나오는 ‘갓’의 종성 발음은 본래부터 ‘ㄷ’이다. 그런데, 『역어유해』 상:26a의 ‘굴갓[箬笠]’에서 보는 것처럼 종성의 표기가 ‘ㄷ’에서 ‘ㅅ’으로 바뀌었고 그 발음도 ‘t’에서 ‘s’로 바뀐 것으로 생각된다. 15세기 국어에서 종성으로 ‘ㄷ’을 가지는 단어들인 ‘곧, 벉’ 등은 현대 국어에 이르러 그 표기가 ‘곳, 벉’ 등으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발음에서도 ‘t>s’의 변화가 있었다. 15세기 국어의 ‘갓’도 ‘곧, 벉’ 등과 동일한 변화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계림유사』에는 ‘笠 蓋 音濁’이 나온다. 이것은 ‘갓[笠]’의 11세기 형태는 ‘갈’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황화산성에서 출토된 와명문의 이표기 葛那와 笠乃의 대응을 통해서도 ‘갓[笠]’의 형태가 ‘갈’ 정도임을 확인할 수 있다. 『내훈』 1:26b의 곳갈[冠]에서 보는 것처럼 11세기의 ‘갈’은 15세기 국어에서도 ‘갈’로 계승되었다.

결국 15세기 국어에서 ‘갓[笠]’은 그 형태가 2개인 쌍형어를 보인 것이다. 곧 ‘갓’과 ‘갈’의 두 형태이다. ‘葛那/갈내, 加乙乃/갈내’ 등의 이전 시기 차자 표기는 백제 시대 ‘加知奈/*가디내’ 이므로 ‘*가디>*가리>갈’ 정도의 변화에서 15세기 국어의 ‘갈’ 형태가 파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5세기 국어 ‘갓’ 형태 발달 경로를 두 종류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갈>갓’의 변화 경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또다른 하나의 경로는 ‘*가디>갓’의 변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 ‘ㄷ>ㄹ’의 변화는 국어에 존재하지만 ‘ㄹ>ㄷ’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15세기 국어 ‘갓’은 ‘*가디>갓’의 변화로 발생된 형태로 생각된다.

통일 신라 시대의 葛那城은 조선 시대에는 황화산성으로 부르고 있다. 이 황화산성이 작은 평야 지대에 위치하고 그 정상이 75M인 산이므로 葛那城의 葛의 의미를 ‘곡식이 쌓인 더미’를 뜻하는 ‘가리²¹⁾’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즉 평야 지대에 있는 ‘산더미’로 파악한 것이 아닌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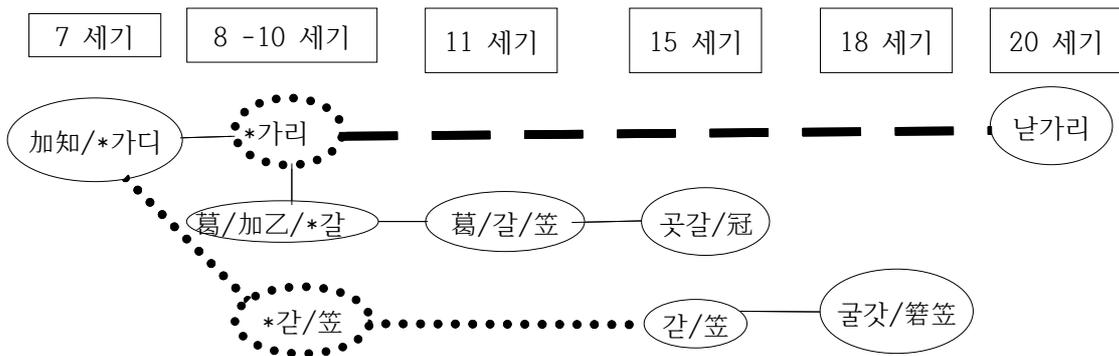
21) ‘가리’가 들어간 말로 현대 국어에 ‘날가리, 벉가리, 露積가리’ 등이 있으며, 유희 『물보』에는 ‘보리 가리/麥笊’도 있다.



<그림 7> daum 지도의 논산 황화산성 지역

<그림 7>에서 상단의 네모로 표시한 지역은 論山이고 하단의 네모로 표시한 지역이 皇華山이다. 들판 가운데에 論山과 皇華山이 자리한 것은 마치 논에 있는 ‘벗가리’의 모습과 유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으로 논의한 바를 정리하여 ‘*가디, 갈, 갇, 가리’ 등의 발달 단계를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8>

‘加知/*가디’의 본래 의미는 ‘쌓인 더미’이고 비유적으로 ‘갯[立]’의 의미를 가졌는데, 본래 의미는 발음 변화형인 ‘가리’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파생적인 의미인 ‘갯[立]’의 의미를 표현하는 어형은 본래의 형태인 ‘갈’을 유지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현상은 ‘갈’은 ‘갈ㅎ’에서 그 형태가 변화하였으나 ‘갈티’에서 온 ‘갈치’는 ‘갈’의 고형 ‘갈’을 유지하는 현상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백제 현명으로 나타난 仇知는 ‘*구디’ 정도를 표기한 것으로 후기 중세국어에서 銅을 의미하는 ‘구리’와 관련된 것으로 논의되어 왔다고 하였다. 또, 백제 시대 ‘*구디’는 후기 중세 국어의 ‘굳-(堅)’과 동일 어원인 것으로 논의되어 왔다.²²⁾ 이와 마찬가지로 ‘쌓인 것’의 의미인 ‘가리’와 백제 시대 ‘加知/*가디’가 후기 중세국어의 ‘갸-(收)’과 동일 어원임을 이해할 수 있다.

후기 중세국어 ‘굳-(堅)’과 백제 시대 ‘仇知/*구디’의 동일 어원 관계와 후기 중세국어 갸-(收)과 백제 시대 ‘加知/*가디’의 동일 어원 관계에 근거하여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 두고 국어사의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하나의 가능성으로 명사 어간과 동사 어간이 백제 시대에 구별되었다면 ‘仇知/*구디’와 ‘加知/*가디’의 예를 통해서 ‘동사 어간’에 결합하여 파생 명사를 생산하는 접미사 ‘-이’가 백제 시대에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하나의 가능성으로 명사 어간과 동사 어간이 백제 시대에 구별되지 않고 통합되어 있었다면, ‘*구디>굳, *가디>갸’ 등의 변화를 통하여 계림유사의 ‘笠/葛’을 참고하면 11세기 이전에 단음절화 현상이 국어에서 발생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5. 결론

생략함

<참고문헌>

- 강재철(2022), 「인천과 부천의 접계지 송내 권역의 지명과 조수」, 『지명학』 36, 한국지명학회, 141-166.
- 강현규(2014), 「백제 지명 “加知奈縣 一云 加乙乃縣”의 어원적 연구」, 『한글』 305, 한글학회, 5-62.
- 권인한·김경호·윤선태 편(2015ㄱ), 『한국고대문자자료연구 백제(하)-지역별』, 주류성.
- 권인한·김경호·윤선태 편(2015ㄴ), 『한국고대문자자료연구 백제(하)-주제별』, 주류성.
- 김선기(1973), 「백제 지명 속에 있는 고대 음운 변천」, 『百濟研究』 4,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3-36.
- 都守熙(1975), 「百濟語의 仇知와 實에 대하여」, 『國語學』 3, 국어학회, 173-177.
- 都守熙(1977, 1997), 『百濟語研究』, 百濟文化社.
- 도수희(2007), 「지명어 음운론」, 『지명학』 13, 한국지명학회, 113-145.
- 李崇寧(1971), 「百濟語 研究와 資料面의 問題點-특히 地名의 考察을 中心으로 하여-」, 『百濟研究』 2,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57-166.
- 손환일(2009), 「百濟 栢嶺山城 출토 명문기와와 木簡의 서체」, 『구결연구』 22, 구결학회, 123-149.
- 심상욱(2005), 「百濟時代 印刻瓦에 關한 研究」, 公州大學校 大學院 석사학위논문.
- 俞昌均(1969), 「韓國 古代漢字音의 研究(其一)」, 『東洋文化』 9, 영남대.
- 이강로(2001), 「加知奈·加乙奈→ 市津의 해독에 대하여」, 『지명학』 5, 한국지명학회, 47-66.
- 이건식(2016), 「중국식 한자 지명 표기의 음가적 표음성과 비상관적 표의성」, 『지명학』 25, 한국지명학회, 155-222.

22) 趙載勳(1973: 25)에 따르면 김형규의 증보국어사연구(1969)에서 仇知를 ‘굳(堅)’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한다. 현재 증보국어사연구(1979)에서는 이러한 진술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이병호(2013), 「금산 백령산성 출토 문자기와의 명문에 대하여-백제 지방통치체제의 한 측면-」, 『백제문화』 1,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65-88.
- 趙載勳(1973), 「百濟語研究序說」, 『백제문화』 6,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7-43.
- 천소영(1990), 『고대국어의 어휘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충남대학교박물관(2002), 『부여의 문화유산』, 충청남도 충남대학교박물관.
- 홍영의(2015), 「고려시대 명문(銘文)기와의 발굴 성과와 과제」, 『한국중세사연구』 41, 한국중세사학회, 9-81.
- 洪再善(1983), 「論山 皇華山城考」, 『고문화』 23, 한국대학박물관협회, 35-52.

敦煌·吐魯番 출토문서를 통해 보는 唐代 官文書와 문서행정

박근칠(한성대학교)

敦煌·吐魯番 출토문서를 통해 보는 唐代 官文書와 문서행정

박근칠(한성대학교)

목차

I. 唐代 官文書와 문서행정 이해의 전제

1. 律令과 屯煌·투르판출토문서
2. 문서행정의 운영과 公文書의 작성
3. 公文과 官文書
4. P.2819, 「唐開元公式令殘卷」과 관문서 유형
5. 안건 처리절차와 官人의 역할
6. 案卷과 문서행정의 운영

II. 관문서 작성과 문서행정 운영의 실상

1. 관문서의 서식과 기능 …… [1. 官文書의 실례 : 關文의 경우]
 2. 정무 처리과정과 관문서의 작성 절차 …… [2. 文案 작성의 실례]
 3. 안건의 구성과 문서행정의 운영 …… [3. 案卷의 실례]
-

I. 唐代 官文書와 문서행정 이해의 전제

1. 律令과 屯煌·투르판출토문서

동아시아 고대국가의 형성과 관련하여 율령체제나 율령제 국가군이라는 개념이 강조되기도 하였다. 이는 주로 唐代에 정비되었던 律令이라는 법률규정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동아시아 주변 국가에 영향을 주었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에서 국가체제를 갖추게 되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당대 율령으로 조문화된 제반 제도에 대한 규정은 해당시기 동아시아 왕조들의 지배체제를 이해하는 典範으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다만 법률규정을 통해 제시된 제도운영의 원칙이 실제로 어떻게 기능했는지, 제도운영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등 법률규정의 실제적 적용상황에 대해서 전존하는 典章 문헌만으로는 그 실상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屯煌·투르판 출토문서의 의미가 부각되었던 까닭이기도 하다.

屯煌·투르판문헌은 해당 지역의 자연 환경적 조건에 의하여 종이가 서사 도구로 사용되었던 초기(대략 3세기 이후)의 자료들을 오늘날까지 그대로 전해 주었다. 屯煌 막고굴의 석실에서 발견된 사본들과 투르판분지의 묘장이나 유지에서 발굴된 문서에는 동서 문화교류의 흔적만이 아니라 중원왕조와의 관계를 반영한 다양한 내용들이 혼재하였다. 특히 당조가 沙州나 西州라는 행정조직을 통해 실시했던 여러 제도의 구체적 운영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당대 각종 제도의 운영실태가 반영된 문서와 더불어 屯煌·투르판문서에는 상정된 안건을 해당 관사에서 처리하는 과정, 즉 문서행정의 처리 절차를 파악할 수 있는 문건들도 확인되었다. 이른바 율령의 규정이 황제를 정점으로 한 행정조직[官制]의 편성, 이를 구성하는 官人에 대한 직무 분장과 그 엄격한 준수를 의도한 것이라면 해당 관사에서 이루어지는 문서행정의 처리 절

차는 율령의 실제적 효능과 이와 관련된 관인의 역할을 명확히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더욱이 돈황·투르판문서에는 관사에서 발급한 여러 유형의 관문서만이 아니라 상정된 안건의 처리과정에서 작성한 文案이 두루마리 형태로 連接된 案卷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안건에 기재된 해당 안건의 처리절차나 안건을 구성하는 문안의 연결상황 등은 당대 문서행정의 구체적인 운영상황을 이해하는데 특기할 만한 자료라고 하겠다.

2. 문서행정의 운영과 公文書의 작성

중국의 역대 왕조는 秦·漢 제국 이래 황제를 정점으로 한 정치조직을 통하여 지배체제를 구축, 유지하였다. 이러한 중앙 집권적 권력체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官人을 중심으로 체계화된 관료조직이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황제지배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제반 정책의 운영은 관인제를 기반한 官制의 편성과 그에 상응하는 職掌의 분담을 전제하였다. 이와 관련된 禮制와 法令의 규정을 정비, 시행했던 것도 지배체제의 강화를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 과정에서 실제의 직무 수행 과정을 반영한 문서행정이 체계적으로 정비되면서 황제의 공적 통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관료제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당대 각종 행정제도의 운영은 공식적인 문서의 작성을 통한 담당 官司 간의 긴밀한 업무 처리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황제를 정점으로 한 중앙 기구와 그 예하의 관사, 그리고 지방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정무처리를 위해서는 이러한 위계적 조직을 근거하여 官府 사이의 통속관계를 반영한 문서행정의 운영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 관사 간의 서열관계만이 아니라 행정관부 간의 위계나 통속관계, 또는 처리해야 할 업무의 내용과 상호관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公文書의 작성이 요구되었다. 唐代에 황제의 명령에서부터 지방 관사의 업무내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황과 요구 등을 반영하여 작성되는 공문서의 서식을 법령으로 규정할 필요가 부각되었던 것 역시 이러한 상황에 따른 것이다. 당대에 공적 정무의 처리와 관련된 문서행정이 황제를 중심으로 한 중앙 조직과 지방 사이의 수직적인 문서 전달 체계를 근간으로 하여 운영되었다면 실제로 행용되었던 공문서의 유형과 종류에 대한 이해는 당대 문서행정의 파악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하겠다.

3. 公文과 官文書

당대 행용되던 ‘公文’의 범주를 일률적 기준에 따라 명확히 단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官에 있는 문서(在官文書),¹⁾ 즉 관부에서 처리하는 공적 문서라고 한정할 수 있다면 일단 그 운영상의 위법 대상을 명시한 律文의 규정을 준용하여 ‘制書’와 ‘官文書’로 구분할 수 있다. 唐律에는 공무 처리와 관련된 문서의 작성, 발급, 전달 등 운영 과정상 私文書와 구분되는 公文書를 制書와 官文書로 대별하여 위법시 적용되는 형량의 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가령 문서 내용상 오류가 있어 고쳐야 하는데 규정된 절차를 무시하고 개정할 경우 制書는 杖 80대인데 비하여 官文書는 笞 40대로, 制書의 경우를 보다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²⁾ 여기서 관문서는 官司에서 행용되는 文案과 符·移·解·牒·鈔·券 등의³⁾ 부류이

1) 『唐律疏議』 권10, 職制律, ‘事職代判署’條疏議, p.203. ‘諸公文有本案, 事直而代官司署者, 杖八十……’에 대한 疏議에 “公文, 謂在官文書, 有本案, 事直唯須依行”이라고 하였다.

며 制·敕·奏抄 등과 구별되는 것이다.⁴⁾

일반 관사에서 행용되던 관문서와 구분되는 制·敕·奏抄 등은 황제의 명령이나 황제에게 裁可를 청하는 문서(이른바 ‘奏事문서’)에 해당한다. 황제를 중심으로 한 지배체제에서 공문서 가운데 황제의 문서인 王言類가 관문서에 비하여 엄중하게 관리된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하겠다. 이들 왕언류 문서에는 황제의 명령인 하행문서로서 ‘冊·制·敕’의 범주에 해당하는 7종의 王言(冊書, 制書, 慰勞制書, 發日敕, 敕旨, 論事敕書, 敕牒)⁵⁾과 함께 ‘準王言’에 해당하는 황태자의 令書, 親王·公主의 敎書가 포함되었다.⁶⁾ 또한 황제에게 상신되는 상행문서로서 ‘皇帝上呈文書’인 奏抄, 奏彈, 露布도⁷⁾ 황제의 裁可를 얻으면 制書와 같은 효능이 인정되었다.⁸⁾ 따라서 당대에는 官에서 행용하던 문서를 공문서라고 총칭하면서 그 가운데 황제의 승인[御畫]을 반영한 왕언류 문서와 일반 관부 사이에서 행용되던 관문서를 구분하였지만 관문서를 공문서로 통칭하기도 하였다.[그림1: 公文書의 범주]

그런데 이들 왕언류 문서는 『唐六典』 등 전존 典籍을 통하여 그 종류나 기능 등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기는 하지만 서식이나 작성 과정 등을 반영한 실제의 사례들이 확인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들은 주로 중앙 관부에서 처리, 발급한 문서인데다가 관련 전적에 수록된 문건들이 작성 당시의 형식이 아닌 필요에 따라 발췌, 전사의 과정을 거쳐 재록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관부에서 행용되던 공문서의 기능을 통하여 당대 문서행정의 실상을 파악하려는 연구에서는 주로 敦煌·吐魯番지역에서 출토된 관문서의 실례를 통한 분석 방법이 주목되었다.

4. P.2819, 「唐開元公式令殘卷」과 관문서 유형

당대에 帝國의 운영 기제와 관련된 규정으로서 공문서의 양식과 그 작성, 처리 등에 대한 법령은 公式令으로 확정하였다. 그런데 唐令의 산일로 인하여 공식령의 조문 역시 현재로서는 전모를 파악하기 곤란하다. 종래 공식령의 조문 구성을 주로 일본 공식령의 배열 순서에 근거하여 재현하려는 시도도 있었으나 해당 내용을 唐令에서 파악할 수 없는 조문도 상당수 확인된다.* 다만 ‘공식령’은 公式, 즉 공문 양식에 관련된 令의 조항처럼 명명되었으나 공문서의 서식에 대한 규정과 더불어 그 작성, 전달, 처리, 보관 등 문서행정 전반의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공문서 양식에 대한 적시만이 아니라 공문서의 처리를 통하여 공무 집행에 관여한 행정 관부나 관사의 역할까지도 명시하였다. 당대 관료제 운영의 공

2) 『唐律疏議』 권10, 職制律, ‘制書官文書誤輒改定’條, p.200.
3) 『唐律疏議』 권25, 詐爲律, ‘詐爲官文書及增減’條 疏議, p.460, “詐爲官文書, 謂詐爲文案及符·移·解·牒·鈔·券之類.”
4) 『唐律疏議』 권9, 職制律, ‘稽緩制書官文書’條 疏議, p.197, “官文書, 爲在曹常行, 非制·敕·奏抄者.”
5) 『唐六典』 권9, 中書令, pp.273~274, “凡王言之制有七: 一曰冊書, 二曰制書, 三曰慰勞制書, 四曰發日敕, 五曰敕旨, 六曰論事敕書, 七曰敕牒. 皆宣署申覆而施行焉.”
6) 『唐六典』 권1, 尚書都省, 左右司郎中員外郎, p.10, “凡上之所以逮下, 其制有六, 曰: 制·勅·冊·令·敎·符 <天子曰制, 曰敕, 曰冊. 皇太子曰令. 親王·公主曰敎. 尚書省下於州, 州下於縣, 縣下於鄉, 皆曰符>.”
7) 『唐六典』 권8, 門下省, 侍中, pp.241~242, “凡下之通于上, 其制有六, 一曰奏抄, 二曰奏彈, 三曰露布, 四曰議, 五曰表, 六曰狀. 皆審署申覆而施行焉.”
8) 『唐律疏議』 권9, 職制律, ‘被制書施行有違’條 疏議, p.198, “其奏抄御親畫聞, 制則承旨宣用, 御畫不輕承旨, 理與制書義同.”; 同, 권19, 賊盜律, ‘盜制書及官文書’條 疏議, “盜制書徒二年, 敕及奏抄亦同. 敕旨無御畫, 奏抄即有御畫, 不可以御畫奏抄輕於敕旨, 各與盜制書罪同.”

능이 문서행정의 운영과 밀접하게 연관되었던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

당대 공문서 가운데 왕언류 문서와 구별하여 정무 관부 간에 행용되던 관문서의 경우, 돈황출토 펠리오문서인 P.2819 「唐開元公式令殘卷」⁹⁾ 가운데 그 일부 조문이 확인되어 해당 서식을 파악할 수 있다.** 더욱이 돈황·투르판 출토문서 가운데 이러한 서식을 반영한 문서의 실례들을 확인할 수 있어 해당 유형 문서의 성격과 기능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다만 P.2819 문서의 내용은 잔권의 형태로 앞뒤 부분이 결락되어 있어 관문서 유형의 전모를 확정하긴 곤란하다. 돈황·투르판 출토문서를 활용하여 당대 전적에는 거론되나 잔권의 공식령 규정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관문서 유형의 실례와 해당 서식을 추정하려는 접근 방법이 보다 적극적으로 제기되는 까닭이기도 하다.

한편 일반적으로 공식령의 규정에 따라 관사간의 통속관계나 위계질서를 반영하여 발급된 관문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처리 과정을 거쳐 그 결정 내용을 시행하기 위하여 작성된 문서들이다. 즉 돈황출토 P.2819 「당개원공식령잔권」의 내용을 통해 관문서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移式, 關式, 牒式, 符式과 더불어 당대 법률 규정에 언급된 刺式, 解式 등의 관문서들은 해당 관사의 정무처리 결과를 반영하여 발급된 것이라 하겠다. 더욱이 이러한 관문서들은 사적 통행증인 過所나 개인의 관혼 사여에 대한 告身처럼 결정 내용이 개인에게 전달되는 것과 달리 상부 관사에 대한 보고나 문의[上申=上行], 하부 관사에 대한 지시나 전달[下達=下行], 관부 사이의 협조 요청[平行] 등 문서를 접수하는 대상이 대개 관사로 특정되어 있다 [그림2: 당대 관문서의 운영체계].

따라서 관문서를 접수한 관사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처리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출토문서 가운데 확인되는 공식령 규정에 따라 작성된 관문서는 이를 접수한 관사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 처결의 과정을 연결하여 이루어진 문안의 일부를 구성하게 된다. 더욱이 이러한 관문서는 관사의 정무처리 절차 가운데 주로 안건의 상정에 해당하는 과정[立案]에서 기능하기 때문에 문안 가운데 案由文書로 파악된다.

5. 안건 처리절차와 官人の 역할

이처럼 당대 정무처리의 실상은 해당 관사에 접수되어 입안된 사안이 처리되는 문서행정의 과정에서 구현되는 것이다. 즉 당대에는 일반적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문서가 해당 관사에 접수되면 이에 대한 처리 절차가 진행되어 관련 조치가 결정되기까지의 전체 과정에서 작성된 문건들을 연결하여 하나의 문안을 만들게 된다. 이러한 문안은 안건의 상정[立案]에 근거가 되는 안유문서를 비롯하여 관련 내용에 대한 심문, 검토 과정[審案]과 담당관의 조치결정의 과정[判案], 조치의 시행[行判], 그리고 안건 처리 기한이나 오류 등에 대한 검사와 문안의 표제를 명시하는 과정[結案]까지 여러 절차상에서 작성된 문건들도 함께 연결된 것이다. 때문에 한 사안에 대한 처리 과정에서 작성된 문안이라도 여러 장의 종이를 연결한 경우가 있어 이러한 문안은 두루마리 형태[卷子]로 보관되기 때문에 案卷이라 칭하게 된

9) 法國國家圖書館·上海古籍出版社 編, 『法國國家圖書館藏敦煌西域文獻』第18冊(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1), pp.363~365. 錄文은 Tatsuro Yamamoto, On Ikeda, Makoto Okano co-ed., *Tun-Huang and Turfan Documents concerning Social and Economic History I: Legal Texts(A)*, Tokyo: The Toyo Bunko, 1980, pp.29~31; 劉俊文, 『敦煌吐魯番唐代法制文書考釋』, 北京: 中華書局, 1989, pp.221~245 등 참조. 이 令文이 개원 7년령인지 개원 25년령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다. 이처럼 하나의 문안이 긴 두루마리 형태인 長卷을 이루는 경우만이 아니라 해당 관사에서 처리한 여러 사안에 대한 각각의 문안을 연결한 경우에도 안권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문안 또는 안권은 안건을 처리하고 문안을 작성한 관사에 보관되어 여타의 관련 사안에 대한 처리 과정에서 대조, 검사를 위한 근거로 활용되었다.

한편 이러한 과정에서 당대 문서행정의 주요 담당자인 4等官(長官, 通判官, 判官, 主典)의 실제적인 역할과 기능도 당연히 문서상에 반영되었다.¹⁰⁾ 각 관부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장관, 차관인 통판관, 정무의 가부를 판정하는 판관,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직책의 주전 등 4등관 조직이 기능하였다.^{***} 이들은 각자 구분된 책임이 정해져 있었고, 안건 처리과정에서는 정해진 기한을 엄수하고 서명 등을 통해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정무 처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더욱이 별도의 勾檢官을 두어 정무 처리 과정과 결과에 대한 검사를 통해 행정의 엄밀성을 높이고자 했는데, 특히 당대 정무 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진 문서행정에 엄격한 준칙이 적용되었다. 해당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문안상에서 확인되는 이들의 역할은 문서행정의 실제적 운영 과정에 4등관제가 어떻게 기능했는가를 파악하는 주요한 예증일 수 있다.

6. 案卷과 문서행정의 운영

이처럼 종래 관문서의 유형을 파악하는데 천착했던 당대 관문서 관련 연구는 안건의 처리 과정 일체를 포괄하는 안권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당대 문서행정 운영상에서의 그 실제적 의미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안건 처리의 전체 과정을 포함하는 안권에 대한 분석이 당대 문서행정의 구체상을 파악하는 데 주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라는 판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종래 출토문서 가운데 온전한 상태의 안권이 충분치 않다는 문제에도 기인한다. 즉 立案, 審案, 判案, 行判, 結案 등 문서 처리과정의 전체 내용이 온전히 보존된 안권도 많지 않은데다가 해당 관사에서 처리한 사안들을 연결한, 이를테면 여러 사안의 처리 과정을 포괄하는 안권의 존재를 확인하기는 더욱 용이하지 않다. 이는 주로 투르판 출토문서의 경우처럼 폐기된 관문서를 喪葬用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여러 형태로 재단하여 원문서의 모습을 파악하기 곤란하게 된 사정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이들 2차로 이용된 문서 단편들을 재정리하여 원래 문서의 모습을 재현하려는 복원작업에서 발생한 오류에 기인하는 바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미 발굴, 보고된 출토문서 가운데 안건의 처리 과정을 비교적 온전하게 반영하고 있는 문안들에 주목하여 이들의 기재 내용을 통하여 다양한 유형의 관문서에서 제기된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과정을 파악하고 이를 실제적인 문서행정의 운영상황과 연관하여 분석해야 할 필요가 제기되는 것이다. 즉 해당 안건의 기재 내용에 포함된 각 사안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구체적 처리 과정을 통하여 지방의 정무처리 절차상에서 확인되는 문서행정의 실상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關式, 解式, 牒式 문서 등 여러 유형의 관문서가 안유문서로 기능하여 해당 사안이 立案되는 과정, 상정된 안건에 대한 審案이 진행되면서 이루어지는 관사 사이의 공조 관계,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문건

10) 『唐律疏議』 권4, 名例律, ‘同職犯公坐’條, p.110, “諸同職犯公坐者, 長官爲一等, 通判官爲一等, 判官爲一等, 主典爲一等, 各以所由爲首”에 대한 疏議에 大理寺를 예로 들어 長官은 大理, 通判官은 少卿과 正, 判官은 丞, 主典은 府·史이고 이들이 ‘4等’이라고 설명하였다.

들의 연접과 최종적으로 안권이 작성되는 과정 등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은 당대 지방 문서행정의 구체상을 이해하는 데 주요한 단서가 될 뿐 아니라 이러한 접근의 실마리가 되었던 출토문서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도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가령 당대 지방 문서행정에서 여러 사안을 연접한 長卷의 안권인 경우 각각의 문건들은 어떤 기준에서 연접이 이루어졌는지, 그 기준은 오늘날 喪葬用品으로 2차 가공되어 발견되는 안권의 잔편들을 복원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는 과정에 유용한 근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들을 통하여 출토문서를 중심으로 한 관문서에 대한 이해가 문서 유형에 대한 이해만이 아니라 정무의 처리 절차나 행정 관사간의 업무 분장 등 당대 지방 문서행정의 구체적 실상을 파악하는 주요 단서가 될 것이다.

II. 관문서 작성과 문서행정 운영의 실상

1. 관문서의 서식과 기능 …… [1. 官文書의 실례 : 關文의 경우]

돈황출토 P.2819 「당개원공식령잔권」을 통하여 당대 공식령 가운데 移式(전반부 결락), 關式, 牒式, 符式, 制授告身式, 奏授告身式(후반부 결락) 등의 내용이 확인되었다. 주로 『唐律疏議』에 규정된 官文書 유형과 「공식령잔권」 牒式, 符式の 補則 내용에 주목하여 당대의 관문서 유형에 刺式, 解式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즉 당대 관문서에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크게 上行문서로서 刺式, 解式이, 平行문서로서 移式, 關式이, 그리고 下行문서로서 牒式, 符式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공식령잔권」으로 서식을 확정할 수 있는 關式, 牒式, 符式에 해당하는 관문서의 실례를 돈황·투르판 출토문서 중에서 찾아내어 각 유형 관문서의 실질적인 기능과 특질에 접근할 수 있다. 물론 출토문서의 내용이 주로 중국 서북 변경을 대상으로 한다는 특수성 역시 무시할 수 없겠으나 당대 문서행정의 구체적인 모습에 접근하는 데 유효한 자료라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關文의 경우 주로 安西都護府나 西州都督府 예하의 각 曹司 사이에서, 한 曹司가 사안에 대한 處決을 해당 업무의 담당 曹司에 의뢰할 때 작성하였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매우 한정된 사례만이 확인되어 해당시기 문서행정 운영상의 특징을 포함하여 보다 구체적인 실상을 파악하긴 곤란한 상태이다.

牒文의 경우 「공식령잔권」에 규정된 하행문서만이 아니라 官人이 문서를 상달할 때에도 작성되었다. 그런데 극히 제한된 사례이기는 하지만 州에서 州로, 縣에서 縣으로 문서를 전달할 경우에도 牒文이 사용되었으며, 西州都督府 예하의 法曹와 功曹 사이에 첩문이 사용된 사례도 확인된다. 동일 장관 예하의 관사 사이에서 행용되던 관문서로 關文이 아닌 牒文이 사용된 경우인데, 주로 해당 관사로부터 관련 업무의 협조를 필요로 할 경우 사용되었다.

「공식령잔권」에 첩식과 같은 하행문서로 규정된 符式의 경우 일반 정무에 대한 상급 官司에서 하급 관사로의 문서 하달에는 주로 공식령에 규정된 符式을 준용하였다. 이에 비하여 勅旨를 하달할 경우는 符式을 받는 행정단위[州, 縣] 별로 직지와 符式을 ‘連寫’한 후 하급 행정단위의 담당자[主者]에게 전달하였다.

이처럼 현재 공식령을 통해 서식 규정이 확인되는 關式, 牒式, 符式의 경우, 관부 간에 행용되던 관문서의 내용에 發文者, 標題, 受文者, 문서내용, 문서작성 날짜, 문서작성자 서명 등의 요소들을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돈황·투르판 출토문서에서 확인되는 각 유형의 관문서에도 적용되고 있다. 더욱이 각 유형의 관문서 서식 가운데 문서 내용 말미에 명시된, 예를 들어 “……謹關”, “……故牒”, “……符到奉行” 등의 상용구가 公式令의 규정대로 또는 보다 상세한 문구를 포함하여 적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정무 처리과정과 관문서의 작성 절차 …… [2. 文案 작성의 실례]

돈황·투르판 출토문서에서 확인되는 다양한 유형의 관문서는 唐代 지방 관문서의 실례라는 점에서 관문서의 서식과 내용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관문서의 여러 유형을 파악하고 분류하는 작업은 그 서식이나 기재 내용에 대한 文書學的 의미 파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관문서의 작성과 관련된 당대 문서행정 운영에 대한 이해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이다. 唐代 출토문서에서 확인되는 다양한 형식의 문서들은 대부분 관련 사안에 대한 처리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들을 연결한 文案[案卷]의 일부를 구성한다. 즉 각 유형의 관문서가 실제로 당대 문서행정 운영에서 어떤 기능을 했는지는 案卷에 반영된 문서 처리 절차에 대한 이해를 전제해야 한다. 더욱이 公式令의 규정이 법령을 통해 관문서의 서식이나 기능을 명시하려 한 것이었다면 이 역시 문서행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의미가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관문서에 대한 법적 규정인 공식령 조문과 돈황·투르판 출토문서에서 확인되는 여러 유형의 관문서는 당대 지방 관문서의 처리절차, 즉 지방 문서행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기능 및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돈황출토 P.2819 「공식령잔권」의 공식령 서식에 준하여 작성된 특정 유형의 관문서는 실제로는 해당 사안에 대한 처리 과정에서 작성되는 안권의 일부로서 존재하였다. 즉 관문서는 이를 접수한 官司가 관문서에 기재된 해당 사안에 대한 처리 절차를 시작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며, 다른 한편 일정 사안에 대한 처리 결과를 다른 官司에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기능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관문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특정 관사에서 해당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을 반영하는 안권의 내용을 통하여 지방 문서행정의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문서[案由문서]의 접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안건의 상정 절차인 立案, 제기된 사안에 대한 심문과 勘檢의 과정에 해당하는 審案, 사안에 대한 처리 내용을 판정하는 判案, 결정된 처리 방안에 따른 조치(특히 조치 내용을 전달하는 해당 유형의 관문서 작성)를 집행하는 行判, 사안의 처리 과정과 작성된 관문서에 대한 검사인 檢勾와 표제인 抄目 작성을 포함하는 結案 등의 과정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안건의 처리 절차 가운데 관문서의 작성과 직결되는 것은 行判 과정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출토문서에서 확인되는 행판의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조치의 내용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受文者, 해당 유형 관문서의 文尾 상용구만을 명시하고 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처리 결과로 구체적인 조치가 기재되었을 관문서의 작성이 行判 과정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나 行判의 내용은 작성되는 官文書의 수문자와 유형만을 명시했던 것이다. 더욱이 行判의 기재 내용은 「공식령잔권」에 명시된 해당 유형 관문서 서식의 기재 내용과 일치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령에 규정된 관문서 유형에 대한 이해는 문서행정을 통한 정무 운영의 담당

자였던 官人이 반드시 갖추어야할 조건이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안건 처리의 최종적 조치가 관문서로 작성되어 발급되었음을 전제할 때, 행판에 명시된 특정 관문서 유형과 관련된 내용은 「공식령잔권」에서 확인되지 않는 당대 관문서의 유형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다만 행판의 내용에 관문서의 유형에 대한 기재가 없고 날짜와 처리자의 서명만 있는 사례로, 해당 抄目は “案爲……事”의 형식을 나타내는데 이는 判案의 결과가 이미 조치되어 다시 문서로 조치를 전달할 필요가 없는 경우이다.

개인의 통행증명서로서 중앙(尙書 刑部)이나 지방(州 또는 都督府)에서 발급하던 過所의 경우도 그 발급을 조치한 行判에 기재된 過所의 서식 내용이 출토문서에서 확인된 과소의 실례에도 그대로 기재되어 있어, 당대 공식령에 이른바 過所式이 규정되었을 가능성을 추정케 한다. 또한 최근 출토문서 가운데 일정한 형식을 갖는 관문서들이 확인되어 이를 관문서의 한 유형인 ‘解式’으로 파악하려는 입장이 있다. 주로 문서의 서식을 통해 해당 사례들을 분류, 정리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졌는데, 이 경우도 案卷의 行判 내용에서 관련된 문서 형식에 대한 기재가 확인되어 또 다른 공식령의 관문서 유형일 가능성이 높다.

3. 안권의 구성과 문서행정의 운영 …… [3. 案卷의 실례]

종래 관문서의 유형을 파악하는데 천착했던 당대 관문서 관련 연구는 안건의 처리과정 일체를 포괄하는 案卷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당대 문서행정 운영상에서의 그 실제적 의미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안건 처리의 전체 과정을 포함하는 안권에 대한 분석이 당대 문서행정의 구체상을 파악하는 데 주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라는 전제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종래 출토문서 가운데 온전한 상태의 안권이 충분치 않다는 문제에도 기인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당대 출토문서에서 확인되는 안권의 실례를 통하여 문서행정의 구체적인 운영 실상과 그 과정에서 官府間에 행용되던 관문서의 기능과 역할은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실례의 하나로 開元 21년(733) 西州都督府에서 작성한 案卷의 분석에 주목하고자 하는 이유이다.

돈황·투르판 출토문서에서 확인되는 당대 관문서의 실례들은 당대 律令 규정이 문서행정의 운영에도 예외없이 관철되었던 증거로 주목되었다. 즉 율령 官制를 기반으로 한 관부의 제반 업무가 실질적으로 처리되는 과정이 官司間의 통속관계와 위계질서를 전제한 문서행정의 구체적 절차를 통해 구현되었다고 파악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해당 관사에서 안건 처리과정의 일체를 포괄하여 작성되는 안권은 문서행정의 구체상을 파악하는 데 주요한 단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종래 출토문서를 대상으로 한 당대 관문서에 대한 연구가 주로 관문서의 유형에 따른 서식이나 용도 등에 천착한 것에 비하여 문서의 처리과정을 전제로 문서행정 운영의 전모에 접근하려는 작업이 다소 부진했던 것은 온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안권의 존재를 확인하기가 용이치 않은 데도 이유가 있다.

주지하듯이 이른바 투르판 출토문서는 해당 지역의 특수한 장례습속에 따라 서적이거나 문서 등을 포함한 紙質자료가 喪葬用品으로 활용되었다가 발굴되면서 실체가 확인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상장용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재단과 접합 등의 2차 가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굴된 문서편을 통하여 紙質자료의 본래 형태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출토문서의 분석을 통한 당대 문서행정의 규명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즉 안건의

처리 과정에서 작성된 안권의 경우 立案, 審案, 判案, 行判, 結案 등 문서행정의 처리절차를 온전히 파악할 수 있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또한 여러 형태로 재단된 문서편의 접합을 통하여 온전한 안권을 복원하고 이를 전제로 문서행정의 구체상을 재현하는 것은 더욱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개원21년과소안권」의 분석을 통하여 안권에 반영된 문서 처리과정의 구체상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당대 문서행정의 실상에 접근할 수 있었다. 이 안권은 喪葬用品인 종이 이불을 만들기 위하여, 두루마리 형태로 보존되다가 폐기된 관문서를 약 3장 정도의 연결된 길이로 재단한 문서편 5개로 구성된 것이다. 모두 西州都督府 戶曹司에서 처리한, 주로 통행증[過所] 발급과 관련된 5개의 안건을 처리한 문안이 연결된 것이다. 5개의 문안은 모두 앞부분, 뒷부분 혹은 중간 부분에 결락된 내용이 있어 안건의 처리과정 전체를 온전히 파악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각 문안에서는 안건 상정에 가능한 안유문서로서 關文, 解文, 狀文, 牒文 등의 관문서가 그 유형에 따라 해당 관부인 西州都督府에 접수된 상황이나 예하 담당 관사인 戶曹司의 심문 과정 등에서 각기 처리 절차상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심문 과정에서는 관사간의 공조가 이루어지면서 각 관사에 보관 중인 해당 안건과 관련된 文案이 勘檢의 근거로 작용하였다.

한편 5개의 문안은 각 문안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처리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이전 문안에 이어 連接이 이루어졌다. 즉 각 사안에 대한 處決의 시행, 즉 行判 시점이 해당 문안의 마무리 시점이 되며, 이때에 案卷의 연결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 문안을 연결한 안권의 경우, 이전 문안의 行判 시점과 이후 문안의 立案, 審案 시점은 시기적으로 先後가 역전될 수도 있는데, 이는 喪葬用具 제작을 위해 재단이나 접합 과정, 즉 2차 가공 시점에서 이루어진 ‘倒置’의 현상이 아니라 문안을 연결하여 안권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결과라고 하겠다. 더욱이 「개원21년과소안권」은 문안마다 결락 부분이 있지만 5개의 문안이 모두 이전 문안 다음에 이어서 이후의 문안이 서로 직접 연결된, 즉 원래 하나의 안권을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안건의 처리 과정을 전제하면 지방 官府에서 작성된 문안은 官司別로 분류, 보관되었을 개연성이 큰데, 가령 西州都督府에서 작성된 문안은 戶曹司, 倉曹司, 功曹司, 法曹司 등 해당 업무를 처리한 曹司別로 분류, 보관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개원21년과소안권」은 서주도독부 戶曹司에서 처리한 안건 중에서도 私的 통행과 관련된 過所나 公驗의 발급과 관련된 사안의 처리과정에서 작성된 문안들이 안권을 이루고 있는 경우라고 하겠다. 즉 안건의 담당 관사별로 분류, 보관된 문안 가운데 특수한 목적이나 용도를 전제한 處決이 시행되는 경우 다른 문안과는 별도로 연결하여 보관하였을 가능성을 추정케 한다. 안권의 작성, 문안의 처리 및 보관 등과 관련하여 중앙, 지방(州와 縣) 간의 차이를 전제할, 보다 다양한 자료를 이용한 검증이 추후 필요한 내용이기도 하다.

* [표1] 唐·日 公式令 조문의 구성

| | | 唐 公式令 | | 日本 公式令 | |
|-----------------|--------------------------|------------------|--|-----------------------|--|
| 공문서 제작 | 공문서 양식 | 王言 | [1, 1乙] 制書式 | (1) 詔書式 | |
| | | | [補1] 慰勞制書式 | | |
| | | | [補2] 發日勅式 | | |
| | | | [補3甲·乙] 勅旨式 | (2) 勅旨式 | |
| | | | [補4] 論事勅書式 | | |
| | | | [補5] 勅牒式 | | |
| | | 奏事文書 | [2, 2乙] 奏抄式 | (3) 論奏式 | |
| | | | | (4) 奏事式, (5) 便奏式 | |
| | | | [4甲·乙] 奏彈 | (8) 奏彈式 | |
| | | 令·敎書 | [5, 5乙] 露布式 | | |
| | | | [補6] 令書式 | | |
| | | 官文書 | [3] 三后及皇太子行令 | (6) 皇太子令旨式, (7) 啓式 | |
| | | | [補7] 敎書式 | | |
| | | | [6] 刺 | | |
| | | | (9) 飛驒式, (10) 上式, (11) 解式 | | |
| | [7] 移式: 「公式令殘卷」* | | (12) 移式 | | |
| | [8] 關式: 「公式令殘卷」* | | | | |
| | [9] 牒式: 「公式令殘卷」* | | | | |
| | [10] 符式: 「公式令殘卷」* | | (13) 符式 | | |
| | | | (14) 牒式, (15) 辭式 | | |
| | [11] 制授告身式: 「公式令殘卷」* | | (16) 勅授位記式 | | |
| | [12] 奏授告身式: 「公式令殘卷」* | (17) 奏授位記式 | | | |
| | 공문서 작성 | 書寫규정 | | (18) 判授位記式, (19) 計會式, | |
| | | | | (20) 諸國應官會式 | |
| | | | [13, 13乙] 計會 | (21) 諸司應官會式 | |
| | | | | (22) 過所式 | |
| | | [14] 平出 | (23) 皇祖, (24) 皇祖妣, (25) 皇考, (26) 皇妣, (27) 先帝, (28) 天子, (29) 天皇, (30) 皇帝, (31) 陛下, (32) 至尊, (33) 太上天皇, (34) 天皇諡, (35) 太皇太后(太皇太妃太皇太夫人同), (36) 皇太后(皇太妃皇太夫人同), (37) 皇后 | | |
| | | [15] 闕字 | (38) 闕字 | | |
| 寶·印 사용 | [16] 不平出 | (39) 汎說古事 | | | |
| | [17] 犯國諱者 | | | | |
| | [18甲·乙·丙] 天子八寶 | (40) 天子神寶 | | | |
| | [19] 太皇太后·皇太后·皇后·太子·太子妃寶 | | | | |
| 공문서 전달 처리 | 공문서 전달 | 문서 전달자의 증빙 | [20甲·乙] 内外百司銅印 | | |
| | | | | (41) 行公文皆印 | |
| | | | [21] 銅龍傳符 | (42) 給驛傳馬 | |
| | | | [22] 諸下魚符 | | |
| | | | [23甲·乙] 傳符之制 | (43) 諸國給鈴 | |
| | | | [25乙, 25] 應給魚符及傳符=執符 | | |
| | | | [24] 用符節 | | |
| | | | [26] 玉魚符 | | |
| [27] 隨身魚符 | (45) 給隨身符 | | | | |
| [28] 魚袋 | | | | | |

| | | | | |
|-------------|------------------|--------------------|--|---------|
| | 문서의 전달 | [29] 木契 | (44) 車駕巡幸 | |
| | | [30] 諸州有急速大事 | (46) 國有急速 | |
| | | [31] 諸州使人 | (47) 國司使人 | |
| | | [32] 諸在京諸司有事須乘驛 | (48) 在京諸司 | |
| | 문서관리 담당자 | [33] 諸內外諸司有執掌者爲職事官 | (52) 內外諸司 | |
| | | ** | (53) 京官, (54) 品位應叙 | |
| | | [35] 文武官朝參行立 | (55) 文武職事 | |
| | | [補8甲·乙] 致仕之臣 | (56) 諸王五位 | |
| | | | (57) 彈正別勅 | |
| | | [36] 檢校攝判 | (58) 內外官 | |
| | | | (61) 詔勅 | |
| | | 공문서 처리 절차 | [38] 文書受付程限 | (62) 受事 |
| | | | [39] 文書抄寫程限 | |
| | | | [補9] 上書及官文書皆爲眞字 | (66) 公文 |
| | | | (67) 料給官物, (69) 奉詔勅, (70) 驛使至京, (71) 諸司受勅, (72) 事有急速 | |
| | [補10] 判事安成後自覺不盡者 | | (73) 官人判事 | |
| | [42] 制敕宣行文字脫誤 | | (74) 詔勅宣行 | |
| | | | (75) 詔勅頒行, (76) 下司申解, (77) 諸司奏事, (78) 須責保, (79) 受勅出使 | |
| | [補11] 必由於都省以遣之 | | (80) 京官出使 | |
| | | | (81) 責返抄 | |
| | (82) 案成 | | | |
| | (83) 文案 | | | |
| 문서 행정 규정 보충 | 기타 보충 조항 | | (84) 任授官位, (85) 授位授勳, (86) 官人父母, (87) 外官赴任 | |
| | | [37, 37乙] 內外官應分番宿直 | (59) 百官宿直 | |
| | | [補13] 內外官日出視事 | (60) 京官上下 | |
| | | [40] 辭訴 | (63) 訴訟, (64) 訴訟追攝 | |
| | | [41] 意見封進 | (65) 陳意見 | |
| | | | (68) 授位任官 | |
| | | [44] 行程 | (88) 行程 | |
| | | [補遺2] 蕃客 | (89) 遠方殊俗 | |
| | [補14] 諸有令式不便者 | | | |

* 「公式令殘卷」: P.2819 「唐開元公式令殘卷」에 확인되는 조문임.

** [34] 「諸嗣王郡王初出身從四品下敍」 조문으로 복원했다가 「공식령」에서 삭제하고 「선거령」 補1조로 보충함

- 仁井田陸 · 池田溫(編輯代表), 『唐令拾遺補』(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97), 第3部, 「唐日兩令對照一覽」 公式令 第21, pp.1235~1304를 참조하여 작성함. [], () 안의 숫자는 조문 순서의 표시임.

** [표2] P.2819 「唐開元公式令殘卷」에 제시된 관문서 양식

| 원문 | 해석 |
|--|--|
| <p>< 移式 ></p> <p>[前 缺]</p> <p>1 某省¹¹⁾: 云主 []</p> <p>2 年月 []</p> <p>3 主事姓名</p> <p>4 某司郎中具官封名¹²⁾ 令史姓名</p> <p>5 書令史姓名</p> | <p>1 移式</p> <p>2 尙書省 爲某事</p> <p>3 某省: 云云. 謹移.</p> <p>4 年月日</p> <p>5 主事姓名</p> <p>6 某司郎中具官封名 令史姓名</p> <p>7 書令史姓名</p> |
| <p>右, 尙書省與諸臺·省相移式. 內外諸司非相管隸者, 皆爲移. 其長官署位准尙書<長官無則次官、通判官署>, 州別駕·長史·司馬、縣丞署位亦准尙書省. 判官皆准郎中.</p> | <p>앞의 내용은 尙書省과 여러 臺, 省이 서로 주고받는 ‘移’의 서식이다. 내외 여러 관사는 서로 통속 관계[管隸]가 아닐 경우 모두 移文을 사용한다. 그 장관의 서명 위치는 (상서도성) 상서(의 서명 위치)에 준하며<장관이 없으면 차관인 通判官이 서명한다>, 州의 (통판관인) 別駕, 長史, 司馬와 (현의 통판관인) 縣丞의 서명 위치도 상서성의 통판관에 준한다. 判官은 모두 郎中에 준한다.</p> |
| <p>< 關式 ></p> <p>1 關式</p> <p>2 吏部 爲某事</p> <p>3 兵部: 云云. 謹關</p> <p>4 年月日</p> <p>5 主事姓名</p> <p>6 吏部郎中具官封名 令史姓名</p> <p>7 書令史姓名</p> | <p><關文의 서식></p> <p>1 關文의 서식[關式]</p> <p>2 [吏部]로부터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爲某事]</p> <p>3 [兵部]앞으로: [云云](사안의 처리내용). 삼가 관을 보냅니다[謹關].</p> <p>4 모[年] 모[月] 모[日]</p> <p>5 [主事] 성·이름[姓名]</p> <p>6 [吏部郎中] 관함·봉작을 갖춘 이름[具官封名] [令史] 성·이름[姓名]</p> <p>7 [書令史] 성·이름[姓名]</p> |
| <p>右, 尙書省諸司相關式. 其內外諸司, 同長官而別職局者, 皆准此. 判官署位准郎中.</p> | <p>앞의 내용은 상서성의 여러 관사가 서로 주고받는 ‘關’의 서식이다. 그 내외의 여러 관사에서 장관이 같으면서 직무 부서[職局]가 다른 경우에는 모두 이에 준한다. 관관의 서명 위치는 낭중에 준한다.</p> |
| <p>< 牒式 ></p> <p>1 牒式</p> <p>2 尙書都省 爲某事</p> <p>3 某司: 云云. 案主姓名, 故牒.</p> <p>4 年月日</p> <p>5 主事姓名</p> <p>6 左右司郎中一人具官封名 令史姓名</p> <p>7 書令史姓名</p> | <p><牒文의 서식></p> <p>1 牒文(牒文)의 서식[牒式]</p> <p>2 [尙書都省]으로부터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爲某事]</p> <p>3 [某司]앞으로: [云云](사안의 처리 내용). 안건처리 담당자(혹은 주관자)[案主] 성·이름[姓名]. 그러므로 첩을 내립니다[故牒].</p> <p>4 모[年] 모[月] 모[日]</p> <p>5 [主事] 성·이름[姓名]</p> <p>6 [左右司郎中一人]관함·봉작을 갖춘 이름[具官封名] [令史] 성·이름[姓名]</p> <p>7 [書令史] 성·이름[姓名]</p> |
| <p>右, 尙書都省牒省內諸司式. 其應受刺之司, 於管內行牒, 皆准此. 判官署位, 皆准左右司郎中.”</p> | <p>앞의 내용은 상서도성이 省內의 여러 관사에 내리는 ‘牒’의 서식이다. 그 응당 ‘刺’를 받은 관사가 관내에서 첩을 전할 경우[行牒]에도 모두 이에 준한다. 관관의 서명 위치는 모두 左右司郎中에 준한다.</p> |
| <p>< 符式 ></p> <p>1 符式</p> <p>2 尙書省 爲某事</p> <p>3 某寺主者: 云云. 案主姓名. 符到奉行.</p> <p>4 主事姓名</p> <p>5 吏部郎中具官封名¹³⁾ 令史姓名</p> <p>6 書令史姓名</p> <p>7 年月日</p> | <p><符文의 서식></p> <p>1 符文(符文)의 서식[符式]</p> <p>2 [尙書省]으로부터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爲某事]</p> <p>3 [某寺]의 담당자앞으로[主者]: [云云](사안의 처리 내용). 안건처리 담당자(혹은 주관자)[案主] 성·이름[姓名]. 부(符)가 이르면 받들어 행하시오[符到奉行].</p> <p>4 [主事] 성·이름[姓名]</p> <p>5 [吏部郎中] 관함·봉작을 갖춘 이름[具官封名] [令史] 성·이름[姓名]</p> <p>6 [書令史] 성·이름[姓名]</p> <p>7 모[年] 모[月] 모[日]</p> |
| <p>右, 尙書省下符式. 凡應爲解向上者, 上官向下皆爲符. 首判之官署位准郎中. 其出符者, 皆須案成并案送都省檢勾<若事當計會者, 乃別錄會目與符俱送都省>. 其餘公文, 及內外諸司, 應出文書者, 皆准此</p> | <p>앞의 내용은 상서성이 내리는 ‘符’의 서식이다. 무릇 응당 ‘解’를 써서 상부로 올리는 경우, 상급 관이 아래로 내리는 것은 모두 符文을 사용한다. 首判官의 서명 위치는 낭중에 준한다. 그 符를 발송할 경우 모두 모름지기 案이 완성되면, 아울러 안을 都省에 보내어 勾檢토록 한다<만일 사안이 計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會目を 기록하여 부와 함께 도성으로 보낸다>. 그 외의 공문이나 내외의 여러 관사에서 문서를 발송해야 할 경우에는 모두 이에 준한다.</p> |

11) 割注로 “省, 臺는 그 (해당) 省, 臺를 이른다(省臺云其省臺)”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2) ‘某司郎中具官封’ 다음에 ‘名’자 추가. 割注에 “都省則左右司郎中一人署” 기재.

13) 割注에 “都省左右司郎中一人准” 기재.

*** [표3] 唐代 官府의 四等官 구성

| 官府 | 長官 | 通判官 | 判官 | 主典 | 勾檢官 |
|-----------|------------------|-------------|-----------|-------------|-------------|
| 尙書都省 | 令 * 左·右僕射(丞相) | 左·右丞 | 郎中 | 主事, 令史, 書令史 | 都事, 左·右司郎中 |
| 六部 | 尙書 | 侍郎 | 郎中, 員外郎 | 主事, 令史, 書令史 | 同上 |
| 門下省 | 侍中 | 黃門侍郎 | 給事中 | 主事, 令史, 書令史 | 錄事 |
| 中書省 | 令 | 侍郎 | 舍人 | 主事, 令史, 書令史 | 主書 |
| 秘書省 | 監 | 少監 | 丞 | 令史, 書令史 | 主事 |
| 御史臺 | 御史大夫 | 中丞 | 御史 | 令史, 書令史 | 主簿, 錄事 |
| 九寺 | 卿 | 少卿 | 丞 | 府, 史 | 主簿, 錄事 |
| 國子監 | 祭酒 | 司業 | 丞 | 府, 史 | 主簿, 錄事 |
| 少府監 | 監 | 少監 | 丞 | 府, 史 | 主簿, 錄事 |
| 將作監 | 大匠 | 少匠 | 丞 | 府, 史 | 主簿, 錄事 |
| 都水監 | 使者 | | 丞 | 府, 史 | 主簿, 錄事 |
| 諸署 | 令 | | 丞 | 府, 史 | (錄事) |
| 諸監 | 監 | (副監) | 丞 | 府, 史 | 主簿, 錄事 |
| 諸衛 | 大將軍 | 將軍, 長史 | 諸曹參軍事 | 府, 史 | 錄事參軍事, 錄事 |
| 折衝府 | 都尉 | 左·右果毅都尉, 長史 | (別將)兵曹參軍事 | 府, 史 | 錄事參軍事, 錄事 |
| 太子詹事府 | 詹事 | 少詹事 | 丞 | 令史, 書令史 | 主簿, 錄事 |
| 太子左·右春坊 | 左右庶子 | 中允, 中舍人 | 司議郎, 舍人 | 主事, 令史, 書令史 | 錄事 |
| 太子諸率府 | 率 | 副率, 長史 | 諸曹參軍事 | 府, 史 | 錄事參軍事, 錄事 |
| 京兆·河南·太原府 | 牧 | 尹, 少尹 | 諸曹參軍事 | 府, 史 | (司錄)參軍事, 錄事 |
| 都督府 | 都督 | 別駕, 長史, 司馬 | 諸曹參軍事 | 府, 史 | 錄事參軍事, 錄事 |
| 州 | 刺史 | 別駕, 長史, 司馬 | 諸曹參軍事 | 佐, 史 | 錄事參軍事, 錄事 |
| 縣 | 令 | 丞 | 尉 | 佐, 史 | 主簿, 錄事 |

* 尙書令은 거의 임명되지 않고, 僕射가 장관, 丞이 통관관, 郎中이 관관의 기능을 함.

- 이계다 온, 「율령관계의 형성」(原題 池田溫, 「律令官制の形成」, 『岩波講座 世界歴史5-古代5: 東アジア世界の形成Ⅱ』, 東京: 岩波書店, 1970), 임대희 외 옮김, 『세미나 수당오대사』(서울: 서경문화사, 2005), p.99, <표3> ‘주요 관부 4등관 약표’ 참조.

< 문서의 실례 >

1. 官文書の 실례 : 關文의 경우

[문서1: 關文] 개원 21년 서주도독부 창조사가 호조사로 보낸 關文과 처리 과정¹⁴⁾

<원문>

[前 略]

-----[?]-----

(1) 7 倉曹
 8 安西鎮滿放歸兵孟懷福 貫坊州
 9 戶曹: ①得前件人牒稱: “去開廿年十月七日, 從此發行至柳
 10 中, 卒染時患, 交歸不得. 遂在柳中安置, 每日隨市乞食, 養
 11 存性命. 今患得損, 其過所糧遞, 竝隨營去. 今欲歸貫,
 12 請處分”者. ②都督判: “付倉檢名過”者. ③得倉曹參軍李克勤
 13 等狀: “依檢, 案內去年十月四日得交河縣申, 遞給前件人程糧.
 14 當已依來遞, 牒倉給糧. 仍下柳中縣遞前訖, 有實”者. ④¹安西
 15 放歸兵孟懷福去年十月已隨大例, 給糧發遣訖. 今稱染
 16 患, 久在柳中, 得損請歸, 復來重請行糧. ④²下柳中縣先有給
 17 處以否. 審勘檢處分訖申. 其過所關戶曹准狀者.
 18 關至准狀, 謹關.

開元廿一年正月廿一日

功曹判倉曹 九思

府

(2) 21 正月廿二日 錄事 元賓 受
 (1) 21-1 史 汜友¹⁵⁾
 (2) 22 功曹攝錄事參軍 思 付

-----[元] 16)-----

(3) 23 檢案, 元白.
 24 廿三日
 (4) 25 牒, 檢案連如前, 謹牒.
 26 正月 日 史 謝忠牒
 (5) 27 責問, 元白.
 28 廿三日

[後 空]

14) 『唐開元21年(733)西州都督府案卷爲勘給過所事』, 73TAM509:8/8(a), 『吐魯番出土文書』肆, pp.282~283.

15) 21행과 22행 사이에 ‘史 汜友’는 이 문서를 작성한 倉曹司의 主典에 해당하며, 20행의 “功曹判倉曹 九思 / 府”와 함께 그 다음 행에 기재되었던 것인데, 21행 錄事의 문서 접수 기재(‘正月廿二日 錄事 元賓 受’)가 그 사이에 기록되면서 덧씌운 형태가 되었다. 원래의 錄文에는 행수가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21-1’행으로 구분하였다.

16) 22행과 23행 사이를 포함하여 문서 접합 부분에 []로 표시한 것은 접합 부분의 배면에 押署(‘元’ 등)를 나타낸 것이다. 程喜霖, 『唐代過所研究』, 北京: 中華書局, 2000, p.63; 『吐魯番出土文書』[錄文本] 제9책(北京: 文物出版社, 1990), p.53 등에는 接縫 부분이 24행과 25행 사이에 표시되어 있으나, 『吐魯番出土文書』[圖錄本] 肆, p.283, 73TAM509:8/8(b)의 도판에 의하면 22행과 23행 사이에 接縫 부분이 확인된다.

- (1) 7 倉曹(로부터 발문)
 8 安西鎮의¹⁷⁾ 복무 기한이 만료되어 귀환하는 병사 맹회복 本貫 방주 18)
 9~18 戶曹(의 담당자에게 보냅니다): ① 앞의 사람으로부터 牒을 받았는데 (거기에) 이르기를, “지난해 개원 20년(732) 10월 7일에 이곳[西州]으로부터 출발하여 柳中(縣)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유행하던 병에 걸려서 바로 돌아갈[交歸]¹⁹⁾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중현에 체재하게 되었고 매일 시장에서 乞食하면서 목숨을 부지하였습니다. 이제 병세가 나아졌지만[得損]²⁰⁾ (저의) 過所와 糧遞는²¹⁾ 모두 軍營에 가 있습니다. 지금 고향[本貫]으로 돌아가고자 하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습니다.²²⁾ ② 都督의 牒에는 “倉(曹司)으로 회부하여 (관련되는 장부에) 이름(이 있는지)을 조사하여 보고 하라[檢名過].”²³⁾ 하였습니다. ③ (이에 대하여) 倉曹參軍事인李克勤 등의 狀[文]을²⁴⁾ 받았는데, “判命에 따라 (관련된) 문안[案]을 조사해 보니 작년 10월 4일에 交河縣이 상신한 내용에 ‘앞의 사람에게 程糧[도중에 필요한 식량]을 지급하겠다’고 했기에 (西州에서도) 이미 도래한 糧遞에 의거하여 倉에 牒하여 식량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다시 유중현에 下問했는데 (맹회복이 유중현까지) 糧遞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④-1 安西鎮의 歸還兵인 맹회복에게는 작년 10월에 이미 통례[大例]에 따라 식량을 지급하여 遞送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에 걸려 유중현에 오래 머무르다가 지금 병이 나아 귀환하기를 요청하면서 다시 도중에 (필요한) 식량

17) 安西鎮은 龜茲鎮으로, 지금의 新疆維吾爾自治區 庫車에 위치하였다. 開元 6년에 安西鎮經略使를 두었다가 후에 磧西節度使로 바꿨는데 焉耆 · 龜茲 · 疏勒 · 于闐의 4鎮을 총관하였다. 그 가운데 龜茲鎮은 安西四鎮經略使의 治所이었으며 安西鎮이라고도 하였다(劉俊文, 『敦煌吐魯番唐代法制文書考釋』, p.564).

18) 『元和郡縣圖志』(北京: 中華書局, 1983) 권3, 關內道, 坊州條, p.72, “武德二年, 高祖駕幸於此, 聖情永感, 因置坊州, 取馬坊爲名. ……東至上都三百五十里.” 坊州는 武德 2년(619)에 설치되었으며, 關內道에 속하는데 東(南)쪽으로 長安까지 350리 떨어져 있다.

19) ‘交歸’는 ‘가까운 시간 안에 돌아간다’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王啓濤, 『吐魯番出土文書詞語考釋』, 成都: 巴蜀書社, 2005, p.222).

20) ‘損’이란 전후 문맥상으로 볼 때, ‘병이 나아지다’는 의미로 파악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蔣禮鴻, 『敦煌文獻語言詞典』, 杭州: 杭州大學出版社, 1994, pp.304~305; 『吐魯番出土文獻詞典』, pp.975~976 등을 참조.

21) 糧遞는 公糧을 수령하기 위한 증빙으로, 糧遞를 사용하여 교환하는 양식이 程糧이다. 沿途의 驛館에서는 遞에 근거하여 양식을 지급하므로 이른바 양식 ‘兌換券’ 즉 食券에 해당한다(楊德炳, 『關於唐代對患病兵士的處理與程糧等問題的初步探索』, 唐長孺編, 『敦煌吐魯番文書初探』, 武漢: 武漢大學出版社, 1983, pp.486~499). 여기서는 歸還할 때에 程糧을 보증하는 것이다.

22) 孟懷福이 서주도독부 창조사에 제출한 牒文의 내용은 9행의 ‘去開廿年十月七日’부터 12행의 ‘者’자 앞인 ‘請處分’까지만인데, 이처럼 당대 관문서에서 인용문을 표시하는 ‘者’字의 용례에 대해서는 王永興, 『論敦煌吐魯番出土唐代官府文書中‘者’字的性質和作用』, 『唐代前期西北軍事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4, pp.423~442 참조.

23) 여기서 ‘過’는 ‘(狀을) 보내다’는 의미로, “倉曹에 회부하여 帳簿[名]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보고 하라”는 것이다(『吐魯番出土文獻詞典』, pp.412~414; 荒川正晴, 『ユーラシアの交通 · 交易と唐帝國』, 名古屋: 名古屋大學出版會, 2010, p.400 注36).

24) ‘狀’은 지방과 중앙만이 아니라 지방 내의 관사에서도 상행 · 하행에 모두 통용되는 문서의 양식으로, ‘狀’의 내용에는 사안의 정황과 검사 결과 등을 기록하며, 전달 방식으로는 다른 문서와 配合 또는 交錯되는 경우도 있다(吳麗娛, 『從敦煌吐魯番文書看唐代地方機構運行的狀』, 『中華文史論叢』, 2010-2).

[行糧]을²⁵⁾ 청구하고 있습니다. ④-2 먼저 유중현에 문서를 하달하여 (식량을) 지급한 바가 있는지를 상세히 취조하여 처분케 하고 (그것이) 마무리되면 상신[申]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그의 과소 발급과 관련해서는 戶曹에 關[文]으로 의뢰하는 바 서면의 내용[狀]대로입니다. 關[文]이 이르면 내용[狀]에 준거하여 처리하십시오. 삼가 關[文]을 보냅니다.

19 개원 21년 정월 21일

20 府

功曹[參軍]으로 倉曹[參軍]를 대신[判]한²⁶⁾ 九思가²⁷⁾ 확인함.

21-1 史 汜友가 작성함.

(2) 21 정월 22일 錄事인 元肯이 접수하다.

22 功曹[參軍]로 錄事參軍을 대신[攝]한 思가 (戶曹司로) 회부하다.

-----[元]-----

(3) 23 **문안을 검사하십시오. (호조참군사) 梁元璟이 이른다[白].²⁸⁾**

24 **23일**

(4) 25 牒을 올립니다. 문안을 검사하고 연접한 바 앞과 같습니다. 삼가 牒을 올립니다.

26 정월 일 史인 謝忠이 牒을 올립니다.

(5) 27 **審問을 (진행)하십시오. (호조참군사) 梁元璟이 이른다.**

28 **23일**

[後 空]

25) ‘行糧’은 ‘行軍 혹은 旅行의 糧食’이란 의미이다. 여기서는 旅行의 糧食이란 의미이다.
 26) ‘判’은 ‘署理’를 의미하는데, 정식으로 제수된 것이 아니라 임시로 중앙관 혹은 지방관이 겸직하여 사무를 처리하게 한 것이다. 겸임하는 本省 本司의 관직은 대부분 ‘判’ 혹은 ‘攝’이라고 칭한다. 당대 西州 공문 가운데 某官이 某官을 ‘判’(某官判某官)한 많은 예들이 확인되는데 이들은 모두 現任 관리가 기타 曹司의 공문을 처리한 경우이다(李方, 『論唐西州官吏任用的類別』, 『新疆師範大學學報』 <哲社版>, 27-1, 2006, pp.106~110).
 27) 이 문서가 출토된 509호묘에서 함께 수습된 開元 20年(732)에서 開元 22年(734)까지의 紀年이 기재된 문서에서는 戶曹參軍事 梁元璟(‘元’)과 더불어 功曹參軍事 宋九思(‘九’, ‘思’), 倉曹參軍事 李克勤(또는 某勤), 西州都督府 錄事 元肯, 西州都督 王斛斯 등의 押署가 확인된다. 李方, 『唐西州官吏編年考證』,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10, pp. 118~119 참조.
 28) ‘白’이란 일반적으로 下級이 上級에게 보고할 때 서명과 함께 쓰는 상투어로 이해하고 있다. 특히 관사의 文案에 ‘某某白’이라는 判署가 확인되는데 이는 사안을 처리하는 判官의 진술, 분석, 의견 처리 등을 가리키며, 다른 한편으로 下屬이 상급 官員에 대하여 尊敬과 謙卑를 나타내는 의미를 갖는다(『吐魯番出土文獻詞典』, pp.19~20). 따라서 ‘某某白’이라는 특정한 判署 형식은 하급 관원이 ‘아래에서 위로 전달하는’ 일종의 고정된 용어라고 단정하기도 한다(向群, 『敦煌吐魯番文書中所見唐官文書‘行判’的幾個問題』, 『敦煌研究』 1995-3, pp.137~138). 그런데 인용한 관문서의 23~26행처럼 출토문서에서는 ‘문안을 검사하라(檢案, 元白)’(23행)는 판관 戶曹參軍事 梁元璟의 判辭(白)에 대하여 主典 謝忠이 “문안을 검사하여 연접한 바 앞과 같습니다. / 정월 모일 史인 謝忠이 첩합니다(牒, 檢案連如前. 謹牒 / 正月 日 史謝忠牒)”라고 牒報(25~26행)하는 문서 처리과정에서 사용되었다. 이 경우 判官의 ‘白’이라는 判署는 下級 主典에 대한 지시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白’은 종래 이해하듯이 下屬이 상급 관원에게 보고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判官(官)이 主典(史)에게 지시하는 경우에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白’은 ‘아뢴다’는 의미 이외에도 ‘이른다’는 의미로도 파악해야 할 것이다.

30
31
32
33

十六日
依判，仍牒^上涼甘肅
瓜等州，准狀。辯示。
十六日

[IV](6) 34 牒：上括逃御史，件狀如前。今以狀牒，々至准
35 狀。謹牒。
36 牒：上涼甘肅瓜等州，件狀如前。今以狀牒，
37 々至准狀。謹牒。
38 長安三年三月十六日
39 佐
40 尉
41 史 汜藝
[V](7) 42 三月十六日受牒，即日行判。無稽
43 錄事 檢無稽失
44 尉攝主簿 自判
(8) 45 牒爲括逃使牒，請牒上御史，并牒涼甘肅瓜等州事。
46 □ 30)

-----[?]-----

<번역문>

[I](1) 1 감주·양주·과주·숙주에 머물러 살고 있는 사주의 逃戶에 대하여
2~18 牒을 합니다: 처분은 받습니다. 앞에 언급한 州들은 경작할 수 있는 田地가 비교적 넓지만 백성이 대부분 城에 거주하여 시골에는 농사짓는 사람이 적습니다. 沙州에서는 힘써 경작하는 것을 임무라 여겨 모든 사람이 농사의 중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도망가 흩어져 다른 州에 무작정 이르러도 늘상 불려가 편하게 자리잡고 항시 텃밭에 나가 농사를 지으며 마치고 집안 아이처럼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잘 되야 아주 싼 노임을 받거나, 못 되면 근근이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가는 처지이니 客이 되어 위태롭게 살아가는 것을 어찌 온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점차 세월이 지나 계절이 바뀌어도 머뭇거리다가 돌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전 逃戶의 業田은 이어서 사람을 차출하여 경작시키고 수확한 곡물을 租賦에 충당토록 하며 만일 잉여가 있다면 고용된 자(대리 경작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勅을 받았는데 “도망한 자[逃人]가 잡혀 [본적지로] 돌아가게 되면, 호등[戶第]의 높고 낮음을 묻지 않고 2년간 요역을 면제시킨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逃戶의 (田地에 대한) 모든 농사에 官에서 種子를 빌려주고 (필요한) 戶를 붙여 농사를 돕도록 할 것이며, 도망한 자가 만일 돌아오면 농지는 그대로 돌려주고, 課役은 모두 면제하며 더불어 田地에 심어져있는 것도 가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혹여 이미 (沙州의) 동쪽으로 도망갔던 사람이 돌아가면 이곳에서는 농사를 짓지만 고향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땅 주인의 꼬임에 넘어가 멋대로 이유를 만들어 편한대로 머무를 곳을 찾으려 할까 두렵습니다. 또한 감주·양주·과주·숙주의 백성들과 도망한

30) 46행 말미에 ‘日’字에 해당하는 則天文字의 일부가 확인되지만 이는 背面 문서의 일부에 기재된 것으로 본 문서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사람이 서로 공모하여 농사를 짓고 있다고 사칭하며 돌아가 생계를 유지하려 할까 두렵습니다. (따라서) 만약 括戶探訪使에게 첩을 올려 (이런 사정을) 알리지 않는다면 도망한 자들의 소송이 끊이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삼가 첩으로 올립니다. 삼가 첩을 올립니다.

- 19 장안 3년 3월 일 典인 陰永이 牒합니다.
- (2) 20 **담당 관사로 회부하시오. (현령) 辯이 지시한다.**
- 21 **16일**
- (3) 22 3월 16일에 녹사가 접수[受]하다.
- 23 縣尉로 主簿를 겸한 [澤이] 司戶로 회부하다.
- [II](4) 24 **문안을 검사하시오. (縣尉) 澤이 지시한다[白].**
- 25 **16일**
- 26 牒합니다. 문안을 검사하여 연결한 것이 앞과 같습니다. 삼가 첩을 올립니다.
- 27 3월 십몇일 史인 汜藝가 牒합니다.
- [III](5) 28~29 **문서의 내용[狀]으로 括逃御史에게 첩을 올리면 어떨지요. 헤아려 주십시오. 澤이 아뢴다[白].**
- 30 **16일**
- 31~32 **(판관의) 首判대로 하시오. 또 양주·감주·숙주·과주 등에 문서 내용에 준하여 첩을 올리시오. 辯이 지시한다.**
- 33 **16일**
- [IV](6) 34~35 牒을 합니다: 括逃御史에게 안건의 내용은 앞과 같이하여 올립니다. 지금 문서의 내용으로 첩하니 첩이 이르면 내용에 따라 처리하십시오. 삼가 첩을 올립니다.
- 36~37 牒을 합니다: 양주·감주·숙주·과주 등 주에 안건의 내용은 앞과 같이하여 올립니다. 지금 문서의 내용으로 첩하니 첩이 이르면 내용에 준거하여 처리하십시오. 삼가 첩을 올립니다.
- 38 장안 3년 3월 16일
- 39 佐
- 40 (현)위
- 41 史인 汜藝가 작성함.
- [V](7) 42 3월 16일 첩을 접수하고, 당일 행판하다. 지체된 바가 없다.
- 43 녹사가 검사했는데 지체되거나 실착이 없다.
- 44 (현)위가 주부를 겸함 스스로 판안함
- (8) 45 첩을 하여 括逃使의 첩을 御史에게 牒上하기를 청하고, 아울러 涼·甘·肅·瓜等州에 첩하는 것에 대한 사안
- 46 □

[문서2: 안권] 장안 3년(703) 沙州 敦煌縣에서 작성한 案卷

| [V] | | [IV] | | [III] | | | | | [II] | | | [I]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 (7) | (6) | | (5) | | | | | (4) | (3) | (2) | [爨爨]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6 | 45 | 44 | 43 | 42 | 41 | 40 | 39 | 38 | 37 | 36 | 35 | 34 | 33 | 32 | 31 | 30 | 29 | 28 | 27 | 26 | 25 | 24 | 23 | 22 | 21 | 20 | 19 | 18 | 17 | 16 | 15 | 14 | 13 | 12 | 11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
| [?] | | [?] | | [澤] | | | | | [辯]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案卷의 실례

[문서3-1] 「開元21年過所案卷」의 처리 상황

| 행 | [I] 입안 | | [II] 심안 | [III] 판안 | [IV] 행관 | [V] 결안 | | |
|------|----------------|------------------------------------|---|--|---|---|------------------------------|-----------------|
| | 안유문서 | 장관지시 / 受付 | | | | 검구 | 추모 | |
| 문안 1 | [前缺] | | | | | | | |
| 행 | 7~21-1 | 21~22 | 23~35 | [中缺] | 41~45 | 46~48 | 49 | |
| 문안 2 | [關文] 정월 21일 | 錄事司 受付 정월 22일 | 판관 : “檢案, 元白” (정월 23일) 주진 : “牒, 檢案連如前, 謹牒” (23일) 판관 : “責問, 元白” (정월 23일) [辯文] 孟懷福 | 36~40 ~依判, 解示 (정월 29일) | 1~2 符文각장 (정월 25일) | 정월24일 受, 정월25일 行判 錄事元肯 檢無稽失 功曹攝錄事參軍 思 勾訖. | 6 下高昌縣爲勸翹嘉琰去 後, 何人承後上事 | |
| 행 | 50~67 | [中缺] | | | | | | 68 |
| 문안 3 | [解文] | 판관: “勘” (2월1일) | | | | | | 給翹嘉琰爲往隴右過所 事 |
| 행 | 69~77 | 78~80 | 81~146 | [中缺] | 161~166 | 167~169 | 170 | |
| 문안 4 | [狀文] 정월 27일 | 장관 지시 “付功曹, 推問過, 斯示” 28일 | 주진 : “牒, 奉都督判命如前, 謹牒” 판관 : “問, 九思白” (정월 28일) [辯文] 王奉仙 판관 : “連, 九思白” (정월 29일) [關文] 法曹司 → 功曹司 판관 : “具錄狀過, 九思白” (정월 29일) [辯文] 桑思利 / [辯文] 蔣化明 판관 : “付法曹檢九思白” (정월 29일) 주진 : <錄案> | 147~160 ~證, 元環白 (2월 5일) 依判, 譔, 齊晏示 (5일) 依判, 譔, 崇示 (5일) 依判, 解斯示 (2월 5일) | 정월29일 受, 2월5일 行判 錄事元肯 檢無稽失 功曹攝錄事參軍 思 勾訖 | 蔣化明爲往北庭給行 牒事 | | |
| 행 | 171~182/188(?) | 183~185 | 186~187 | [後缺] | | | | |
| 문안 5 | [狀文] 2월 6일 | 付司, 解斯示 2월8일 錄事司 受付 2월 8일 | 판관 : “連, 元白” (2월 11일)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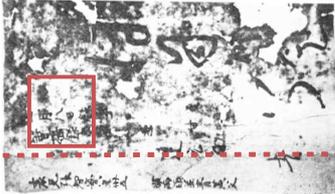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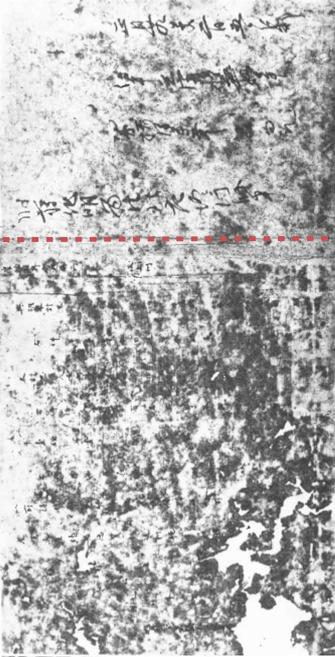
[문서3: 안권] 「개원21년과소안권」의 구성 : 안권의 실례

| | | 【문안2】 | | | | | | | | | | | | | | | | | | | 【문안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 | | | | | | | | | | 【문안2】 | | | | | | | | | 【문안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I】 | | | | | | | | | | 【I】 | | | | | | | | | | 【문안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I】 | | | | | | | | | | 【I】 | | | | | | | | | | 【문안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I】 | | | | | | | | | | 【I】 | | | | | | | | | | 【문안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100 |
| [中 缺] | | [前 缺] | | | | | | | | | | [前 缺] | | | | | | | | | | [前 缺]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문안3】 | | | | | | | | | | | | | | | | | | | 【문안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 | | | | | | | | | | 【문안3】 | | | | | | | | | 【문안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 | | | | | | | | | | 【문안3】 | | | | | | | | | 【문안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 | | | | | | | | | | 【문안3】 | | | | | | | | | 【문안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 | | | | | | | | | | 【문안3】 | | | | | | | | | 【문안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100 |
| [中 缺] | | [前 缺] | | | | | | | | | | [前 缺] | | | | | | | | | | [前 缺]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문안4】-1 | | | | | | | | | | 【문안3】 | | 《3》 | | | | | | | | | | | | | | |
| | | [I] | | | | | | | | | | [V]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6 | 95 | 94 | 93 | 92 | 91 | 90 | 89 | 88 | 87 | 86 | 85 | 84 | 83 | 82 | 81 | 80 | 79 | 78 | 77 | 76 | 75 | 74 | 73 | 72 | 71 | 70 | 69 | 68 |
| [中缺] | | [前缺] | | | | | | | | | | | | | | | | | | | | [前缺]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문안4】-1 | | | | | | | | | | 【문안4】-1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I]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6 | 145 | 144 | 143 | 142 | 141 | 140 | 139 | 138 | 137 | 136 | 135 | 134 | 133 | 132 | 131 | 130 | 129 | 128 | 127 | 126 | 125 | 124 | 123 | 122 | 121 | 120 | 119 | 118 | 117 | 116 | 115 | 114 | 113 | 112 | 111 | 110 | 109 | 108 | 107 | 106 | 105 | 104 | 103 | 102 | 101 | 100 | 99 | 98 | 97 |
| [中缺] | | [前缺] | | | | | | | | | | | | | | | | | | | | [前缺]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문안5】 | | 【문안4】 -2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I】 | | | 【V】 | | 【IV】 | | 【III】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 | (3) | (2) | 【狀文】 (1) | | (2)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8 | 187 | 186 | 185 | 184 | 183 | 182 | 181 | 180 | 179 | 178 | 177 | 176 | 175 | 174 | 173 | 172 | 171 | 170 | 169 | 168 | 167 | 166 | 165 | 164 | 163 | 162 | 161 | 160 | 159 | 158 | 157 | 156 | 155 | 154 | 153 | 152 | 151 | 150 | 149 | 148 | 147 |
| [中缺]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前缺] | | | | | | | | | |
| <20> | ⑥[元] | '西州都督府之印' (1 貳) | | | <19> | ⑤[元] | <18> | ④[元] | '朱印' | | <17> | ③[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